

2021년 개정판

#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

Vietnam Investment Guide

ESG 경영 및 우수사례 수록



#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 » 목차

### I. 베트남 투자환경 / 7

1. 투자여건 / 8
2. 투자인센티브 / 31

### II. 투자유치 정책 및 투자절차 / 39

- FTA 조약 검토 / 40
- 추가 검토 사항 / 41
-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 / 42
- 각 업종별 투자시 사전 검토 사항 / 44
- 투자등록증 검토 / 48
- 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의 종류 / 49
- 청산 / 51
- 법인청산 관련 세무 및 회계 / 62

### III. 현지 경영관리 / 67

1. 외국인근로자 / 68
2.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FCT") / 118
3. 자본양도소득 / 122
4. 베트남 정부의 ESG 관련 정책 개관 / 124
5.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 128
6. 베트남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현황 및 사례 / 131
7.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현황 및 사례 / 137
8. 베트남의 ESG 특징과 평가 / 143

### IV. 부록 / 145

1. 현지 진출 우리나라 주요기관(하노이) / 144
2. 베트남 주요 투자정부기관 / 148
3. 한국계 법무법인 / 150



## » 발간사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 국가입니다. 최근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필요성 증대 및 미-중 무역분쟁에 기인한 여러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992년 수교한 이래 양국 교역 규모는 29년간 141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92년 4.9억 달러 → '20년 691억 달러) 특히 내년 12월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비즈니스 포럼 개최에 더불어, 2023년까지 교역 규모 천억 달러 달성을 위하여 양국 산업공동위를 중심으로 교역 촉진을 위한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바, 베트남과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를 살펴보면, 2000년대 농·식품, 의류·섬유와 같은 1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주로 진행되다가, 북부 하노이를 중심으로 전자제품·디스플레이의 대표기업인 삼성과 LG가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며 진출 업종이 다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전자제품, 건설, 석유·화학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의 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R&D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제약 산업 분야에 대한 M&A를 통한 투자 진출에 대한 관심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약 8,80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현지 기업 및 진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KOTRA는 베트남의 최근 변화하고 있는 투자환경을 반영하여 투자실무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판은 베트남 투자 진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주요 개정 법률, 산업별 인센티브 등 우리 기업 분들이 꼭 점검해야 할 내용 들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사례를 담아 전략 가이드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양국 간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이 시점에서, 본 책자가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JP, 법무법인 세종, 회계법인 서우 그리고 호치민무역관 및 본사 투자 MnA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KOTRA Invest KOREA 대표 장상현

---



#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 I. 베트남 투자환경

1. 투자여건
2. 투자인센티브

# 1. 투자여건

## ▶ 외국인투자 동향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21년 8월 누계 기준으로 US\$ 4,006억 총 3만 4,072건이다. 미 중 무역분쟁에 따른 기업들의 공급선 다변화 전략과 EVFTA, CPTPP, 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베트남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듯, 2017~201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자로 각각 US\$ 300억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었다.

다만, 2020~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로 대베트남 신규투자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신규투자를 살펴보면 US\$ 146억으로 2019년 대비 12.5% 감소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여파가 투자흐름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8월 기준 신규 투자액은 US\$ 1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신규투자건은 1,1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 | 연도별 외국인투자 통계(신규) |

(단위: 건, US\$ 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1~8.20)
투자건수	2,591	3,046	3,883	2,523	1,135
투자금액	21,275	17,976	16,745	14,646	11,325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 투자청(FIA)

### | 연도별 외국인투자 통계(신규, 증액, 출자 및 주식매입 합산) |

(단위: 건, US\$ 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1~8.20)
투자건수	8,781	10,711	3,883	9,804	4,494
투자금액	35,601	35,460	38,019	28,530	19,122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외국인 투자청(FIA)

### ▶ 국가별 외국인투자 동향

2021년 1~8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투자금액(신규, 증액, 출자 및 주식매입 포함) 순위는 싱가포르가 US\$62억(417건)으로 2021년 국가별 전체 투자금액 중 32.5% 차지하며 투자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 US\$32억(353건, 16.8%), 한국 US\$24억(1,397건, 12.7%)으로 3위에 위치했다. 뒤를 이어, 중국 US\$18억(522건, 9.3%), 홍콩 US\$13억(203건, 7.2%), 대만 US\$11억(240건, 5.7%) 순이다.

2021년 1~8월, 싱가포르가 투자규모면에서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발전분야(베트남 남부 롱안성 LNG 1·2발전소, US\$31억) 등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으로, 일본은 오몬 II 지열발전소에 US\$13억을 투자하여 투자액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대표적인 투자분야는 전기·전자분야로 LG디스플레이가 베트남 북부 하이퐁 생산공장에 US\$750만을 증액투자 하였다.

2021년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가 다소 감소 되었으나 누적금액 기준, 외국인투자금액 순위는 한국이 여전히 1위(US\$723억, 9,159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일본(US\$638억, 4,739건), 싱가포르(US\$625억, 2,764건), 대만(US\$350억, 2,832건), 홍콩(US\$270억, 2,012건), 버진아일랜드(US\$221억, 873건), 중국(US\$202억, 3,2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눈여겨 볼 점은, 미중무역분쟁 이전인 2017년 누적금액 기준 홍콩(US\$177억, 1,275건), 중국(US\$130억, 2,149건)은 베트남의 인접국, 거대 자본력에 비해 투자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미중무역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2021년 8월 누적금액 기준 홍콩(US\$270억, 2,012건), 중국(US\$202억, 3,267건)으로 중국 자본이 대거 베트남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국가별 대 베트남 투자통계 |

(단위 : US\$ 백만)

국가명	2020년	2020년 *출자 및 주식매입 포함	2021년 1~8월	2021년 1~8월 *출자 및 주식매입 포함	누계 (1988.1 ~2021.8)
한국	1,205 (609건)	3,949 (2,786건)	758 (251건)	2,438 (1,397건)	72,346 (9,159건)
일본	786 (272건)	2,367 (950건)	2,375 (120건)	3,215 353건	63,826 (4,739건)
싱가포르	6,157 (248건)	8,994 (866건)	4,932 (140건)	6,214 (417건)	62,504 (2,764건)
대만	1,505 (131건)	2,058 (642건)	265 (46건)	1,102 (240건)	35,046 (2,832건)
홍콩	1,271 (211건)	1,999 (439건)	1,060 (81건)	1,392 (203건)	27,044 (2,012건)
버진 아일랜드	310 (30건)	902 (93건)	154 (20건)	392 (48건)	22,194 (873건)
중국	1,582 (342건)	2,459 (1,280건)	836 (137건)	1,779 (522건)	20,266 (3,267건)
말레이시아	61 (33건)	195 (166건)	15 (14건)	116 (69건)	13,009 (662건)
태국	292 (40건)	1,785 (163건)	105 (24건)	237 (58건)	12,921 (632건)
네덜란드	293 (36건)	896 (94건)	89 (16건)	480 (47건)	10,354 (381건)
총계	14,646 (2,523건)	28,530 (9,804건)	11,325 (1,135건)	19,122 (4,494건)	400,612 (34,072건)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 ▶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남부 지역의 전체적인 투자는 2021년 8월 기준 US\$2,021억, 1만 9,286건으로 베트남 전체 투자(US\$4,006억, 34,072건) 중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 지역은 베트남 전체 투자의 약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남부 호치민시가 투자 금액 US\$490억, 투자 건수 10,261건을 기록해 외국인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누계 기준)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진출이 다대한 빈증성에 대한 투자는 US\$368억, 3,987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수도인 하노이에 대한 투자는 US\$366억, 6,617건으로 전체 3위 투자지역이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북부지역은 글로벌 전자기업의 진출, 증액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과의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계 자본이 크게 유입되고 있다. 남부지역의 경우 호치민시 투티엠신도시, 롱탄국제공항 등 인프라 투자와 봉제·섬유 등 제조업이 투자 강세를 보이고 있다.

#### | 지역별 외국인투자현황 |

지역	누계 (1988.1.1~2021.8.20)		2021년 (1.1~8.20)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전체	34,072	400,612	1,135	19,122
북부 지역	13,002	168,549	492	7,265
1 Hanoi	6,617	36,693	244	868
2 Bac Ninh	1,694	20,270	83	736
3 Hai Phong	887	21,540	37	1,290
4 Thanh Hoa	164	14,576	7	74
5 Ha Tinh	79	11,739	-	10
6 Hai Duong	490	9,034	14	296
7 Thai Nguyen	189	8,831	10	112
8 Quang Ninh	150	7,512	8	752
9 Bac Giang	562	7,893	16	755
10 Hung Yen	500	5,755	11	507
11 Vinh Phuc	468	6,428	19	734
12 Nam Dinh	123	3,622	2	101
13 Ha Nam	347	4,359	9	182
14 Nghe An	104	2,288	7	266
15 Phu Tho	205	2,011	9	159

지역		누계 (1988.1.1~2021.8.20)		2021년 (1.1~8.20)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6	Ninh Binh	87	1,564	6	155
17	Quang Binh	24	1,116	1	56
18	Thai Binh	100	961	3	144
19	Lao Cai	32	582	1	11
20	Hoa Binh	51	720	-	-
21	Yen Bai	31	428	5	37
22	Lang Son	42	240	-	6
23	Tuyen Quang	17	202	-	14
24	Son La	10	135	-	-
25	Cao Bang	17	36	-	-
26	Bac Kan	4	6	-	-
27	Ha Giang	6	4	-	-
28	Lai Chau	1	1	-	-
29	Dien Bien	1	3	-	-
남부 지역		19,286	202,172	591	10,860
1	Ho Chi Minh	10,261	49,088	386	2,175
2	Binh Duong	3,987	36,859	43	1,671
3	Ba Ria - Vung Tau	512	32,995	16	248
4	Dong Nai	1,783	32,349	36	572
5	Long An	1,264	12,032	43	3,614
6	Tay Ninh	345	8,343	11	648
7	Kien Giang	62	4,808	-	5
8	Binh Thuan	153	3,809	-	2
9	Tra Vinh	42	3,341	-	8
10	Tien Giang	128	2,752	2	4
11	Binh Phuoc	364	3,570	34	327
12	Ninh Thuan	54	1,660	-	73
13	Ben Tre	63	1,583	2	16
14	Can Tho	84	2,047	3	1,317
15	Vinh Long	67	845	5	2
16	Hau Giang	29	676	6	153
17	Bac Lieu	14	4,551	1	-

지역		누계 (1988.1.1~2021.8.20)		2021년 (1.1~8.20)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8	Soc Trang	14	228	-	-
19	An Giang	29	281	1	11
20	Dong Thap	20	198	1	9
21	Ca Mau	11	157	1	5
중부지역		1,734	27,094	52	1040
1	Quang Nam	223	6,067	5	31
2	Da Nang	878	5,713	29	162
3	Khanh Hoa	119	4,394	1	37
4	Hue	122	4,031	2	176
5	Phu Yen	52	2,034	-	-
6	Quang Ngai	59	1,985	2	25
7	Binh Dinh	96	1,138	3	72
8	Lam Dong	103	515	1	10
9	Dak Lak	24	590	7	432
10	Dak Nong	18	309	1	7
11	Kon Tum	9	93	-	-
12	Quang Tri	24	206	1	88
13	Gia Lai	7	19	-	-
해안지역		50	2,768	-	-
Oil & gas Project		50	2,768	-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 ▶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2021년 8월까지 누적 기준 제조 및 가공업 분야의 전체 투자 비율(투자건수 기준)은 약 45%로 제조업이 외국인투자부문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8월만 놓고 보면 약 33%가 제조업 투자 진출에 해당한다. 눈여겨 볼 점은 도소매업 진출의 약진인데, 전체 4,494건 투자건 중 1,365건이 도소매업으로 약 30% 비중을 보여 투자업종 2위를 기록했다. 이는 다년간 베트남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확대와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도 온라인 유통채널 등으로 사업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투자가 증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기술과학업이 15%로 3위, 정보통신업 6.5%로 4위를 기록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여행업은 수요가 급락하여 호텔, 요식업은 전체 투자건 중 5.5%에 그쳤다.

### | 산업별 외국인 투자 동향 |

(단위: US\$ 백만)

구분	'88년~'21년 8월 누적	'21년 1~8월 출자 및 주식매입 포함		'21년 1~8월 (신규 및 증액만)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468	235,699.40	1,254	9,252.94	775	8,556.89
2	부동산경영	974	61,234.81	131	1,573.09	49	1,015.66
3	전력, 가스, 용수제조 공급	170	33,908.91	51	5493.83	28	5,392.31
4	호텔, 요식업	895	12,549.48	251	139.33	21	49.73
5	건설	1,764	10,750.59	119	180.03	27	78.36
6	도소매, 유지보수	5,467	8,817.32	1,365	734.17	399	341.46
7	물류운수	896	5,727.10	119	693.50	39	384.12
8	채광	1,764	4,894.76	5	1.47	1	0.14
9	교육, 양성	603	4,429.40	69	30.69	32	20.67
10	정보 통신	137	4,053.58	296	175.91	113	72.59
11	기술과학전문	3,697	3,961.75	668	573.31	234	271.36
12	농, 임, 수산	509	3,681.74	44	102.67	19	86.41
13	예술 오락	137	3,392.34	6	0.90	1	0.13
14	용수공급, 폐수처리	80	2,895.03	9	83.11	1	1.01
15	의료, 사회복지	152	1,999.85	9	2.70	1	0.23
16	행정, 지원 서비스	512	973.56	76	24.09	20	8.54
17	기타서비스	145	847.80	7	2.93	1	0.15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19	15	57.63	1	30.47
19	가정용 렌탈서비스	7	11.07	-	-	-	-
합계		34,072	400,612.68	4,494	19,122.28	1,774	16,310.23

자료원 : 베트남 투자기획부

### ▶ 한국기업투자 동향

2021년 8월 기준 약 9,000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투자금 기준으로 보면 하노이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에 약 35.3%, 다낭을 중심으로 중부지역에 약 10.5%,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에 약 53.8%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이자 아세안 지역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지속 확대되어 2021년 8월 누계기준으로 투자금액 US\$723억, 투자건수 9,158건에 이른다. 2위 투자국인 일본과 비교하면 약 US\$100억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US\$531억, 4,543건)이 전체 투자금액 중 73%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투자분야인 제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두 번째로, 부동산업(US\$97억, 213건) 13.4%, 건설업(US\$28억, 917건) 3.9%, 도소매업(US\$14억, 1,369건) 2.1%, 물류 운송업(US\$1억, 182건) 1.5%로 뒤를 이었다.

#### |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현황(신규투자만) |

(단위: 건, US\$ 백만, 신고 기준)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1988~2021.8 총 누계
투자건수	849	861	1,043	1,137	609	251	9,159
투자액	5,726.45	3,973.26	3,657.58	3,668.76	1,205.80	758.94	72,346.6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 | 한국 기업의 업종별 투자현황 |

#	구분 산업	'88년~'21년 8월 누적		'21년 1~8월 출자 및 주식매입 포함		'18년 1~8월 (신규 및 증액만)	
		투자 금액	점유율 (%)	투자 금액	점유율 (%)	투자 금액	점유율 (%)
1	제조, 가공	53,144	73.4	1,647	68	1,496	77
2	부동산경영	9,723	13.4	286	12	253	13
3	건설	2,891	3.9	58	2	49	3
4	도소매, 유지보수	1,498	2.1	168	7	27	1
5	물류운수	1,052	1.5	38	2	32	2

구분		'88년~'21년 8월 누적		'21년 1~8월 출자 및 주식매입 포함		'18년 1~8월 (신규 및 증액만)	
#	산업	투자 금액	점유율 (%)	투자 금액	점유율 (%)	투자 금액	점유율 (%)
6	호텔, 요식업	1,020	1.4	22	1	4	0
7	기술과학전문	723	1	86	4	42	2
8	정보통신업	558	0.7	35	1	22	1
9	전력, 가스, 용수	433	0.6	16	0	6	0
10	의학 및 사회봉사	234	0.3	0	0	-	-
11	용수 및 폐기물 처리	209	0.3	62	3	-	-
12	행정, 지원 서비스	188	0.3	3	0	1	0
13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182	0.3	0	0	0	0
14	농, 임, 수산	130	0.2	8	0	8	1
15	교육, 양성	117	0.2	7	0	3	0
16	채광산업	115	0.2	-	-	-	-
17	기타 서비스업	72	0.1	1	0	-	-
18	재정, 금융업	56	0.1	1	0	-	-
19	가정용 렌탈서비스	1	0.0	-	-	-	-
합계		72,346	100	2,438	100	1,943	100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 베트남 주요지역

북부지역

지역명	하노이(Ha Noi, ★수도)
면적	3,324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8,053,663명 / 2,398명/km <sup>2</sup>
성도	-
공항	노이바이국제공항
기업수 (‘20년 기준)	165,875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104.71%
투자유치분야	교통, 스마트시티, 상하수도, 환경, 농·임·수산업 가공, 연구개발(R&D), 하이테크 산업 등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① 대우 E&C(US\$13억, 부동산개발) ② 경남(US\$9.6억, 부동산개발) ③ 부영그룹(US\$3.1억, 건설) ④ 삼성전자(US\$2.1억, 연구개발) ⑤ 한화테크윈(US\$2억, 산업기계제조)

지역명	박장성(Bac Giang)
면적	3,849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1,803,950명 / 463명/km <sup>2</sup>
성도	박장시
공항	-
기업수 (2020년 기준)	6,549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119.81%
투자유치분야	전자부품·제품, 반도체, 산업기계 제조업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① 에스아이플렉스(US\$1.6억, 연성회로기판제조) ② 서진시스템(US\$1억, 통신장비케이스제조) ③ 하나마이크론(US\$0.5억, 반도체) ④ S.J테크(US\$0.5억, 휴대폰부품제조) ⑤ 삼광(US\$0.4억, 휴대폰케이스사출)

지역명	박닌성(Bac Ninh)
면적	822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1,368,840명 / 1,664명/km <sup>2</sup>
성도	박닌시
공항	-
기업수 (2020년 기준)	12,769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103.93%
투자유치분야	전자부품·제품 제조업, 과학기술업, 하이테크 산업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① 삼성디스플레이(US\$65억, 디스플레이) ② 드림텍(US\$1.7억, 전자부품제조) ③ 삼성SDI(US\$1.6억, 축전지제조) ④ 모베이스(US\$1.2억, 휴대폰부품제조) ⑤ 플렉스컴(US\$1.2억, 연성회로기판제조)

지역명	타이응우엔성(Thai Nguyen)
면적	3,536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1,368,840명 / 365명/km <sup>2</sup>
성도	타이응우엔시
공항	-
기업수 (2020년 기준)	4,789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104.20%
투자유치분야	전자부품, 과학기술업, 도·소매업, 유통업, 고부가가치산업, 환경산업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① 삼성전자(US\$30억, 전자제품제조) ② 동화기업(US\$1.6억, 중밀도섬유판제조) ③ 한솔테크닉스(US\$1.5억, 전자부품제조) ④ 알루미늄(US\$0.7억, 알루미늄압연제조) ⑤ 주광정밀(US\$0.5억, 금형제조)

지역명	하이퐁시(Hai Phong, ☆중양정부 직할시)
면적	1,527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2,028,514명 / 1,299명/km <sup>2</sup>
성도	-
공항	캇비국제공항
기업수 (‘20년 기준)	20,195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114.58%
비교이점	전자부품-제품, 가전제품, 하이테크 산업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① LG디스플레이(US\$25억, OLED제조) ② LG전자(US\$15억, 가전제품제조) ③ LG이노텍(US\$10억, 카메라모듈제조) ④ 희성전자(US\$1.5억, 액정표시장치제조) ⑤ 피에이치에이(US\$0.5억, 자동차부품제조)

### 중부지역

지역명	다낭시(Da Nang, ☆중양정부 직할시)
면적	1,285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1,134,310명 / 883명/km <sup>2</sup>
성도	-
공항	다낭국제공항
기업수 (‘20년 기준)	23,666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89.60%
비교이점	관광업, 서비스업, 물류업, IT산업, 하이테크 산업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① 대원칸타빌(US\$2.5억, 부동산개발) ② 크레베스(US\$2억, 부동산개발) ③ 덴티움(US\$0.6억, 치과용기기제조) ④ 롯데마트(US\$0.4억, 도소매업) ⑤ 대량산업(US\$0.1억, 자동차부품제조)

## 남부지역

지역명	호치민시(HCMC, ☆중앙정부 직할시)
면적	2,095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8,993,082명 / 4,363명/km <sup>2</sup>
성도	-
공항	똌선녓국제공항
기업수 (‘20년 기준)	254,699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95.40%
투자유치분야	금융, 무역, 관광, 물류, 하이테크산업 등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① 롯데그룹(US\$8.8억, 부동산개발) ② GS건설(US\$3.4억, 건설업) ③ 성창 F&D(US\$2.6억, 부동산개발) ④ 이마트(US\$0.6억, 도소매업) ⑤ 삼일제약(US\$0.5억, 의약품제조)
지역명	컨터시(Can Tho, ☆중앙정부 직할시)
면적	2,095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1,235,171명 / 858명/km <sup>2</sup>
성도	-
공항	컨터국제공항
기업수 (‘20년 기준)	9,088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96.54%
투자유치분야	ICT산업, 생명공학업, 신소재업, 환경업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① 태광산업(US\$1.7억, 신발제조) ② 롯데마트(US\$0.6억, 도소매업)

지역명	빈증성(Binh Duong)
면적	2,694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2,426,561명 / 901명/km <sup>2</sup>
성도	투저우못시(Thu Dau Mot)
공항	-
기업수 (*20년 기준)	34,836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106.10%
투자유치분야	IT산업, 전자제품 제조업, 도시개발산업, 물류업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코오롱인더스트리(US\$2.2억, 폴리에스터제조)</li> <li>② 오리온(US\$1억, 식품제조)</li> <li>③ 우진플라스틱(US\$0.6억, 플라스틱버클제조)</li> <li>④ 디알비인터내셔널(US\$0.5억, 전동벨트제조)</li> <li>⑤ 팬코(US\$0.4억, 섬유·봉제업)</li> </ul>

지역명	동나이성(Dong Nai)
면적	5,907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3,097,107명 / 528명/km <sup>2</sup>
성도	비엔호아시(Bien Hoa)
공항	롱탄국제공항(2025년 완공예정)
기업수 (*20년 기준)	24,270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103.61%
투자유치분야	의료·제약업, 인프라산업, 과학기술업, 농·수산식품 가공업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효성화학(US\$11억, 스판덱스제조)</li> <li>② 태광산업(US\$6억, 신발제조)</li> <li>③ 창신(US\$4.4억, 섬유봉제)</li> <li>④ 포스코(US\$3억, 철강제조)</li> <li>⑤ 화승엔터프라이즈(US\$2.5억, 신발제조)</li> </ul>

지역명	롱안성(Long An)
면적	4,491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1,688,547명 / 376명/km <sup>2</sup>
성도	띠안시(Tan An)
공항	-
기업수 (‘20년 기준)	10,476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107.96%
투자유치분야	농·수산물공업, 첨단농업,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개발산업, 물류업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① 매직마이크로(US\$0.5억, 전자부품제조) ② 유진크레베스(US\$0.5억, 금속주방용기제조) ③ 송월타올(US\$0.5억, 섬유봉제) ④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US\$0.3억, 물류업) ⑤ 시몬느(US\$2.5억, 핸드백제조)

지역명	바리아-붕따우성
면적	1,989 km <sup>2</sup>
인구/인구밀도	1,148,313명 / 580명/km <sup>2</sup>
성도	바리아시
공항	-
기업수 (20년 기준)	10,946개
산업생산지수(IIP) (‘20년 기준)	93.31%
투자유치분야	경공업, 관광업, 물류업
한국기업 대표 프로젝트	① 포스코(US\$19억, 철강제조) ② 효성화학(US\$12억, 폴리프로필렌제조) ③ 락앤락(US\$1.5억, 플라스틱제품제조) ④ 고려아연(US\$1.3억, 합금제조) ⑤ C.J제일제당(US\$1억, 식품제조)

자료원 : 2019 베트남인구총주택조사, 통계청, 기획투자부, 베트남 남부투자진흥센터, 각 지방성 인민위원회, KOTRA 호치민무역관 취합

## ▶ 경제구역

### 가. 경제구역의 정의

경제구역은 지정학적 경계에 위치하면서 투자유치, 사회경제적 발전 개발, 국방 및 안보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구역이다. 경제구역은 해안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제구역이라 통칭한다.

- a) 해안경제구역이라 함은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건·규정에 따라 해안지역 및 연안해역에 형성된 경제구역을 뜻한다.
- b) 국경경제구역이라 함은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건·규정에 따라 국경관문이 위치한 내륙경계지역 및 인접지역에 형성된 경제구역을 뜻한다.

자료원 : 산업 및 경제구역관리에 대한 시행령(Decree No.82/2018/ND-CP)

### 나. 베트남 주요 경제구역

#### 북부지역

경제구역명	까오방 국경경제구역
위치	까오방성(Cao Bang)
설립일	2014년
면적	3만130헥타르
교통	-
기능구역	내륙 무역항·비관세·산업구역 등
주소 및 연락처	- 문의처 : 까오방 국경경제구역 관리위원회 - 이메일 : Banquanlycb@gmail.com - 전화번호 : +84 206-3854-529 - 팩스 : +84 206-3854-929 - 주소 : 52 Kim Dong, Hop Giang, TP Cao Bang
	- 문의처 : 까오방 기획투자국 - 이메일 : sokhdt@caobang.gov.vn - 전화번호 : +84 206-3852-182 - 팩스 : +84 206-3853-335 - 주소 : 030 Xuan Truong, Hop Giang, TP Cao Bang

경제구역명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
위치	라오까이성(Lao Cai)
설립일	2018년
면적	1만5,292헥타르
교통	-
기능구역	내륙무역항·비관세·산업·위락구역 등
주소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 관리위원회</li> <li>- 이메일 : bqkktlaocai@gmail.com</li> <li>- 전화번호 : +84 214-3830-190</li> <li>- 팩스 : -</li> <li>- 주소 : 001 Nguyen Hue, Lao Cai, TP Lao Ca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라오까이 기획투자국</li> <li>- 이메일 : contact-skhdtd@laocai.gov.vn</li> <li>- 전화번호 : +84 214-3840-034</li> <li>- 팩스 : +84 214-3842-411</li> <li>- 주소 : so ke hoach va dau tu, Tran Hung Dao, Nam Cuong, TP Lao Cai</li> </ul>

경제구역명	동당-랑선 국경경제구역
위치	랑선성(Lang Son)
설립일	2008년
면적	3만9,400헥타르
교통	유라시아철도 일부 중국연결, 하노이-동당 철도 종점 보유
기능구역	무역항·비관세·관광·군사·출입제한구역 등
주소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동당-랑선 국경경제구역 관리위원회</li> <li>- 이메일 : banqltck@langson.gov.vn</li> <li>- 전화번호 : +84 205-3875-708</li> <li>- 팩스 : +84 205-3719-809</li> <li>- 주소 : 19 Ly Thai To, Dong Kinh, TP Lang S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랑선 기획투자국</li> <li>- 이메일 : skhdtdls@langson.gov.vn</li> <li>- 전화번호 : +84 25 3812 122</li> <li>- 팩스 : +84 25 3811 132</li> <li>- 주소 : 2 Hoang Van Thu, Chi Lang, TP Lang Son</li> </ul>

경제구역명	몽카이 국경경제구역
위치	꽝닌성(Quang Ninh)
설립일	2012년
면적	12만1,197헥타르
교통	중국 최대 접경지, 내륙·심해 무역항 동시 보유
기능구역	상업·관광·산업구역 등
주소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몽카이 국경경제구역 관리위원회</li> <li>- 이메일 : bqckqtmongcai.mc@quangninh.gov.vn</li> <li>- 전화번호 : +84 203-377-7782</li> <li>- 팩스 : -</li> <li>- 주소 : 22 Huu Nghi, Tran Phu, TP Mong Ca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몽카이 기획투자국</li> <li>- 이메일 : skhvd@quangninh.gov.vn</li> <li>- 전화번호 : +84 203-383-5687</li> <li>- 팩스 : +84 203-383-8071</li> <li>- 주소 : So Ke hoach va Dau tu tinh Quang Ninh, Hong Ha, TP Ha Long</li> </ul>

경제구역명	꺼우쩌우 국경경제구역
위치	하띤성(Ha Tinh)
설립일	2002년
면적	5만6,685헥타르
교통	라오스와 메콩강 유역 및 베트남 동해 봉양-선즈엉 심해항을 잇는 첨단 접경지
기능구역	내륙무역항·생태관광·산업구역 등
주소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하띤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li> <li>- 이메일 : banquanlykktinh@hatinh.gov.vn</li> <li>- 전화번호 : +84 239-868-699</li> <li>- 팩스 : -</li> <li>- 주소 : 22 Huu Nghi, Tran Phu, TP Mong Ca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몽카이 기획투자국</li> <li>- 이메일 : skhvd@quangninh.gov.vn</li> <li>- 전화번호 : +84 203-383-5687</li> <li>- 팩스 : +84 203-383-8071</li> <li>- 주소 : Ban Quan ly Khu kinh te tinh Ha Tinh, Ky Loi, Ky Anh, TP Ha Tinh</li> </ul>

경제구역명	짜로 국경경제구역
위치	꽝빈성(Quang Binh)
설립일	2002년
면적	5만3,800헥타르
교통	라오스 국경과 베트남 동해 무역항 접경지
기능구역	내륙무역항·생태관광·산업구역 등
주소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꽝빈성 인민위원회</li> <li>- 이메일 : banbientap@quangbinh.gov.vn</li> <li>- 전화번호 : +84 232-382-3457</li> <li>- 팩스 : -</li> <li>- 주소 : 6, Hung Vuong, TP Dong Ho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꽝빈성 기획투자국</li> <li>- 이메일 : skhdt@quangbinh.gov.vn</li> <li>- 전화번호 : +84 232-382-2270</li> <li>- 팩스 : +84 232-382-1520</li> <li>- 주소 : 23/8, TP Dong Hoi</li> </ul>

### 중부지역

경제구역명	라오바오 경제상업특구
위치	꽝찌성(Quang Tri)
설립일	2005년
면적	1만5,804헥타르
교통	라오스 덴 사반 내륙무역항과 접경
기능구역	내륙무역항, 경제·상업특구, 비관세구역 등
주소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꽝찌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li> <li>- 이메일 : bqkkkt@quangtri.gov.vn</li> <li>- 전화번호 : +84 233-385-9713</li> <li>- 팩스 : +84 233-355-1729</li> <li>- 주소 : 91 Le Duan, TP Dong H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꽝찌성 기획투자국</li> <li>- 이메일 : sokhdt@quangtri.gov.vn</li> <li>- 전화번호 : +84 233-3852-529</li> <li>- 팩스 : +84 233-3851-760</li> <li>- 주소 : 128 Hoang Dieu, Dong Thanh, TP Dong Ha</li> </ul>

## 남부지역

경제구역명	목바이 국경경제구역
위치	떠이닌성(Tay Ninh)
설립일	1998년
면적	2만1,284헥타르
교통	호치민시에서 70km, 프놈펜시에서 170km, 총 3개의 국제 내륙항 포함
기능구역	상업, 서비스, 산업, 도시, 농, 임업, 생태관광 구역 등
주소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떠이닌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li> <li>- 이메일 : bqkkttayninh@gmail.com</li> <li>- 전화번호 : +84 663-813-584</li> <li>- 팩스 : +84 663-813-584</li> <li>- 주소 : khu pho 5, phuong 5, Thi xa Tay Nin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떠이닌성 기획투자국</li> <li>- 이메일 : sokhdt@tayninh.gov.vn</li> <li>- 전화번호 : +84 276-382-2166</li> <li>- 팩스 : -</li> <li>- 주소 : 300 Cach Mang Thang 8, Phuong 2, TP Tay Ninh</li> </ul>
경제구역명	안장 국경경제구역
위치	안장성(An Giang)
설립일	2008년
면적	3만729헥타르
교통	캄보디아(똌비엔, 빈슈엥, 카잉빈) 접경지
기능구역	내륙항·산업·도시개발·농업·생태관광구역 등
주소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안장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li> <li>- 이메일 : banqlkkt@angiang.gov.vn</li> <li>- 전화번호 : +84 296-395-2656</li> <li>- 팩스 : -</li> <li>- 주소 : 2 Duong so 20, Phuong My Hoa, TP Long Xuye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의처 : 안장성 기획투자국</li> <li>- 이메일 : sokhdt@angiang.gov.vn</li> <li>- 전화번호 : +84 296-385-2913</li> <li>- 팩스 : +84 296-385-3380</li> <li>- 주소 : 3 Le Trieu Kiet, Phuong My Binh, TP Long Xuyen</li> </ul>

자료원 : KOTRA 하노이무역관, 각 지방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각 지방성 기획투자국, KOTRA 호치민무역관 취합

## ▶ 산업단지

### 가. 산업단지 현황

2020년 기준 베트남 61개성시에 총 369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업용 부지는 약 73,600헥타르(ha)이다. 계획 또는 투자단계에 있는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280개가 현재 운영중이며 산업용 부지는 약 56,600헥타르이다. 산업단지의 대부분은 주요 대도시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북부지역의 경우, 하노이 인근 지방성인 박장(Bac Giang), 박장(Bac Ninh), 하이즈엉(Hai Duong), 하이퐁(Hai Phong), 흥옌(Hung Yen)성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중부지역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단지 규모가 작은 편이나 경제구역 내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광남(Quang Nam), 광응아이(Quang Ngai), 후에(Hue), 다낭(Da Nang) 등이 있다.

남부지역의 경우 호치민시를 포함해 주변성시인 빈증(Binh Duong), 동나이(Dong Nai), 롱안(Long An),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성에 집중되어 있다.

### 나. 주요 산업단지

#### 북부지역

(단위 : ha)

산업단지명	지역	면적	홈페이지
Hoa Phu IP	Bac Giang	207	<a href="https://hoaphuip.com/en/">https://hoaphuip.com/en/</a>
Quang Chau IP	Bac Giang	426	<a href="http://www.kinhbaccity.vn/">http://www.kinhbaccity.vn/</a>
Dinh Tram IP	Bac Giang	127	<a href="http://hatangkcnbacgiang.com.vn/">http://hatangkcnbacgiang.com.vn/</a>
Van Trung IP	Bac Giang	238	<a href="http://www.fugiang.com/">http://www.fugiang.com/</a>
Song Khe-Noi Hoang South IP	Bac Giang	45	N/A
Yen Phong IP	Bac Ninh	314	<a href="https://viglaceraip.com/">https://viglaceraip.com/</a>
VSIP Bac Ninh IP	Bac Ninh	700	<a href="https://www.vsip.com.vn/">https://www.vsip.com.vn/</a>
Tien Son IP	Bac Ninh	410	<a href="https://viglaceraip.com/">https://viglaceraip.com/</a>
Que Vo 1 IP	Bac Ninh	611	<a href="http://www.kinhbaccity.vn/">http://www.kinhbaccity.vn/</a>
Que Vo 3 IP	Bac Ninh	281	<a href="https://tniholdings.vn/">https://tniholdings.vn/</a>
Dai An IP	Hai Duong	136	<a href="https://daiانvietnam.com/">https://daiانvietnam.com/</a>

산업단지명	지역	면적	홈페이지
Tan Truong IP	Hai Duong	198	N/A
Nam Sach IP	Hai Duong	62	N/A
Phuc Dien IP	Hai Duong	82	N/A
Phu Thai IP	Hai Duong	56	N/A
An Duong IP	Hai Phong	196	N/A
VSIP Hai Phong IP	Hai Phong	1,600	<a href="https://www.vsip.com.vn/">https://www.vsip.com.vn/</a>
Pho Noi IP	Hung Yen	596	N/A
Thanh Long 2 IP	Hung Yen	345	<a href="https://tlip2.com/en">https://tlip2.com/en</a>
Minh Quang IP	Hung Yen	150	<a href="http://demo.tniholdings.vn/">http://demo.tniholdings.vn/</a>
Minh Duc IP	Hung Yen	198	N/A
Yen My IP	Hung Yen	280	<a href="https://viglaceraip.com/">https://viglaceraip.com/</a>

### 중부지역

(단위 : ha)

산업단지명	지역	면적	홈페이지
North Chu Lai IP	Quang Nam	207	<a href="http://www.khucongngghiepchulai.vn/">http://www.khucongngghiepchulai.vn/</a>
Tam Thang IP	Quang Nam	197	<a href="http://www.khucongngghiepchulai.vn/">http://www.khucongngghiepchulai.vn/</a>
Dung Quat EZ	Quang Ngai	45,000	<a href="http://www.dungquat.com.vn/en/">http://www.dungquat.com.vn/en/</a>
SG-CM IP	Hue	659	<a href="https://saigonhueinvest.com/">https://saigonhueinvest.com/</a>
Danang Hi-Tech IP	Da Nang	1,128	<a href="https://dhpiza.danang.gov.vn/">https://dhpiza.danang.gov.vn/</a>

### 남부지역

(단위 : ha)

산업단지명	지역	면적	홈페이지
Hiep Phuoc IP	HCMC	1,686	<a href="https://www.hiepphuoc.com/en/">https://www.hiepphuoc.com/en/</a>
Tan Tao IP	HCMC	380	<a href="http://www.itaexpress.com.vn/">http://www.itaexpress.com.vn/</a>
SHTP IP	HCMC	913	<a href="http://www.eng.shtp.hochiminhcity.gov.vn/">http://www.eng.shtp.hochiminhcity.gov.vn/</a>
Le Minh Xuan 3 IP	HCMC	311	<a href="https://saigonvrg.com.vn/en">https://saigonvrg.com.vn/en</a>

산업단지명	지역	면적	홈페이지
Tay Bac Cu Chi IP	HCMC	381	<a href="http://www.cidico.com.vn/">http://www.cidico.com.vn/</a>
VSIP 1 IP	Binh Duong	500	<a href="https://www.vsip.com.vn/">https://www.vsip.com.vn/</a>
VSIP 2 IP	Binh Duong	2,045	<a href="https://www.vsip.com.vn/">https://www.vsip.com.vn/</a>
Bau Bang IP	Binh Duong	1,000	<a href="https://becamex.com.vn/en">https://becamex.com.vn/en</a>
My Phuoc IP	Binh Duong	400	<a href="https://becamex.com.vn/en">https://becamex.com.vn/en</a>
Potrade IP	Binh Duong	500	<a href="http://www.pitp.com.vn">http://www.pitp.com.vn</a>
Long Duc IP	Dong Nai	270	<a href="https://www.longduc-ip.com/en">https://www.longduc-ip.com/en</a>
Giang Dien IP	Dong Nai	529	<a href="http://www.sonadezi-giangdien.vn/">http://www.sonadezi-giangdien.vn/</a>
Nhon Trach 6 IP	Dong Nai	314	<a href="https://nhontrach6ip.com.vn/">https://nhontrach6ip.com.vn/</a>
Vinatex-Tan Tao IP	Dong Nai	184	<a href="https://www.vinatexin.com.vn/">https://www.vinatexin.com.vn/</a>
Ho Nai IP	Dong Nai	496	<a href="http://honiz.vn/">http://honiz.vn/</a>
Long Hau IP	Long An	500	<a href="https://longhau.com.vn/en">https://longhau.com.vn/en</a>
Kizuna IP	Long An	91	<a href="https://www.kizuna.vn/en">https://www.kizuna.vn/en</a>
Phu An Thanh IP	Long An	1,002	<a href="http://www.pat-ip.com/">http://www.pat-ip.com/</a>
Tan Duc IP	Long An	275	<a href="http://kcntanduc.vn/">http://kcntanduc.vn/</a>
Xuyen A IP	Long An	479	<a href="http://www.xuyenaip.com/">http://www.xuyenaip.com/</a>
Phu My 3 IP	BR-VT	999	<a href="http://www.phumy3sip.com/">http://www.phumy3sip.com/</a>
Chau Duc IP	BR-VT	2,287	<a href="https://sonadezichauduc.com.vn/vn/">https://sonadezichauduc.com.vn/vn/</a>
Dat Do 1 IP	BR-VT	500	<a href="https://tinnghiacorp.com.vn/">https://tinnghiacorp.com.vn/</a>
My Xuan A IP	BR-VT	302	<a href="https://www.idico.com.vn/">https://www.idico.com.vn/</a>
My Xuan B IP	BR-VT	226	<a href="https://www.idico.com.vn/">https://www.idico.com.vn/</a>
Binh Phuoc IP	Binh Phuoc	4,600	<a href="https://becamex.com.vn/en">https://becamex.com.vn/en</a>

자료원 : 각 지방성 공단관리위원회,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 2. 투자인센티브

### ▶ 조세감면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기간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20%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법인에 해당됨  공단지역에 설립된 법인 (Type 1 도시지역 공단 제외)	전 기간  전 기간	해당 없음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해당 없음  면제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17% ('16년부터 적용)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신규 프로젝트 사업  고품질 철강 생산; 에너지 절감 생산품 생산; 농림어업 및 제염업용 기계설비 생산 신규 프로젝트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면제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15%	사회 경제적 (특수) 낙후 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수산업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지역 기준 사회-경제적 특수 낙후지역; 경제구역, 하이테크구역에 대한 투자 등</li> <li>○ 투자업종 기준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하이테크 육성; 인프라 투자개발; 재생에너지 생산 등</li> <li>○ 환경보호관련 업종 투자 환경오염처리 및 환경 관측·분석 설비 생산; 환경보호 및 오염처리; 폐수, 배기가스 및 고형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li> <li>○ 투자규모 기준 (특소세 부과대상 업종 또는 광물채취업은 제외)</li> </ul>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9년간 감면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기간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투자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3년 이내 10조 동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li> <li>- 첫 투자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매출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상시 종업원 3천 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li> <li>- 총 투자금액이 12조 동 이상이며, 과학기술법에 의해 평가된 기술을 사용하고 5년 이내에 등록된 투자금이 투자되는 경우 등</li> <li>○ 우대소재산업 관련 투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테크기술법의 규정에 따른 하이테크 소재 산업</li> <li>- 섬유·봉제; 가죽·신발; 전자·IT; 자동차조립; 제조기계에 대해 국내 미생산되는 산업소재의 생산</li> <li>- EU 또는 그와 동등한 품질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소재의 생산</li> <li>- 하이테크구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li> </ul> </li> </ul>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기간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10%	- 사회화 활동 관련 투자(Socialization): 교육, 직업훈련, 의료산업, 문화, 스포츠, 환경 등 수상령에 정해진 경우	전 사업 기간 동안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 면제기간 종료 후 9년간 감면 (사회-경제적 낙후 지역 또는 사회-경제적 특수 낙후된 지역에서의 사회화 관련)  - 면제기간 종료 후 5년간 감면 (낙후 지역 외 지역에 대한 사회화 관련)
10%	○ 출판법에 따른 출판 관련 업종수익 ○ 신문법에 따른 신문 관련 업종 수익 ○ 주택법에 따른 서민 주택의 판매, 임대, 재임대 관련 수익 등	전 사업 기간 동안 적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사회-경제적 (특수) 낙후지역 투자에 대한 감면혜택

낙후지역에 우대 투자분야 투자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혜택 수혜가 가능하나 지방성시별로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기에 진출 전 해당 지역 기획투자국(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사전 협의 필요하다. 아래의 지역들은 대부분 산업화 수준이 열악하고 각종 인프라도 미비한 측면이 있어 투자 결정 전 투자인센티브로 보는 혜택과 부가적인 인프라 사용 비용에 대한 검증 필요하다.

#### |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목록 |

순번	지역명	특수 낙후지역	낙후지역
1	Bac Kan	All districts, district-level towns and Bac Kan city	
2	Cao Bang	All districts and Cao Bang city	
3	Ha Giang	All districts and Ha Giang city	
4	Lai Chau	All districts and Lai Chau city	
5	Son La	All districts and Son La city	
6	Dien Bien	All districts, district-level towns and Dien Bien City	
7	Lao Cai	All districts and Sapa town	Lao Cai city
8	Tuyen Quang	Na Hang, Chiem Hoa, Lam Binh districts	Ham Yen, Son Duong, Yen Son districts and Tuyen Quang city
9	Bac Giang	Son Dong district	Luc Ngan, Luc Nam, Yen The, Hiep Hoa district
10	Hoa Binh	Da Bac, Mai Chau districts	Kim boi,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districts and Hoa Binh city
11	Lang Son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Van Quan, Bac Son, Chi Lang, Huu Lung districts	
12	Phu Tho	Thanh Son, Tan Son, Yen Lap districts	Doan Hung, Ha Hoa, Phu Ninh, Thanh Ba, Tam Ngong, Cam Khe districts
13	Thai Nguyen	Vo Nhai, Dinh hoa, Dai Tu, Phu Luong, Dong Hy districts	Phu Binh district, Pho Yen town

순번	지역명	특수 낙후지역	낙후지역
14	Yen Bai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districts	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districts, Nghia Lo town
15	Quang Ninh	Ba Che, Binh Lieu, Coto districts and other islands in the province	Van Don, Tien Yen, Hai Ha, Dam Ha districts
16	Hai Phong	Bach Long Vy, Cat Hai islands	
17	Ha Nam		Ly Nhan, Thanh Liem, Binh Luc districts
18	Nam Dinh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districts
19	Thai Binh		Thai Thuy, Tien Hai districts
20	Ninh Binh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districts
21	Thanh Hoa	Muong Lat, Quan Hoa, Quan Son,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districts	Thach Thanh, Nong Cong districts
22	Nghe An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districts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districts and Thai Hoa town
23	Ha Tinh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Loc Ha, Ky Anh districts	Duc Tho,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districts and Ky Anh town
24	Quang Binh	Tuyen Hoa, Minh Hoa, Bo Trach districts	Other districts and Ba Don town
25	Quang Tri	Huong Hoa, Da Krong discts, Con Co island and other islands in the province	Other districts
26	Thua Thien Hue	A Luoi, Nam Dong districts	Phong Dien, Quang Dien, Phu Loc, Phu Van districts and Huong Tra town
27	Da Nang	Hoang Sa Archipelago	

순번	지역명	특수 낙후지역	낙후지역
28	Quang Nam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Tam Son, Tam Thanh, Tam My Dong, Tam My Tay, Tam Tra, Tam Hai communes), Nong Son, Thang Binh (Binh Lanh, Binh Tri, Binh Dinh Bac, Binh Dinh Nam, Binh Quy, Binh Phu, Binh Chanh, Binh Que communes) districts and Cu Lao Cham island	Dai Loc, Que Son, Phu Ninh, Duy Xuyen (Duy Chau, Duy Hoa, Duy Phu, Duy Son, Duy Tan, Duy Thu, Duy Trinh, Duy Trung communes) Nui Thanh (Tam Xuan I, Tam Xuan II, Tam Anh Bac, Tam Anh Nam communes), Thang Binh (Binh Nguyen, Binh Tu, Binh An, Binh Trung communes) districts
29	Quang Ngai	Ba To, Tra D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Son Tinh districts and Ly Son island	Nghia Hand district
30	Binh Dinh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Hoai An, Phu My districts	Tuy Phuoc district
31	Phu Yen	Song Hinh, Dong Xuan, Son Hoa, Phu Hoa, Tay Hoa districts	Song Cau, Dong Hoa towns, Tuy An district
32	Khanh Hoa	Khanh Vinh, Khanh Son districts, Truong Sa Archipelago and other islands in the province	Van Ninh, Dien Khanh, Cam Lam districts, Ninh Hoa town, Cam Ranh city
33	Ninh Thuan	All districts	Phan Rang – Thap Cham city
34	Binh Thuan	Phu Quy district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Ham Tan districts
35	Dak Lak	All districts and Buon Ho town	Buon Ma Thuot city
36	Gia Lai	All districts and district-level towns	Pleiku city
37	Kon Tum	All districts and district-level cities	
38	Dak Nong	All districts and district-level towns	
39	Lam Dong	All districts	Bao Loc city
40	Ba Ria – Vung Tau	Con Dao district	Phu My, Chau Duc, Xuyen Loc towns
41	Tay Ninh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districts	Duong Minh Chau, Go Dau, Hoa Thanh districts and Trang Bang town

순번	지역명	특수 낙후지역	낙후지역
42	Binh Phuoc	Loc Ninh, Bu Dang, Bu Dop, Bu Gia Map, Phu Rieng districts	Dong Phu, Chon Thanh, Hon Quan districts, Binh Long, Phuoc Long towns
43	Long An	Duc hue, Moc Hoa, Vinh Hung, Tan Hung districts	Kien Tuong town; Tan Thanh, Duc Hoa, Thanh Hoa districts
44	Tien Giang	Tan Phuoc, Tan Phu Dong districts	Go Cong Dong, Go Cong Tay districts
45	Ben Tre	Thanh Phu, Ba Tri, Binh Dai districts	Other districts
46	Tra Vinh	Chau Thanh, Tra Cu districts	Cau Ngang, Cau Ke, Tieu Can, Duyen Hai districts, Duyen Hai town, Cang Long town, Tra Vinh city
47	Dong Thap	Hong Ngu, Tan Hong, Tam Nong, Thap Muoi districts and Hong Ngu town	Other districts
48	Vinh Long		Tra On, Binh Tan, Vung Liem, Mang Thit, Tam Binh districts
49	Soc Trang	All districts, Vinh Chau and Nga Nam towns	Soc Trang city
50	Hau Giang	All districts, Long My town and Nga Bay City	Vi Thanh city
51	An Giang	An Phu, Tri Ton, Thoai Son, Tinh Bien districts and Tan Chau town	Chau Doc city and other districts
52	Bac Lieu	All districts and district-level towns	Bac Lieu city
53	Ca Mau	All districts and islands in the province	Ca Mau city
54	Kien Giang	Ha Tien town, all districts and islands in the province	Rach Gia city
55		Economic zones, hi-tech zones (including concentrated information technology zones established under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Industrial zones, export processing zones, industrial complexes established under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 ▶ 베트남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주요 연관 규정

- 베트남 투자법 (No. 61/2020/QH14) 제 15조 ~ 20조 :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
- 재무부 시행령 (No. 83/2016/TT-BTC) 제 4조 ~ 7조 : 투자 우대산업 분야, 지역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 규정
- 정부의정서 (No. 31/2021/NĐ-CP) 부록 2, 3 : 투자 우대 분야 및 투자우대 지역에 대한 분류표
- 정부결정서 (No. 13/2017/QĐ-TTg) : 하이테크 산업 우대분야 및 제품에 대한 규정
- 상무부 시행령 (No. 55/2015/ND-CP) : 투자 우대 부품 소재 분야에 따른 지원 규정 및 절차
- 정부의정서 (218/2013/ND-CP) : 기업 법인세 및 인센티브 관련 규정



## II. 투자유치 정책 및 투자절차



## ▶ FTA 조약 검토

베트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단계에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외국인에게 허용된 비즈니스인가”를 가장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나, 제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경우 WTO 및 한-베 FTA상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어 있는 업종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WTO보다 한-베 FTA가 더욱 강력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므로 본 투자실무가이드에서는 한-베FTA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15년 5월5일 정식으로 FTA조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하였는데, 투자자들이 검토해야 하는 핵심 내용은 베트남 서비스업 양허안이다.

한-베FTA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fta.go.kr/>)이다. 상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베FTA 발효 부분의 제8장 서비스 무역의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서비스 양허표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광고서비스 (CPC 871, 다만, 담배 광고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광고 서비스를 영도 록 별적으로 이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 합 작투자 또는 사업협력계약을 설립하도록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포도주 및 증류주 광고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국 가 규정을 따름.
---	--	--	---

양허표 첫페이지는 수평적 약속이며, 하단의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을 살펴보면 각 서비스에 따른 베트남 시장 개방 정도가 기재되어 있다. 우선 광고서비스 업종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맨 왼쪽 칸은 업종이며, (a) 광고서비스로 CPC 871, 담배 광고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두번째 칸을 살펴보면 1) 2) 3) 4)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번과 2번은 외국과의 거래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허용되어 있다. (한국이 베트남 업체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베트남이 한국 업체의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 그리고 3) 항목이 상업적 주재로서 한국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업의 경우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합작투자 또는 사업 협력계약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외국인 100% 투자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베트남 파트

너와 합작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타 (CPC 511. 515. 518)			
<b>4. 유통 서비스</b>			
유통 서비스의 모든 하위 분야에 적용 가능한 조치:			
담배와 시가, 도서, 신문과 잡지, 매체를 비롯한 영상 녹화물, 귀금속 및 보석, 의약품과 약 <sup>25</sup> , 폭발물, 가공품과 원유, 쌀, 수수실량과 침채당은 약속에서 제외됨.			
A. 위탁 공개인서비스 (CPC 621. 61111.6113. 6121)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한 있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개인적 사용을 위한 상품 유통 - 개인적 및 상업적 사용을 위한 합법적 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	1) 공급형태 1. 시장접근권에 표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도매 서비스 (CPC 622. 61111.6113. 6121)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C. 소매 서비스 (CPC 631+632. 61112. 6113. 6121) <sup>26</sup>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회사는 모든 합법적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에 관한 위탁공급업, 도매업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됨. 소매 서비스를 위한 아웃렛의 설립은 (첫 번째 아웃렛 제외) 경제적 수요 심사(GENT) <sup>27</sup> 를 기반으로 허용됨.	3) 제한 없음.	

<sup>25</sup> 이 양하표의 목적상 "의약품과 약" 은 경제, 캡슐 또는 분말형태의 비의약품 영양보조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sup>26</sup> 이 양하표의 목적상 "의약품과 약" 은 경제, 캡슐 또는 분말형태의 비의약품 영양보조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유통 서비스를 살펴보면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이라고 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부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00%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제한 없이 유통업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추가 검토 사항

베트남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한-베FTA상 허용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베트남의 관련 세부 규정인데 예를 들어 유통업 자체는 100% 외국인 투자로 진행할 수 있지만, 모든 상품에 대해 유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이 외국인 투자자가 취급 가능한지 베트남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혹은 100% 투자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베트남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다양한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위 서비스 양허표에 나타나지 않은 업종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베트남이 한국투자자에 대해 개방할 의무는 없는 업종이다. 즉,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베트남이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조건부로 투자승인을 내어줄 수 있기도 하고 혹은 개방의 무가 없으므로 투자허가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특수 분야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 승인 가능성을 검토한 후 투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

베트남의 투자법(61/2020/QH14) 제9조는 외국투자자의 시장접근 산업, 업종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대우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일 뿐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규정에 따라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 가. 사업영역의 제한

앞서 살펴보았듯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 가능한 사업영역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투자법 제9조2항은 베트남 정부는 a) 시장접근을 불허하는 산업 또는 업종 b) 조건부 시장의 산업 업종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3항은 이러한 제한 방식으로 a) 회사 내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비율 b) 투자형식 c) 투자활동 범위 d) 투자자의 능력 e) 그 외 기타 관할 관청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나. 투자 제한 영역 검토

투자법 제9조3항에 따른 각 산업별, 업종별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소유지분비율이 제한된 영역이 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거나, 반드시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회사로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된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물류업의 경우 일반 포워딩, 창고업 등은 100% 투자가 허용된 분야이나, 트럭킹, 해운, 통관서비스 등은 투자제한이 있다.

투자 방식의 경우, 간접투자방식만을 허용하고 있거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거나, 혹은 직접투자 등의 방식이 모두 허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투자활동 범위의 경우, 각 사업별 세부 비즈니스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통업의 경우 일반 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100%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급 품목에 일정 제한을 두어 외국인이 취급하지 못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의 능력의 경우 규정에서 일반적인 규정에서 정하는 부분은 베트남 투자에 대한 최저 투자 자본금 제한, 투자자의 관련분야 영업 관련 경력 (예를 들어 5 이상 등), 재무건전성, 자금조달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투자 형식 제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실제 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점들은 다양한 양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 제2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반드시 법인, 자본출자, 주식매입, 투자프로젝트 참여, BCC계약 등 제한된 형태로만 진출이 허용된다. 즉, 한국에서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경우 '법인(회사)'을 설립하거나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해야 하며, 외국투자 법인의 경우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발생한다.

#### 라. 행정 절차적인 제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시 투자등록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절차적으로는 투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로 이는 여러가지 제약사항으로 작용한다.

먼저 투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투자제안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베트남 관청에 제출되는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이 필요하기에 번역 비용이 발생하며, 한국에서 작성, 발급된 서류의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및 주한베트남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이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투자등록증은 발급에 15영업일이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투자법 제38조), 15영업일이 초과하는 경우도 많다. 투자등록증은 여러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해당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혹은 투자등록증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사의 대표자 변경, 주소지 변경 등) 투자등록증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또한 앞서 안내한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의 준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변경 서류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발급신청서류와 유사한 정도의 준비를 요구한다.

## ▶ 각 업종별 투자시 사전 검토 사항

### 가. 사업 소재지 확정

법인설립을 위한 가장 첫 걸음이 되는 투자등록증 발급절차는 프로젝트 주소지 기재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신청서류 준비를 위해서 주소지 확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소지는 베트남 내 법무법인 또는 부동산 등의 소개를 통해 탐색이 가능하며, 일차적으로 주소지에 관한 계약 체결이 베트남 진출의 첫걸음이다.

### 나. 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류는 주소지 및 주소지에 관한 계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베트남 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기에 투자자 명의의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가계약 체결에 관해 큰 검토를 하지 않고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A. 적법한 주소지의 요건

일반적으로 (i)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이어야 하며, (ii)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문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즉, 한국으로 친다면 토지등기부등본이 존재해야 하고, 권리자와 임대인이 일치하거나, 임대인이 건물주 혹은 권리자로부터 임차 받은 부동산인 경우, 임대인과 권리자 간에 임대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이외에 베트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i) 적법한 권리문서 확인

적법한 권리문서는 토지사용권증서(LURC: Land Use Right Certificate)가 필요하다. 토지사용권증서는 레드북, 핑크북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정식명칭은 아니다. 해당 문서에는 주소지, 토지사용목적,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표기되며, 해당 내용이 등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실무상 준공완료 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사무실 건물은 온전히 존재하고, 실제로 입주한 기업도 존재하나, 토지사용권 증서상 건물이 표기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미등기건물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현재 하노이시 호치민시 중심으로 많이 있다.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 건물은 아직 적법하게 임대할 수 없는 건물에 해당하여, 투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해당 토지사용권증서상 사무실 또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인지 토지사용목적에 확인되어야 한다. 어떤 건물의 경우 실제로 오피스로 사용되고 있으나, 등록증상 건물 사용 목적은 주차장 건물로 기재된 경우도 있고, 토지의 경우 농지 또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가 있어 제조목적의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ii) 적법한 임대인일 것

토지사용권증서상 명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한다.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이 토지사용권증서상 명의인으로부터 임대권리를 부여받은, 즉 재임대권한을 부여받았거나, 위임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사업 법상 임대업을 보유하고 있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저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공단 등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 B. 가계약 체결시 유의점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가계약을 바탕으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약은 본계약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계약을 의미하고, 실제로 가계약 체결 후 투자자는 크게 협상력을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임대인들은 해당 구조를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에, 가계약은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한다. 즉 주소지, 임대면적, 임대금액, 임대기간 등 매우 필수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가계약에 포함하여 제안하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별도로 불리한 내용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기에 쉽게 가계약에 서명하게 된다. 그러나 위 임대면적, 임대료 등은 투자자가 가장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내용만 합의하는 순간, 투자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세부 협상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약은 반드시 본계약에 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한국의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소지를 떠날 수밖에 없다.

임대료와 임대기간, 임대료 지급 조건 등은 임대차계약상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건들이긴 하나 이는 전부가 아니다. 임대료 등이 매우 매력적인 조건으로 제시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의 기타 조항들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기타 조항상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만일 가계약 체결시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료 지급조건 등 기초적인 내용만 확정하고 나머지 내용을 투자등록증 발급 후 체결할 본계약으로 미뤄둔 경우라면, 사실상 임대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 ▶ 각 업종별 사전 검토 사항

### A. 제조업

제조업 투자의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점은 앞서 언급한 주소지 확정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제조업은 공단 등 토지를 크게 구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공단운영자로부터 50년간 장기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하여, 공장을 짓는 경우, 공장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 서비스업종에 비해 투자비가 매우 크게 들어가기에 부동산 입지를 살펴봄에 있어 단순 실질적인 입지 요건 뿐만 아니라 가계약 체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가공기업(Export Processing)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수출가공기업의 경우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관세 등의 혜택을 영위할 수 있다.

수출가공기업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공단 등 수출가공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단은 Industrial Park로 표현하는데, 간혹 산업집적지(Industrial Cluster)로 표현되는 지역이 있어 혼돈을 하는데, 산업집적지의 경우 공단과 달리 공단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수출가공기업인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수출가공기업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수출가공기업 설립을 전제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B.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많은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베트남 투자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진행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외국인에게 허용된 비즈니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허용되었더라도 법인설립 외 별도의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

우가 있고, 각 지방 시성 관할관청 승인 외에 중앙부서의 의견 청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영업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은 사전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C. 부동산업

베트남은 외국인의 부동산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사업법을 검토해야 하는 바, 부동산 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외국인의 부동산업을 허용하고 있다.

- 재임대를 하기 위한 주택이나 건축물의 임차,
- 국가로부터 임대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 판매/임대/Lease Purchase (임차만기구매방식)용 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
- 기존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받은 후, 판매, 임대, lease purchase 용 주택이나 건축물을 건설,
- 국가로부터 할당 받은 토지의 경우, 판매, 임대, lease purchase용 주택 건설,
-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 내에서 임대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사용 목적에 엄격하게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용 주택, 건축물 건설.

부동산시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차 건설시장과, 2차 건설 후 유통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설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에 해당하며 아파트, 오피스 건물을 직접 건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 또는 매각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통시장의 경우 완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입 후 임대 등을 하는 시장을 일컫는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1차 건설시장은 개방하여 주거목적, 상업목적의 건물을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부동산개발 사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미 완공된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유통시장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상기 법규정을 살펴보면 임대목적의 건설 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외국인 투자자가 어떠한 건물을 구매하였다면, 임대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사용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 부동산 사업의 경우 토지 사용 목적의 확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권리관계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절차 등이 적법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 투자등록증 검토

### 가. 투자등록증 개요

베트남은 투자법 제36조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의 경우 반드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등록증을 갖고 있거나 투자등록증상 투자자로 기재된다.

투자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하기에 처음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은 한국과 다른 순서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고 투자금의 사용 제한 등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다. 사전에 베트남 투자에 대해 여러가지 리서치를 해보신 투자자라면 베트남에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한 뒤 투자처를 살펴본 뒤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있지만,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프로젝트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 투자프로젝트를 승인받은 뒤 해당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찾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프로젝트가 먼저 확정되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베트남 법률의 요구는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의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즉, 자금을 송금한 뒤 해당 자금을 사용할 투자처를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사용처를 정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해당 자본금은 법인 설립시에 신청한 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으로 송금한다는 의미가 되기에, 다른 투자처에 사용될 수 없다.

### 나.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

투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관할 시성의 공단 등을 관할하는 공단관리위원회와, 공단 밖을 관할하는 계획투자국이 있다. 투자프로젝트의 종류, 업종, 규모, 특성에 따라 인민위원회를 비롯, 중앙부서의 의견 청취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투자등록증 신청은 프로젝트 신청서, 투자제안서, 본사의 재무능력 증빙, 프로젝트 위치에 관한 증명서류들 (주소지 관련 계약서, 주소지 관련 권리문서 등이 이에 해당), 투자자의 정관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투자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15영업일 이다.

#### 다. 투자등록증 기재 사항

투자등록증 기재 내용은 각 투자프로젝트의 성격, 발급처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투자등록증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법39조).

- 투자프로젝트 번호, 투자자의 성명, 주소, 투자프로젝트 명칭, 투자프로젝트 이행장소 및 사용 토지면적,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및 규모, 투자프로젝트의 투자자본금, 자본금 출처 및 각 자본금 조달 스케줄, 프로젝트 활동 기한, 프로젝트의 이행 스케줄, 프로젝트 공사 및 운영 개시 일정,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수행되는 경우 각 사항의 이행일정, 단계별 활동 목표, 기한, 투자 우대 및 지원 (근거 및 조건 포함), 투자자의 이행 조건 등

외국인 투자자는 상기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베트남 투자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특히 프로젝트 장기 미이행과 같이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프로젝트 회소조치를 당할 수 있기에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설립 후 발급된 투자등록증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신청한 내용과 차이는 없는지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 ▶ 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의 종류

#### 가. 개관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베트남 투자법은 법인설립, 기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 등 한정된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지점설립 혹은 대표사무소 등의 설립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점의 경우 은행과 같이 매우 제한된 영역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대표사무소는 시장조사 등 제한된 업무만 허용되어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수익활동을 할 수 없기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 진출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베트남 법인을 통한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그 첫 단계가 앞서 살펴본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이다.

베트남의 법인설립절차는 (i) 투자등록증 발급 (ii) 사업자등록증 발급 (iii) 법인 인감 발급 및 법인 설립 공고 절차가 있다. 간혹 업종에 따라 법률에서 별도의 라이선스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 영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법인설립절차는 투자등록증 발급 단계를 제외하면 크게 난이도가 있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절차는 아니다. 그러므로 본 단락에서는 법인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나.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베트남은 법인의 종류를 주식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국영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검토해야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 회사이다.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대부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된다. 이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더 편하거나, 승인받는데 이점이 있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베트남 기업법이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3인의 주주가 요구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 외국투자기업은 한국 본사에서 출자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와 같이 회사 또는 개인 1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3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자를 설정해야 하는데,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투자신고, 보고의무 등을 비롯하여 실무상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요인이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3인 요건을 맞추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공통점은 ‘유한책임’이라는 속성이다. 즉,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 또는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며, 출자한 자본금을 한도로 재산상 의무에 책임을 진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베트남 기업법은 유한책임회사를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이며,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 본사에서 100% 투자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1인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때문에 베트남 외국투자법인들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형태의 법인이다. 투자자가 1인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지분권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 형태를 변경해야만 한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주가 1인이고, 100% 소유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대부분 본사의 결정에 따라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 운영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 50인 이하로 설립이 가능하다. 베트남 파트너 또는 타 투자자와 2인의 투자자가 설립하는 경우 취해지는 법인 형태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 2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떤 회사를 택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회사의 설립

난이도에 차이는 없으나, 주식회사의 경우 3인의 투자자가 법률상 요구될 뿐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3인 투자자 요건을 맞추어서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각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총회와, 주주총회에 대비되는 사원총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 결의와 사원총회 결의에 요구되는 지분권 비율에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2021년1월1일부터 발효된 신 기업법에 따라 50% 초과되는 주식수를 가진 주주 참석으로 개최가 가능하며(제145조) 결의가 가능하다(제148조). 구 기업법이 51%이상의 주식수가 요구되었던 부분과 차이가 있다. 반면, 사원총회의 경우 65% 지분권이 요구된다.

상기 50%초과 및 65%지분 요건은 일반결의에 대한 경우이며, 총자산가액 35%이상의 자산에 대한 거래, 회사의 구조조정 등과 같이 중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바, 주식회사의 경우 특별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는 65%이지만, 사원총회의 경우 75%의 주식수가 요구된다.

때문에 타 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지에 따라 각 권리관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 청산

### 가. 구조조정 및 청산 개요

베트남 기업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업의 합병(신설합병, 흡수합병), 기업의 분할(소멸분할, 존속분할), 기업의 형태 전환(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등), 기업의 영업 중단, 기업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법률인 베트남 경쟁법이 2019. 7. 1. 개정·시행되어 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기업간 합의 및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개정 경쟁법은 국가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이하 NCC)가 경쟁법과 관련한 집행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1. 8. 현재까지 설치되지 아니하여 기존 베트남 경쟁 소비자국(Vietnam Competition Consumer Authority)이 경쟁 당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개정 경쟁법은 해당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무관하게 베트남 시장에 경쟁제한효과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금지시키고 있다(경쟁법 제30조). 이처럼 개정된 경쟁법 하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므로 합병, 인수, 합작투자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 기업의 합병

### A. 합병의 유형

2020년 개정된 베트남 기업법은 합병의 유형으로 제200조에서 신설합병(Consolidation)을, 제 201조에서 흡수합병(Merger)을 규정하고 있다. 신설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소멸회사")가 한 개의 신설회사("합병회사")로 합병되는 방식이다. 흡수합병은 한 개 이상의 회사("소멸회사")가 모든 자산, 권리, 의무, 이익을 다른 회사("합병회사")에 승계하면서 합병되는 방식이다.

합병을 하면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 전부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회사를 제외한 소멸회사가 해산하게 된다. 해산을 하더라도 소멸회사의 법적 권리와 이익,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기타 채무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다.

### B. 합병의 절차

#### ①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 당사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합병계약서는 (1)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주소, (2) 합병회사의 상호 및 본점주소, (3) 합병의 절차 및 조건, (4) 고용 계획, (5) 자산·지분(주식)·채권 이전의 절차 및 조건, (6) 합병회사 정관 초안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 ② 합병계약서·합병회사 정관 승인 및 경영진 선임

합병 당사 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계약서와 합병회사의 정관을 승인하고 합병회사의 경영진(사원총회 의장, 이사회 의장, 사장 등)을 선임한다. 합병계약서는 승인일로부터 15일 내에 모든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③ 기업등록증 발급/변경

합병 당사 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회사의 기업등록절차를 진행한다. 기업등록절차를 진행할 때 (1) 합병계약서, (2) 합병계약서 승인 의결서 및 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소멸회사는 기업등록 후에 소멸한다. 기업등록 당국은 합병회사의 기업등록증을 발급/변경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국가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소멸회사를 삭제한다.

## ④ 투자등록증 변경

합병 당사 회사의 사원(주주)인 투자자는 투자등록 당국에 투자 프로젝트 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1) 프로젝트 변경 신청서, (2) 기업등록증사본, (3) 투자자의 조직개편 의결서로 구성된다. 투자등록 당국은 필요 충분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영업일 내에 투자등록증을 발급/변경한다.

## 다. 합병의 제한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은 모두 베트남 경쟁법에서 규율하는 기업결합의 일종으로(경쟁법 제29조), NCC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 예비심사와 정식심사를 받아야 한다. NCC는 해당 기업의 자산가액, 매출액, 기업결합으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업결합의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금지를 결정하게 된다.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 판단 기준

개정 경쟁법은 “베트남 시장에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쟁법 제30조). NCC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한다.

- 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 ② 관련시장에서 기업결합 전후의 집중도 차이
- ③ 상품·용역의 생산·유통·공급 과정에서 당사회사간 관계
- ④ 관련시장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우위
- ⑤ 기업결합 이후 가격 또는 이익률의 현저한 증가 가능성
- ⑥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확장을 방해할 가능성
- ⑦ 관련 분야의 특유한 요소

동시에 NCC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업결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함께 판단한다.

- ① 국가전략 차원에서 산업개발·과학·기술개발에 대한 긍정적 영향
- ②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영향
- ③ 국제 시장에서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 향상

## 기업결합 신고 절차

### ① 기업결합 신고 기준

기업결합 당사 회사는 ① 자산총액, ② 총매출액, ③ 거래가액, ④ 당사회사들의 관련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관련하여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NCC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기업	증권사	보험사	은행
자산총액	3조 VND 이상	15조 VND 이상		베트남 내 전체 은행 자산총액 합계의 20% 이상
총매출액	3조 VND 이상	3조 VND 이상	10조 VND 이상	베트남 내 전체 은행 매출액 합계의 20% 이상
거래가액	1조 VND 이상	3조 VND 이상		베트남 내 전체 은행 자본금 총액 합계의 2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20% 이상 (기업결합신고 직전 회계연도 기준)			

### ② 기업결합 신고서류 제출

NCC에 제출해야 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다.

- 기업결합신고서
- 기업결합 합의 내용 또는 계약서, MOU 초안
- 당사회사의 기업등록증 사본
- 당사회사의 직전 2년간 재무제표
- 당사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관계사 지점, 대표사무소 등 목록
- 당사회사의 물품·서비스 목록
- 직전 2년간 시장 점유율 관련 정보
- 기업결합의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대응 방안
-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평가 보고서 및 증진 방안

해당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신고인은 서류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NCC는 신고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내에 신고인에게 신고서류 보완 필요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신고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해야 하며, 30일 내에 신청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NCC는 신고를 반려한다.

③ 기업결합 예비심사(Preliminary Assessment)

NCC는 필요충분한 신고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업결합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1)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관련시장 합산 시장점유율
- (2) 기업결합 전후의 관련시장 집중도
- (3)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관계 및 업종

NCC는 기업결합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

- (1) 기업결합을 승인함
- (2) 기업결합이 공식심사 대상임

NCC가 필요 충분한 신청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결합은 유효하게 된다.

④ 기업결합 공식심사(Official Assessment)

NCC는 예비심사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공식심사 대상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공식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업결합이 복잡한 경우에 NCC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식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CC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업결합 공식심사를 진행한다.

- (1) 기업결합의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 및 대응 방안
- (2)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및 증진 방안
-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 및 긍정적 효과 종합 평가

NCC는 기업결합 공식심사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문을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5영업일내에 당사회사에 결정문을 송부한다.

- (1) 기업결합을 승인함
- (2)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함
- (3) 기업결합을 금지함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 (1) 기업결합 당사 회사의 전부/일부 분할, 자본금 일부 재양도
- (2) 기업결합 이후 물품·서비스 가격 규제 기타 사업계약상 거래 조건 규제
- (3) 경쟁제한 효과 발생 가능성 시정 방안
- (4) 기업결합 긍정적 효과 증진 방안

NCC가 결정문 공포 기한을 초과하여 당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다. 기업의 분할

### A. 분할의 유형

분할은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하여 본래의 회사는 소멸하거나 축소된 상태로 존속하고, 그 사원(주주)은 분할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회사의 지분(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베트남 기업법은 분할의 유형으로 제198조에서 기업의 분할(Division of Companies)을, 제199조에서 기업의 분리(Separation of Companies)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분할은 분할회사의 사원(주주), 자산을 분할하여 2개 이상의 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회사는 해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분리는 회사의 자산, 권리, 의무를 분리하여 1개 이상의 신설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회사도 존속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분할과 기업의 분리 중의 어느 유형의 분할을 하든 신설회사의 지분(주식)은 분할회사의 사원(주주)이 취득한다. 이를 이른바 인적분할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신설회사의 지분(주식)을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방식을 물적분할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기업법은 물적분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B. 분할의 절차

### ① 사원총회(주주총회)의 결의

분할회사의 사원총회(주주총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분할 의결서를 승인한다. 분할 의결서에는 (1) 분할회사의 상호 및 본점 주소, (2) 신설회사의 상호, (3) 자산분배 원칙 및 절차, (4) 고용계획, (5) 지분, 주식, 채권 양도 절차 및 시한, (6) 분할회사의 의무 이행 원칙, (7) 분할 시한 등의 주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분할 의결서는 승인일로부터 15일 내에 모든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② 신설회사 정관 승인 및 경영진 선임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은 정관을 승인하고, 신설회사의 경영진(사원총회 의장, 이사회 의장, 사장 등)을 선임한다.

### ③ 기업등록증 발급/변경

기업의 분할, 이른바 소멸분할의 경우에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은 신설회사의 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등록절차를 진행할 때 분할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분할회사는 신설회사의 기업등록 후에 소멸한다.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기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거나, 신설회사 중의 한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채권자, 고객,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다.

기업의 분리, 이른바 존속분할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신설회사의 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정관자본금, 사원(주주) 수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회사의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기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신설회사 존속회사, 채권자, 고객, 근로자가 달리 합의할 수 있다.

### ④ 투자등록증변경

분할회사의 사원(주주)인 투자자는 투자등록 당국에 투자 프로젝트 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1)프로젝트 변경 신청서, (2)기업등록증사본, (3)투자자의 조직개편 의결서로 구성된다. 투자등록 당국은 필요충분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영업일내에 투자등록증을 발급/변경한다.

## 라. 기업의 해산

### 해산의 사유 및 조건

기업법은 해산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정관에 기재된 영업 기간이 연장 결정 없이 만료된 경우
- (2) 사원총회(주주총회)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
- (3) 회사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법령상 최소 사원/주주 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기업 형태 전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4)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기업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소송이나 중재 절차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다.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기업과 관련 경영진은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기업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법에 따른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기업은 해산 등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지점, 대표사무소 영업장소 폐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해산의 절차

#### ① 해산의결서 승인

해산 의결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기업의 상호 및 본점 주소
- (2) 해산사유
- (3) 기업의 계약 정산 및 채무 변제 절차(계약 정산 및 채무 변제 시한은 해산 의결서 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4) 근로계약상 의무 정산 계획
- (5) 법적 대표의 성명 및 서명

#### ② 기업자산의 청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소유주)가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직접 기업 자산을 청산해야 한다. 다만, 회사 정관이 별도의 청산 조직을 설립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해산의결서 통지

해산 의결서 승인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해산 의결서와 의사록을 기업등록 당국, 세무 당국,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해산 의결서는 국가기업등록포털, 기업 본점, 지점, 대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기업이 재정적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산 의결서에 채무 변제 계획을 첨부하여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채무변제 계획에는 채권자 성명 및 주소, 채무액, 채무 지급 시한·장소·방법, 채권자 청구 이행 시한·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기업등록 당국은 기업의 해산 의결서를 수령한 직후에 국가기업등록포털에 해당 기업이 해산 절차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해당 공고에는 해산 의결서와 채무변제 계획이 첨부된다. 또한 기업등록 당국은 해산 기업 관련 정보를 세무 당국에 송부한다. 세무 당국은 기업등록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해산에 관한 의견을 기업등록 당국에 제공한다.

## ④ 채무의 변제

기업의 채무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다.

- (1)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기타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혜택
- (2) 미납 세금
- (3) 기타 채무

모든 채무와 해산 비용이 지급된 후에, 잔존 가치는 사원(주주)의 지분(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된다.

## ⑤ 해산신청서 제출

기업의 법적 대표는 기업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기업등록 당국에 기업 해산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산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로 구성된다.

- (1) 기업 해산 통지서
- (2) 기업 자산 청산 보고서, 채권자 및 지급 채무 목록(세금, 사회보험료, 근로자에 대한 채무포함)
- (3) 인감 및 인감 등록증
- (4) 기업등록증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구성원(또는 소유주), 사장, 법적 대표는 해산 신청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해산 신청서가 정확하지 않거나 위조된 경우에는 미지급 채무, 미납 세금, 미지급 근로자 혜택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고, 해산 신청서를 기업등록 당국에

제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결과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진다.

## ⑥ 해산

기업등록 당국은 (1) 해산 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관련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2) 해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국가기업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업의 법적 상태를 “해산”으로 업데이트한다.

### 해산 결의 이후의 금지 행위

해산 결의일로부터 기업과 경영진은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재산의 은닉 및 분산
- (2) 채무상환청구권의 포기 및 감면
- (3) 무담보채무를 담보부 채무로 전환
- (4) 신규 계약 체결(예외: 기업 해산 목적의 계약)
- (5) 자산의 저당, 담보 증여, 임대
- (6) 유효한 계약의 종료
- (7) 증자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행한 개인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 처벌이나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 마. 기업의 회생과 파산

기업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법에 따른 파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베트남 파산법의 특징은 회사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경우에 이루어지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회사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회생절차의 신청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파산절차 개시 신청 이후 법에 정해진 사전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로 나아가는 데 실패한 경우에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청산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채권자, 근로자, 대표, 주주(사원) 등은 기업이 변제기로부터 3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도산상태에 이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산절차 담당 인민법원 이름
- 도산채무자의 상호 및 주소
- 변제 기일이 도래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증빙 서류

- 도산채무자의 대표, 소유자, 주주, 조합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파산절차 개시 신청 근거 및 관련 서류
- 자산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산관리자의 이름 및 주소

법원은 해당 기업이 도산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파산절차 개시 또는 기각(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들로 하여금 파산절차 개시 결정으로부터 30일 내에 채권신고를 하게 한다.

법원은 기업의 재산목록 작성과 채권자 목록 작성이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집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채권자 집회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담보채권액 51% 이상의 무담보 채권자와 담당 자산관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위 요건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집회를 연기할 수 있다.

기업은 채권자 집회에서 경영활동 회생절차에 동의하는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판사, 채권자, 자산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하는데,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에는 경영활동회생 방안, 필요조건, 채무 변제 기한 및 변제 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 채권자집회에서 무담보부 채권자 과반수가 출석하여 총 무담보 채권의 65%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기업이 제출한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법원은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집회의 승인 결의를 인가할 수 있고 비로소 기업은 회생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업은 자산관리자에게 경영활동 회생계획의 이행에 관해 연 두 차례 보고해야 한다.

채권자 집회에서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에 관한 승인 결의를 얻지 못하는 등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고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 ▶ 법인청산 관련 세무 및 회계

법인 청산 과정 중 최종적인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신고 절차를 거침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 1) 청산관련 일반 절차

청산 관련하여서는 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청산관련 결의
- 청산 관련 결의문 및 계획안 계획투자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에 제출
- 회사의 채권자, 계약상대방 및 이해 당사자(세무서, 노동 기관, 관세청, 사회보험 관리국 등)에게 청산관련 통보
- 청산 관련 내용을 신문 및 본사에 공지를 통하여 공표
- 회사의 자산 처분 및 계획을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
- 근로자에게 최종 임금 지급 및 모든 급여 및 수당이 지급 완납되었다는 확인서를 근로자로부터 징구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관리국으로부터 사회 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실업 보험료가 모두 완납되었다는 확인서 수령
- 고객 및 거래선과의 모든 계약 종료
- 최종 회계장부 마감
- 최종 세무신고(tax finalisation) 및 추가적인 세무관련하여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수령
- 모든 세관신고 마감 및 추가적인 관세 납부액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최종 관세 정산내역을 관세청으로부터 수령
- 미사용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반납 및 납세자 일련번호 중지
- 최종적인 입출금 내역 완료 후, 은행계좌 폐쇄
- 회사관인 반납후, 관련 증빙서 징구

## 2) 청산관련 세무 및 회계 관련 절차

### 운영 중단 및 청산 관련 통보

운영 중단과 청산결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세무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회계장부 마감

청산 결정과 함께, 회계장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 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도 기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회계관련 각종 증빙서류 또한 세무당국에 의하여 요구되기 때문에 보관되어야 한다. 회계기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청산일까지 90일 미만인 경우 전년도 회계연도와 합산하여 결산이 가능하며, 총15개월을 넘을 수 없다.

### 법인세 최종 신고

최종 법인세 신고 서류 또한 청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장부와 동일하게 청산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한 포함되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개인소득세 최종 신고

노동 계약서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기납부 세액과 최종 확정세액을 정산하는 개인소득세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한 베트남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 또한 별도로 신고를 요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 폐기

세금계산서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 사용되지 않은 보고서에 대하여 폐기를 하고 그 결과를 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 폐기와 관련된 결정문, 관련 세금계산서 수량 및 이를 승인한 승인권자 등을 회사는 준비하여야 한다.

### 3) 청산관련 세무조사

최종 세무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일체 목록은 아래와 같다.

- 회사 등록 서류 원본
- 청산 결정문 원본
- 청산후 회사의 의무사항 규정한 결정문
- 자산처분 내역
- 세금 계산서 사용보고서
- 세금계산서 폐기 보고서
- 감사받은 회사 최종 재무제표
- 전년도 세금 신고 내역 및 납부 내역

세무서는 해당 서류 징구 후, 세무조사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해당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는 최종적으로 납부세액 납세 내역을 증빙하는 최종확인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해당 세무조사로 인하여 청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다.

해당 세금완납 증명서를 수령후, 회사의 세금 일련번호 종료 통지서와 함께 세금 일련고유번호는 세무서에 반납되어야 한다.

### 4) 배당

청산전 배당을 고려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유한회사 주주의 경우, 회사가 세금 및 기타 재무관련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요건은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관련 세금에 대한 의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배당 후에도 존재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충분히 변제할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관련 세무신고 의무를 완료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회사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5) 청산 절차 관련 체크리스트

No.	관련절차
<b>Step 1</b>	<b>청산 관련 서류 작성</b>
1	청산 관련 주총결정문
2	청산 관련 이사회결정문
3	청산관련 회사 결정문 작성
4	청산관련 계획안 작성
5	계획투자부에 청산통보서 작성
6	세무서에 청산통보서 작성
7	사무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
<b>Step 2</b>	<b>청산관련 통보</b>
1	청산 결정문 작성 후 7일 이내에 계획투자부에 청산 통지서, 청산 절차서 제출
2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세무서, 노동청, 관세청, 사회보험국 포함)에게 청산 결정문 송부
3	회사 본사에 청산 결정 공지
4	신문 등을 통한 청산 결정 공지
5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정지 및 청산 결정통보
<b>Step 3</b>	<b>청산절차 진행</b>
1	노동계약서 종결 및 근로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2	거래선과의 계약종료
3	미지급금 및 부채 정산
4	사회 보험에 사회보험료 최종 정산 및 납부 확인서 징구
5	관련 자산 처분
6	회사 장부 종료
<b>Step 4</b>	<b>세무 청산 절차</b>
1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최종 세무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미사용 세금 계산서 폐기
3	세무조사
4	관세 최종 정산
5	세금 완납 증명서 및 납세자 일련번호 종료 서류 수령

No.	관련절차
6	회사 인감 반납
<b>Step 5</b>	<b>청산 종료</b>
1	<p>청산종료 보고서 작성</p> <p>계획투자부에 하기 일체 서류목록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종료보고서;</li> <li>- 청산 결의서;</li> <li>- 종업원 노동계약종결증빙 내역</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거래선, 이해관계자 등과 부채관련 정리 협약서</li> <li>- 세금 및 관세 완납 증명서</li> <li>- 사회보장보험 완납 증명서</li> <li>- 회사 인감반환 증명서</li> <li>- 회사의 투자허가서 원본 등</li> </ul>
3	회사의 잔여금 투자자에게 반환
4	은행계좌 종료



# III. 현지 경영관리

1. 외국인근로자
2.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FCT”)
3. 자본양도소득
4. 베트남 정부의 ESG 관련 정책 개관
5.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6. 베트남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현황 및 사례
7.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현황 및 사례
8. 베트남의 ESG 특징과 평가



# 1. 외국인근로자

외국인투자 증가로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노동보호사회부(Vietnam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10만 1,55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로하고 있다. 110개국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중인데 그 대부분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에서 온 근로자이다. 2019년에 개정되어 2021년 1월에 시행된 개정 노동법 및 관련 시행령 등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 및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이전보다 더욱 까다로워졌다.

## 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취득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될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 담당할 업무 및 직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사유에 관하여 노동보호사회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매년 1월 5일 및 7월 5일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노동보호사회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근로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일정 정도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전문가인정서를 받아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불가능하다.

## □ 노동허가증 발급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사용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베트남 노동보호사회부, 해당 지역의 노동보호사회국(Department of Labor, War Invalid and Social Affair)에 신청한다.

- ① 베트남 노동보호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서류
- ② 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 ③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나 형사 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서류 제출일로 6개월 내에 발급)
- ④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⑤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관한 노동보호사회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 ⑥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규격: 4cm × 6cm, 모자 착용 안 됨, 얼굴은 정면 응시, 두 귀가 노출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해야 함, 안경 착용 안 됨, 사진바탕은 흰색)
- ⑦ 법률 규정에 따른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발급기관은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송부한다. 통상 노동허가 취득에 적어도 1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는 데 20~30일이 걸리므로, 발급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아 오는 것이 좋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 노동허가증이 발급되면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노동허가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 10. 2.부로 온라인 노동허가증 신청, 발급 진행이 가능해졌다. 신청 범위는 ①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 승인 요청, ②노동허가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③노동허가증 발급 비대상자 확인 신청이다. 전자 포털을 통해 사용자가 신청하게 되며, 신청 서류 사본을 포털에 등록한다. 이후 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원본을 제출하게 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노동허가가 발급된다.

#### □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및 연장

개정 노동법에 따라 노동허가증은 2년간 유효하다. 노동허가의 연장은 1회, 최대 2년만 허용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 5일에서 45일 사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개정 규칙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학위는 베트남에서의 수행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현재 호치민시와 같은 일부 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에서는 노동허가증 발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직위와 관련이 있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 대상 요건

개정 법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발급 요건을 분야별로 구분했으며 학력과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등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참고로 관련 규칙에서는 운영 책임자(Manager) 및 관리자(Executive director)의 정의를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성(省)/시(市)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이를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력직 근로자만이 관리자로 인정되고 대졸 신규 근로자는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운영 책임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정의	조직 및 기업 또는 그 조직 및 기업에 속한 단위(부서)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함하여 조직 및 기업에서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li> <li>-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기술 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li> <li>- 해당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li> </ul>
공동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li> <li>2. 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 검진서</li> <li>3. 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발급되어진, 베트남 또는 외국 관계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li> <li>4.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5.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관한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서</li> <li>6.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 2매(4cm × 6cm)</li> <li>7.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서류</li> </ol>		
공동서류 외 제출서류	- 운영 책임자, 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li> <li>-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li> </ul>	<p>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조직으로부터 발급된 최소 1년 이상 전문 기술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인정서 +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채용 예정인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ul>

**노동허가증이 필요 없는 외국인 근로자 및 승인 절차**

개정 노동법 제154조와 시행령(152/2020/ND-CP) 제7조는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최소 10영업일 전에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해당 지역 노동보훈사회국에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노동허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증이 면제되는 외국인 근로자]**

- 베트남에서 국제기구, 외국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하는 단체의 주요 구성원
-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현재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전문가 및 외국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 상황, 생산 및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기술을 처리하기 위해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입국하는 경우
- 베트남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 변호사
- 베트남이 당사국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 경우
-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 자본금 30억 VND 이상을 출자한 유한 책임회사의 소유주 또는 출자자
- 자본금 30억 VND 이상의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이사
-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베트남 간의 서비스보장협정에 따른 11개 서비스 산업 내 기업의 내부 이동: 비즈니스, 정보,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문화·오락및 운송
-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이 외국과 체결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협정의 합의 또는 규정에 따라 ODA 자본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연구·건설·심의·조사·평가·관리·실시, 전문기술 자문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임무 수행을 위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베트남에서 통신 및 언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외국 외교사절이나 유엔 산하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권위 있는 외국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경우
- 자원봉사자
- 1년에 3회 이하, 1회당 30일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운영 책임자,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로 일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베트남 정부 및 지방 기관이 서명한 국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 베트남 내 기관, 기업 등에서 인턴십 계약을 체결한 해외 학교 및 훈련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베트남 선박에서 공부 및 실습하는 학생

- 베트남에 있는 외국 대표 기관의 구성원의 친족
- 국가기관, 정치·사회조직에 근무하는 공무(公務) 여권을 소지한 사람
- 상업적 주재 설립 책임자
-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베트남 교육부로부터 인증받은 자

## 나.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취득

### 베트남 비자의 종류

근로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가 필요하다. 베트남의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다.

비자 종류		대상자	유효기간
NG	NG1 - NG2 - NG3 - NG4	외교비자	12개월
LV	LV1 - LV2	베트남 정부 협력 근로자	12개월
LS		외국변호사	5년
DT	DT1	1,000억 VND 이상 출자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 및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투자자	5년
	DT2	500억 VND 이상 1,000억 VND 미만 출자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 및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투자자	5년
	DT3	30억 VND 이상 500억 VND 미만 출자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	3년
	DT4	30억 VND 미만 출자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	12개월
DN	DN1 - DN2	베트남 내 사업 협력 근로자	12개월
NN	NN1 - NN2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장, 해외NGO 사무소의 대표	12개월
	NN3	NGO 직원	12개월
DH		학생/인턴십	12개월
HN		회의 행사 참석	3개월
PV	PV1 - PV2	언론인	12개월
LD	LD1	노동허가증을 면제받은 외국인 근로자	2년
	LD2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	2년
DL		관광객	3개월
TT		LV1, LV2, LS, DT1, DT2, DT3, NN1, NN2, DH, PV1, LD1, LD2 비자 소지자의 가족	12개월

비자 종류	대상자	유효기간
VR	가족 방문 등 기타 목적	6개월
SQ	시장조사, 관광, 친척방문,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다음의 외국인 a) 해외 비자발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가족, 주재국 외교부의 요청서를 제출 자 b) 주재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의 후원을 받음을 증명하는 외교문서를 제출한 자	30일
EV	전자 비자	30일

### 비자 발급절차

NG1, NG2, NG3, NG4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는 이민국에서 발급한다. 신청인(사용자 등)은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비자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노동 비자를 발급받는다.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노동 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로펌이나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비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3개월이상 유효한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 신청 접수증
- 사용자가 작성한 비자 신청지원서
- 기업등록증이나 투자등록증명서 등 사용자의 법적 지위 관련 서류
- 사용자의 외국인 직원 리스트

이민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이민국은 5영업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주한베트남대사관에 통보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신청 접수증 사본을 소지하고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가서 비자를 수령한다. 2020.7.1.부터 비자 신청 후 승인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https://xuatnhapcanh.gov.vn/>). 이민법 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출국 및 재입국을 하지 않고도 비자 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비자 발급비용은 2021. 8. 기준으로 단순비자의 경우 25달러(USD), 복수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50달러,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95달러,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는 135달러, 12개월 초과 2년 이하는 145달러, 2년 초과 5년 이하는 155달러이다. 만 14세 이하는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5달러이다.

## □ 노무관리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는 주요한 요인은 인구 약 9,730 만 명(2020년 기준)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 외에 젊고 우수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등이다.

1992년을 전후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약 9,000여 개(2020년 기준)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해 왔다. 과거 사업 분야는 대부분 신발, 봉제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공업에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삼성, LG 등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그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에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와 비례하여 베트남의 임금도 상승하였다. 최저임금의 경우 2006년 이후 10년간 매년 10% 이상 상승하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 7.3%, 2018년 6.5%로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악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숙련 인력 및 고등 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베트남 산업 고도화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교육 수준 기준으로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약 75.9%가 비숙련 노동력이다. 도심지역에서 비숙련 노동력의 비중이 60.3%이고 농촌 지역은 83.7%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노동력 가운데 고급 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노동력은 약 11.1%에 불과하다.

아울러,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갈등, 폭력, 임금 체불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등 노사분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는 베트남의 노동시장, 임금수준, 각종 근로 조건, 노사관계 현황 및 바람직한 노무관리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다. 노동시장 특성

베트남은 남북으로 긴 지리적 특성이 노동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나라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호치민을 중심으로 생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남부 지역,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 다낭, 나짱 중심의 중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능하면 고향에서 정주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의 특성상 3개 노동시장은 상당히 분절적이다.

2007년 WTO 가입 후 외국인 투자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몰려들고 있는 북부(하노이) 및 남부(호치민) 지역은 상당한 인력난을 겪었다. 이로 인해 2009~2011년 노사분규가 급증했으나 2012년부터 노사분규 건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상승률과 베트남 경기 침체에 따른 인력공급 과잉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8년 하반기 세계 경제 불황으로 시작된 베트남 국영기업 및 연관 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작된 베트남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 및 정부 재정 감축은 부동산 경기 침체, 금융권 자금 부설화, 기업 대출 감소를 유발하였다. 이는 결국 기업 도산과 민생 경기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론적으로 일반 노동자들의 실업 및 소비 감소로 이어졌으며, 베트남 경제 및 투자기업들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는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베트남의 헤드헌팅 기업인 Anphabe가 2013년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판매·마케팅, 인사관리, 물류,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고급 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숙련된 관리 인력의 수요는 늘어나는 셈이다.

베트남 인력의 높은 이직률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중대한 이슈 중 하나이다. Anphabe가 베트남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희망 사유로는 “기대만큼 보상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베트남 현지 노동인력들이 체감하는 실수입은 노무관리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합리적인 보상과 대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의 노동자들은 구직을 할 때 무조건 외국계 기업을 선호하는 성향이 많이 감소했으며, 급여뿐 아니라 각종 혜택, 자기계발 가능성, 상사의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0년 베트남 인구는 약 9,730만 명으로 최근 3년간 0.994 ~ 0.905%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는 5,484만 명이다. 인구의 대다수인 62.66%가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 농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이농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 | 도농간 인구 변화 추이 |

(단위: 천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총인구(%)	94,600 (100)	95,545 (100)	96,462 (100)	97,338 (100)
농촌 지역(%)	61,288 (64.78)	61,226 (64.08)	61,129 (63.37)	60,992 (62.66)
도시 지역 (%)	33,311 (35.21)	34,319 (35.91)	35,332 (36.62)	36,346 (37.34)

자료원 : 세계은행

2020년 기준 취업인구는 약 5,360만 명으로 고용률은 72.8%에 이른다. 도시 지역 고용률은 64.6%, 농촌 지역의 고용률은 77.5%이다. 부문별 취업인구를 살펴보면 취업자 중 민간부문에 83.6%, 국영기업에 7.6%, 외국인투자기업에 8.8%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48.4%이며 자영업자의 비율은 36.4%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7년 기준 20.6%(통계청).

### | 부문별 고용 |

(단위: 천 명)

구분	2018		2019		2020*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취업 인구	54,242.5	100	54,659.2	100	53,609.6	100
국영부문	4,525.9	8.3	4,226.2	7.7	4,098.4	7.6
비국영부문	45,215.4	83.3	45,664.6	83.6	44,777.4	83.6
외국인기업	4,541.2	8.4	4,768.4	8.7	4,733.8	8.8

주 : \*은 추정치

자료원: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 (2020)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실업자 수는 약 120만 명으로 실업률이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 실업률이 3.89%로 농촌 지역 실업률 1.75%보다 높다. 그리고 15~24세의 청년 실업은 전체 실업자 수의 7.21% 비중을 차지하며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근로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이직이 잦고, 높은 수준의 급여를 원하기 때문이다.

| 지역별 실업률 |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베트남도시 실업률	3.23	3.17	3.10	3.11	3.89
홍강델타	3.23	3.21	3.00	2.53	3.28
북부내륙 및 산간지방	3.20	2.71	2.09	2.93	3.02
중북부 지방 및 중부 연안	4.30	4.03	3.95	4.09	5.75
중부 고원지대	2.19	1.98	1.51	2.52	2.67
남동부	2.61	2.82	2.93	2.88	3.78
메콩델타	3.73	3.63	3.74	3.86	3.73

주 : \*은 추정치

자료원: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2020)

2020년 취업자들의 33.1%가 농림수산업에, 21.1%가 제조업에, 13.6%가 도소매 및 자동차수리업에, 8.8%가 건설업에 각각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취업자 비율 |

(단위: %)

구분	2015	2017	2018	2019	2020*
농림수산업	43.6	40.0	37.6	34.5	33.1
제조업	15.9	17.8	18.4	20.7	21.1
건설업	6.2	7.5	7.9	8.4	8.8
도소매 및 자동차정비	12.7	12.8	13.4	13.3	13.6
숙박 및 요식업	4.6	4.6	5.0	5.0	5.1
공산당 및 국방서비스	3.2	3.2	3.0	2.7	2.7
교육	3.5	3.6	3.8	3.6	3.7

주 : \*은 추정치

자료원: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2020)

베트남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취업인구의 3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에 21.1%가 종사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저개발국가의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다. 향후 1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노동력이 전체적으로는 풍부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과 기업이 밀집된 북부 하노이 및 남부 호치민 인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노동생산성

아시아 생산성 기구(Asia Productivity Organization)의 2020년 생산성 데이터북(APO Productivity Databook)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1인당 노동생산성은 12,700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 23,900달러, 필리핀 19,600달러, 태국 30,800달러, 중국 23,500달러, 말레이시아 55,400달러, 한국 73,900달러, 싱가포르 149,100달러, 브루나이 142,000달러, 일본 76,200달러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베트남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노동력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다. 2020년 취업자 중 직업훈련 기관 이수 기술학교 국가교육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훈련 과정을 이수한(학위 또는 훈련 자격증 소지) 숙련 노동인구는 24.1%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6.9%, 여성이 20.9%, 지역별로는 도시 39.7%, 농촌 16.3%이다.

#### | 숙련 노동인구 추이 |

연도	2015	2017	2018	2019	2020*
비율(%)	20.4	21.6	22.0	22.8	24.1

주 : \*은 추정치

자료원: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2020)

2020년 베트남 통계청 노동력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4분기 5,514만 명의 노동인구 중 직업훈련(3-month Vocation Training) 274만 명, 2차 직업학교(Intermediate) 243만 명, 단과대학(College) 212만 명, 종합대학 이상(University and Over) 628만명, 무자격자(No Qualification) 4,155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인적자원의 질은 수학, 과학 교육 3.7점(85위), 교육시스템 3.6점(71위), R&D기관의 질 3.5점(90위), 과학기술자 활용도 3.8점(78위)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 UND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간개발 지수는 0.683(115위)으로 아세안(ASEAN) 국가 중 베트남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필리핀(116위), 라오스(138위), 캄보디아(143위), 미얀마(145위)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7월 베트남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VND 2조 1,350억(약USD 1억)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숙련 노동자의 비중을 2010년의 40%에서 2020년 70%로 높이고 고등교육 수료자의 비중을 인구 1만 명 당 2010년의 200명에서 2020년에는 400명을 달성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이다. 나아가 2014년 5월 베트남 정부는 ‘2020년 우수 직업학교 육성계획(High Quality Vocational School Development Project by 2020)’을 통해 2020년까지 베트남 내 40여 개의 우수 직업학교를 육성하여 베트남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근로 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체결해야 한다. 근로자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2부를 체결하여 1부는 근로자가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한다. 예외적으로 1개월 미만의 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가 다수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는 자신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즉,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앞서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근로시간 등)에서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무, 근무지, 근로 조건, 근로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노동위생, 임금, 임금지급방법, 사회 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영업비밀 관련 규정, 기타 근로자가 요구한 근로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성명, 나이, 성별, 거주지, 교육 수준, 직업기술 수준, 건강 상태, 기타 사용자가 요구한 근로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분증, 학위증, 자격증의 원본을 보관하거나, 근로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현금이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근로계약의 종류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Indefinite Term Labor Contract)
-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Definite-Term Labor Contract): 근로 기간을 근로계약의 효력일로부터 36개월 미만으로 합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일로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2회에 한하며 체결이 가능하다. 두번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다면, 세번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부록 상의 근로 기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없이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을 1회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였으나, 2019년 노동법의 개정으로 부록 상의 근로기간 수정이 금지되어 위와 같은 해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집단의 임원, 국영기업의 이사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횟수에 있어 제한이 없다.

###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용자 또는 법적 대표의 성명 및 주소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 직무, 근무지

- 근로계약기간
- 임금, 임금지급 방식, 임금지급 시기, 수당, 기타 추가 지급 항목
- 승진 및 임금인상체계
- 근로시간, 휴식시간
- 노동보호장비
-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 직업훈련

근로자가 영업비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계약에는 영업비밀의 내용, 보호 기간, 위반 시의 배상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수습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해당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수습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은 직무의 성격과 복잡성에 근거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필요한 직무 : 60일
- (2) 중급수준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필요한 직무 : 30일
- (3) 기타 직무 : 6영업일
- (4) 기업임원 : 180일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직무에 대한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수습 근로자가 요구사항을 달성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습 근로자가 요구사항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결과에 관하여 통지하고 기 체결한 수습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수습기간 중 각 당사자는 사전 통지와 보상 없이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의 이행

근로계약상 직무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근무지는 근로계약에 기재된 곳이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곳으로 한다.

### 근로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직무로 배치

사용자는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과 같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직업병, 전기·수도 공급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생산 및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를 근로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직무로 임시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생산 및 경영상 필요한 경우”를 사유로 근로자를 임시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취업규칙에 생산 및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로 임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배치 기간은 근로자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연간 6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간 60영업일을 초과하여 임시 배치를 계속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를 근로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직무로 배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적어도 3영업일 전에 임시 직무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배치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성별에 적합해야 한다.

근로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직무로 배치된 근로자는 새로운 직무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은 이전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이 이전 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30영업일동안 이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연간 60영업일 동안 근로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직무로 배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중단 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근로계약은 아래의 경우에 종료된다.

- (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2) 근로계약에 규정한 직무를 완료한 경우
- (3)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합의한 경우
- (4)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선고유예나 석방될 수 없는 경우, 사형 선고를 받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상 직무 이행이 금지된 경우
- (5)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이 해당 근로자의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사망 선고를 한 경우
- (6) 외국인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당국의 결정에 따라 베트남으로부터 추방당한 경우
- (7) 자연인인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이 해당 사용자의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사망 선고를 한 경우; 법인인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및 당국이 사용자의 법정대표자가 부재중임을 통지한 경우
- (8) 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
- (9)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10)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11) 사용자가 구조 또는 기술의 변화, 경제적 사유, 합병, 분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12)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가 만료된 경우
- (13) 근로자가 수습기간 내에 그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수습합의를 취소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근무와 관련된 서류를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45일 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중 근로기간이 12~36개월인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3영업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근로자는 아래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1)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직무나 근무지에 배치되지 않거나 근로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 (2)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임금이 전액 또는 적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 (3) 사용자로부터 학대, 폭행, 폭언, 건강·인품·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및 노동강제를 당한 경우
- (4) 근무지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
- (5)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휴직해야 하는 경우
- (6) 정년에 도달한 경우
- (7) 사용자가 근로계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보상금으로 월급여의 반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업훈련계약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사전 통지 기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보상금으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용자는 아래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1)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규정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2)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정 기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1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중 계약기간이 12-36개월인 경우 6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중 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계약 기간의 1/2)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 (3) 천재지변, 화재, 위험한 질병, 외침,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른 생산·사업의 이전 또는 축소에 의하여 사용자가 모든 복구 수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생산을 감축하고 인원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4) 근로자가 사용자와 달리 합의하지 않고 근로계약 이행정지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 (5)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 (6)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연속으로 결근한 경우
- (7) 근로자가 취업 과정에서 고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위에서 “(1)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규정된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사전에 직무완료 평가기준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이러한 평가기준은 회사의 근로자단체(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 대표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전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45일 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중 근로기간이 12~36개월인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계약과 위 (2)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위 (4), (6)의 경우에는 통지 없이도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 (1) 근로자가 질병,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치료나 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
- (2) 근로자가 연차휴가, 개인휴가, 기타 사용자가 승인한 휴가 중인 경우
- (3) 사용자가 임신, 출산휴가, 12개월 미만의 자녀 양육을 사유로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애초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근로자에게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최소 2개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일 근로계약에 규정된 직무나 직위가 없어졌으나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변경 및 보충을 위해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지 않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별도의 보상금은 최소 2개월분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사전 통지 기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으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

퇴직금은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퇴직금은 “근무 기간 × 임금 × 1/2”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여기에서 “근무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에서 실업보험 납부 기간과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무 기간을 빼서 산정하고, “임금”은 해고되기 직전 6개월의 근로계약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2009년 이후로는 공적 보험으로 실업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험금을 납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 공단에서 보험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고 사용자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구조 기술 변화 및 경제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

다수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나 기술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경제적 사유로 다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여야 할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사용계획은 (1) 계속 사용할 근로자, 추가 고용을 위하여 재훈련을 받을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명단과 인원수, (2) 퇴직하는 근로자의 명단과 인원수, (3)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근로자의 명단과 인원수, (4) 노동사용계획을 수행할 사용자, 근로자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의무, (5) 노동사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 및 자금마련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사용계획의 수립 과정에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이 참여하여야 한다.

해고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해고수당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의 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최소 2개월분의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해고수당은 “근무 기간 × 임금”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여기에서 “근무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에서 실업보험 납부 기간과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무 기간을 빼서 산정하고, “임금”은 해고되기 직전 6개월의 근로계약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사용자는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먼저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과 논의를 하고, 해고 30일 전에 성급 인민위원회 및 근로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매매·임대·기업 형태의 변경 및 소유권 또는 자산 사용권 양도 시 사용자의 의무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합병·분할, 매매·임대·기업 형태의 변경 및 소유권 또는 자산 사용권이 양도되고 다수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사용자와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노동사용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영업일 내에 상대방의 권리와 관련된 미지급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단, (1) 자연인이 아닌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사용자가 구조·기술의 변화 또는 경제적 이유로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분할·합병, 매매·임대·기업 형태의 변경 및 소유권 또는 자산 사용권 양도의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외침, 위험한 질병의 경우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그 밖의 권리와 이익은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회보험증 및 기타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자의 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임금, 보험, 노조지원금

##### 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임금은 직무나 직위에 기초한 임금, 수당, 기타 지급액을 포함한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노동 생산성과 수행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사용자는 동일한 가치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성별에 근거한 차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베트남 근로자의 월 평균 수입은 2016 VND 7,514,000, 2017 VND 8,269,000, 2018 VND 8,836,000, 2019 VND 9,325,00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수입(VND 690 만)이 여성의 수입(VND 630 만)보다 약 1.1배 높으며, 도시 지역 수입(VND 730 만)이 농촌 지역 수입(VND 620만)보다 약 1.2배 높다. 정부 근로자(VND 1,421만)와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VND 1,006만)의 수입이 내자기업 근로자의 수입(VND 831만)보다 높다.

### | 업종별 월 평균 임금 추이 |

(단위 : VND 1,000)

분야	2017	2018	2019
농림어업	5,245	5,387	5,638
생산업	7,725	7,725	8,569
운송업	8,532	8,933	9,908
전기, 가스 관련업	16,077	16,129	18,334
건설업	7,011	7,001	7,517
숙박, 음식 서비스업	6,003	6,690	6,949
정보통신업	14,875	14,115	17,725
금융업	21,665	22,350	24,549
부동산업	11,259	11,747	12,333
교육훈련업	9,464	9,779	10,482

자료원 :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2020)

### | 학력별 월 평균 임금(2020년) |

(단위 : VND 1,000)

구분	평균	남자	여자
무학	6,649	6,925	6,290
직업훈련	6,027	6,182	5,820
고등학교 졸업	7,586	7,677	6,318
전문대 졸업	6,999	7,411	6,40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7,178	7,905	6,599
도시 지역	8,171	8,960	7,436
농촌 지역	7,264	7,613	6,843
전체 지역	6,224	6,475	5,878

자료원 : Report on Labor force survey in Quarter 4(2020)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가장 단순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수준의 지급액으로서 사회 경제 발전 조건에 부합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베트남 노동법은 최저임금은 월, 시간을 기준으로 지역이나 산업 분야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베트남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만 공포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 (90/2019/ND-CP)은 베트남 전국을 산업화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 2019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안(월급여 기준) |

(단위: 만 동, %)

지역	2019년 최저임금	2020-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지역	418	442	5.7
2지역	371	392	5.6
3지역	325	343	5.5
4지역	292	307	5.1
평균인상률	-	-	5.5

지역별 최저임금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VND 626,000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2006년부터 10년간 매년 10% 이상 상승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평균 약 5.5%만 상승하였으나, 2020년 현재 1지역 최저임금은 2005년 대비 약 6.5배 증가한 수준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지역별 월 최저임금 추이 |

(단위: VND 1,000,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지역	3,100	3,500	3,750	3,980	4,180	4,420	4,420
2지역	2,750	3,100	3,320	3,530	3,710	3,920	3,920
3지역	2,400	2,700	2,900	3,090	3,250	3,430	3,430
4지역	2,150	2,240	2,580	2,760	2,920	3,070	3,070

자료원: 베트남 노동사회부

최저임금의 적용과 관련하여, 숙련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7%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숙련된 근로자”란 기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우를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임금표, 임금등급, 노동기준

사용자는 임금표, 임금등급, 노동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임금표, 임금등급, 노동기준은 근로자 고용 및 사용, 임금 협상 및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사용자는 임금표, 임금등급, 노동기준을 수립할 때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시행 전에 사업장에서 관련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를 해당 지역의 노동당국에 제출해야 했으나,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위 제출의무는 폐지되었다.

### 임금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또는 근로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적시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수령 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위임 받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지급 기준으로 근무시간, 생산량, 또는 정액제 중에서 합의해야 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현금이나 개인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좌 개설 비용 및 계좌이체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1회 또는 2회 임금을 지급받는다.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합의한 기간에 따라 합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데, 적어도 15일에 한 번씩은 임금을 지급받는다. 생산량이나 업무완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데, 업무를 수개월 동안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월 업무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모든 복구 방안을 찾으려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적시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금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수는 없다. 임금지급의 지연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사용자가 개설한 은행에서 임금지급 시점에 공표된 1개월 정기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급여의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 지출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장비를 근로자에게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단위 임금에 따라 계산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 (1) 평일 : 150% 이상
- (2) 주휴일: 200% 이상
- (3) 공휴일, 유급휴가 : 300% 이상

야간근무를 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에 더하여 단위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정규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초과 관련 규정에 대하여서는 “VI.4.가. 근로시간”에서 설명한다.

**보험제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 사회보험, 의무적 의료보험,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회보험법과 의료보험법에 따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 대비하여 아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종류		사용자	근로자
사회보험	연금/유족급여	14%	8%
	질병/출산급여	3%	
	산업재해/직업병 급여		
	합계	17%	8%
실업보험		1%	1%
의료보험		3%	1.5%
합계		21%	10.5%

자료원 : 베트남 사회보험 등에 관한 Decision 595/QĐ-BHXH,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및 사용자 지원정책 Resolution 68/NQ-CP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월 임금은 노동법에 따른 임금, 수당, 기타 보상금이다. 2018년 이전에는 기타 보상금이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타 보상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으로 통상(정기)적 · 비통상(비정기)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모든 형태의 금액(임금, 수당 제외)을 의미한다.

사회보험료와 의료보험료의 경우에 근로자의 월급이 공공 최저임금(현재 149만 동이나 정기적으로 상승)의 20배보다 높으면 기준 임금은 공공 최저임금의 20배로 한다. 실업보험료의 경우에 근로자의 월급이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보다 높으면 기준 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로 한다.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 의무적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외에 의무적 사회보험, 의무적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노조지원금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조지원금으로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해당 기업에 단위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조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실무상 논란이 있었으나, 2014년 1월 10일 발효한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Decree 191/2013/ND-CP)에서 단위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이 노조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가

#### 정규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시간, 일, 주 단위로 결정할 수 있는데, 주 단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베트남 정부는 사용자가 1주 40시간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사용자는 국가기술기준 및 관련법에 따라 위험·유해 물질에 접촉하는 근로시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 야간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이다.



초과근무

초과근무란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근로자의 동의를 있을 것
- ② 1일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③ 주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④ 1개월 초과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⑤ 1년 초과근무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⑥ 1개월동안 연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제공할 것

또한, 1년 초과근무시간이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분야, 직업 및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성급 인민위원회를 보조하는 노동 당국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 (1) 수출목적의 방직, 봉제, 가죽, 신발, 전기, 전자제품, 농림수산물 및 소규모 제품의 생산 및 가공
- (2) 전력 발전 및 공급, 통신 서비스, 정유, 상하수도
- (3) 당시 노동시장에서 수급할 수 없는 고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 (4) 계절적 업무특성 또는 원료·상품 수급으로 인해 지연할 수 없는 긴급한 작업이나 기상·천재지변·화재·외침·전력 부족·원료 부족 및 생산라인의 기술적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
- (5) 기타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공공기관의 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로 지연할 수 없거나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경우, 공공서비스 및 진료, 교육, 직업교육서비스 제공의 경우, 주간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정규 근로시간을 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생산하는 업무)

사용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초과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1) 국방·안보 위기상황에서 국방·안보 보장 목적의 동원 명령을 수행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자연재해의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휴식시간, 주휴일, 공휴일

### 근로시간 중 휴식

1일 최소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6시간 중 최소 3시간은 야간근무시간이어야 함) 중에 최소 4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6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된다.

한편,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교대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주휴일

근로자는 매주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주기에 따라 주휴일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최소 월 평균 4일의 휴일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을 일요일이나 주중의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해야 한다.

### 공휴일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공휴일에 연간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가진다.

- (1) 신정 : 1일(1월 1일)
- (2) 구정 : 5일
- (3) 전승기념일: 1일(4월 30일)
- (4) 국제노동일: 1일(5월 1일)
- (5) 건국기념일: 2일(9월 2일 및 이를 전후한 1일)
- (6) 흥왕기념일: 1일(음력3월 10일)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날에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위의 공휴일 외에 자국의 전통 명절 1일과 국경일 1일의 휴가를 가진다.

## 휴가

### 연차휴가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휴가일수	근로자 유형
12 영업일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4 영업일	과중하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16 영업일	특별히 과중하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자료원: 베트남 노동법 (Law No. 45/2019/QH14)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사용자를 위하여 계속 근로한 연수 5년마다 1일씩 증가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도로, 철도, 해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고 왕복 이동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3일째부터 연차휴가가 정산된다. 이는 1년에 1회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며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최대 3년치 연차휴가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최소한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선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 실직으로 연차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하여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2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는 연차 휴가 일수(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 1개월마다 연차휴가 1일)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개인휴가

근로자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통지 후 개인적 사유로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 (1) 결혼 : 3일
- (2) 자녀 및 양자녀의 결혼 : 1일
- (3) 친부모, 양부모, 배우자의 친부모 및 양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양자녀의 사망 : 3일

## 무급휴가

근로자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1일의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 (1)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 (2) 부, 모 형제자매의 결혼

이외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 출산휴가

여성 근로자는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여성 근로자가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자녀 1인당 휴가 기간은 1개월씩 가산된다. 산전 출산휴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 후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다.

한편, 출산휴가 기간 종료 전이라도 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을 경과한 여성 근로자는 사전 통보와 사용자의 동의 및 조기 업무복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사업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출산하거나 6개월 미만의 입양된 자녀를 양육하거나, 대리모 여성근로자 또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기본 : 5영업일
- (2)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거나 임신 32주 전에 출산한 경우 : 7영업일
- (3)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 10영업일(추가 자녀 1인당 3영업일 가산)
- (4)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경우 : 14영업일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사회보험법에 따른 출산급여를 지급받는다. 여성 근로자는 사회보험조직으로부터 출산휴가 직전 6개월의 사회보험료 기준 임금 평균 금액의 100%를 1개월 출산급여로 지급받는다. 남성 근로자의 1일 출산급여는 월 출산급여를 24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자가 사회보험조직으로부터 출산급여를 지급받는 휴가 기간 동안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질병휴가

근로자는 아래의 경우에 질병휴가를 가질 수 있다.

(1) 근로자가 질병이나 산업재해 이외의 사고로 인해 휴가를 가져야 하고,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7세 미만의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가를 가져야 하고,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1)의 경우에 근로자의 연간 최대 질병수당 수혜 일수는 영업일(공휴일, 주휴일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일,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동안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목록에 포함된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가져야 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80일(공휴일, 주휴일 포함) 동안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질병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의 경우에 근로자의 연간 최대 질병수당 수혜 일수는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에는 20일, 자녀가 3세 이상 7세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이다. 부모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와 모의 질병수당 수혜 일수는 별도로 산정된다.

취업규칙, 배상책임

취업규칙

사용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취업규칙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공포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주요 내용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노동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근로시간, 휴식시간
- (2) 사업장 내 질서
- (3) 노동안전, 노동위생
- (4) 성추행 관련 조치사항
- (5) 사용자의 자산,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보호
- (6) 근로자의 전보가 허용되는 경우
- (7)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행위, 징계조치
- (8) 물적 책임
- (9) 징계조치 책임자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 공포일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지역의 성급 노동당국(다른 지역에 지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노동당국 포함)에 취업규칙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규칙 등록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취업규칙 등록신청서
- 노동규율 및 배상책임 관련 문서
-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의 의견서
- 취업규칙

노동당국은 취업규칙 등록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내에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한다. 취업규칙은 노동당국이 취업규칙 등록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10인 이하 사업장의 취업규칙 효력발생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징계조치

노동법은 징계조치의 유형을 (1) 견책, (2) 임금인상연기(6개월이내), (3) 보직 해임, (4) 해고의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가장 중한 징계조치인 해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절도 횡령, 도박, 고의적인 상해, 사업장 내 마약 사용

영업비밀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취업규칙을 위반한 성추행, 사용자의 재산과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근로자가 임금인상 연기나 보직 해임의 징계조치를 받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 (“재범”이란 견책의 경우 3개월내, 임금인상 연기의 경우 6개월내, 보직 해임의 경우 3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함)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누적 5일 또는 연 누적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의료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자신 또는 친족의 질병, 기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를 의미함)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내(사용자의 재정, 재산, 영업비밀 유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반행위는 12개월 내)에 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려면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잘못을 증명할 것
- 해당 근로자가 속한 근로자집단 대표(노동조합)가 절차에 참여할 것
- 근로자가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호사나 다른 사람의 변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근로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절차에 참여할 것)
- 노동규율 위반 징계절차를 보고서에 기록할 것

사용자는 아래의 상황에 있는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해당 상황이 종료된 후에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이가 정신질환이나 기타 인식능력 또는 행위조절능력을 상실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징계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1) 병가, 요양휴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휴가
- (2) 구금, 유치
- (3) 절도, 횡령, 도박, 고의적인 상해, 사업장 내 마약 사용, 영업비밀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사용자의 재산과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유권기관의 확인과 결정을 기다리는 경우
- (4)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휴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중인 경우

#### 배상책임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 도구, 장비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과실로 지역별 최저임금 10개월분 이하의 경미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근로자는 3개월분 임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 도구, 장비를 분실하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재를 사용한 경우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또는 취업규칙 또는 관련 계약서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손해가 천재지변, 화재, 테러, 전염병, 질병, 기타 예상치 못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사용자나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노동분쟁

노동분쟁이란 근로관계를 확립·실행·종료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 이익에 관한 분쟁, 각 근로자 대표단체 간의 분쟁,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노동분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자와 기업 사이, 근로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송출하는 단체와 근로자 사이, 파견근로자와 파견근로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노동분쟁”과 하나 또는 다수의 근로자집단과 사용자나 하나 또는 다수의 사용자 단체 사이의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집단적 노동분쟁”은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에 노동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 및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서로 다른 경우 및 사용자의 근로자 대표조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 근로자 대표조직에 간섭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호의적인 협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과 근로자집단이 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 일방 당사자가 협상을 거부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시한 내에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으로 구성된다.

### 개별적 노동분쟁

개별적 노동분쟁의 관할기관은 노동조정관, 노동중재위원회 및 인민법원이다.

개별적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조정관이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노동조정관은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조정절차가 필수적이지 않거나,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당사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조정관이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노동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에 노동분쟁 해결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노동조정관에게 조정 청구를 해야 하고, 9개월 내에 노동중재위원회에, 1년 내에 법원에 노동분쟁 해결 청구를 해야 한다.

### 집단적 노동분쟁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의 관할기관은 노동조정관, 노동중재위원회, 인민법원이다.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의 관할기관은 노동조정관, 노동중재위원회이다.

집단적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조정관이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노동조정관은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었으

나 당사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분쟁 해결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노동중재위원회가 조정성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당사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중재위원회가 조정불성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근로자집단은 파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은 자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노동분쟁 해결 청구를 해야 한다.

### 파업

파업은 노동분쟁 해결 과정에서 근로자집단이 자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일시적, 자발적, 조직적 근무 중단을 의미한다.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의 경우에 노동중재위원회가 조정성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당사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중재위원회가 조정불성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근로자집단은 파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자집단은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분쟁”의 경우에는 파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파업은 근로자집단의 의견취합, 파업의 결정, 파업의 시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의견취합 근로자의 50%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파업을 결정한다.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파업 개시일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사용자, 근급 인민위원회 및 성급 노동당국에게 파업결정문을 송부해야 한다. 사용자가 파업 개시 시간까지 근로자집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파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파업 이전과 도중에 사용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1) 요구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고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 집행위원회에 서면 통지
- (2) 사업장 임시 폐쇄
- (3) 인민법원에 파업의 위법성 확인 청구

사용자가 사업장 임시 폐쇄를 하고자 할 경우, 3영업일 전에 임시 폐쇄 결정을 사업장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관련 기관 및 조직(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성급 노동당국, 근급 인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사업장 임시 폐쇄는 파업결정문에 통지된 파업 개시 시간보다 12시

간 전이나 근로자 집단이 파업을 중단한 후에는 할 수 없다.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파업 때문에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근로자는 근로중단 시 임금을 지급받는다.

### 파업발생동향

현행 노동법에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규정하기 이전까지는 합법 파업은 단 1건도 없었다. 개정 노동법에서 합법적인 파업의 절차 및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이 법이 향후 근로자들의 파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법 개정 전에 발생한 모든 파업은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을 통하지 않는 살랭이파업(Wildcat Strike: 중앙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단위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에서 개별적으로 벌이는 조직화되지 않은 파업)이었다. 이들 파업은 안타깝게도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사업주가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법에 정해진 분쟁해결 절차가 있으나 파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는 없다.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지역단위 노동연맹, 지방노동관서, 경찰서, 투자기획부 직원 등 다수의 관계직원이 현장에 출두해 사건을 조사하여 적절히 중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 노동분쟁 패턴에 다소 우려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파업 경험을 통해 파업을 하면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베트남 근로자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를 수천 명씩 고용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베트남 최대의 명절인 설 휴가 기간을 전후로 파업이 정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 파업주동자들이 기업을 이동하면서 파업을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파업의 양상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베트남 노사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베트남 당국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파업 현황은 과거 2015년 베트남 노동자연맹 보고자료 이외 정부 공식 발표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은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파업발생 빈도는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기업보다 파업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의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간 의견 조율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인 경우, 근로 조건 불만을 항의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들이 일시적, 산발적 불법 파업을

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며,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의 파업 요건과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합법적 파업이 힘든 상황이다.

| 베트남 파업 현황 |

(단위 : 건, %)

	2017	2018	2019	2020년 5월
파업 횟수	314	214	120	91
전년대비 증감율	+10	-35	-43	-24

자료원 : 베트남 현지 언론보도

**바람직한 노무관리**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 노력**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 노동 집약적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진출 초기 1~3년이 노무관리의 고비가 된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 끼워 원만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 기능 인력부터 고급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이미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날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노동력, 중간관리자, 고급관리자별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한국인 관리자의 태도 및 인성에 관한 교육도 중요하다. 직무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과는 별도로 한국인 관리자에 대한 현지 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베트남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지 문화 및 관습, 노동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노사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기업이 15년 이상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진출 기업의 인력관리 기법이나 위기상황 발생 때 대처방법 등을 전수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총무협의회, 회계담당자 협의회 등에 가입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법령 준수**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본적인 노동법규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노동분쟁이 매우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노동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베트남 노동법은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특히 베트남 언론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 위반 사항이나 노사 마찰을 문제화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 기업 및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형성과 함께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 및 교민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만성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아예 아반도주하는 사례, 거액의 사회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호치민 총영사관은 “사업주를 찾아 달라”거나 “사회보험료가 조기 납부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베트남 당국의 공문을 수차례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및 2018년에도 임금 체불 및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호치민을 포함한 남부지역 소재 한국 기업들에 관한 기사가 현지 신문에 보도됐다. 이에 총영사관은 노무영사 명의의 서한을 통해 가능하면 조속히 체불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조기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회보험당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나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내식당의 식사의 질 문제이다. 이로 인해 노동분쟁이 자주 생기고 있다.

## 급식의 질, 위생 등 관련 사례



- 2006년 6월 7일 호치민 N사 근로자 200 명이 중식을 거부하며 작업 중단
  - 근로자 측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끼니 당 VND 5,000 동(US\$ 0.31) 짜리 음식의 내용이 불량하고, 주방 위생이 불결하며, 잔업 급식량이 지나치게 적은 것 등을 문제 삼아 음식의 질 개선을 요구함.
- 2006년 12월 7일 모 의류업체에서 1,000 명 이상의 근로자 집단 식중독 발생
  - 2,200명의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점심을 먹은 후 이 중 1,035명이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임. 증세를 나타낸 근로자들이 여러 병원으로 흩어져 입원함.
- 다낭 소재 한국계 봉제공장 근로자 172명 식중독으로 입원
  - 급식외주업체에서 제공한 음식 중 돼지고기에서 상한 냄새가 났는데 이것을 먹고 식중독 증세 발생
  - 우물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미생물 허용치를 200배 정도 초과하는 등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남.

### 노무관리 방식 현지화

#### 베트남 노동관습, 문화를 고려한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

베트남 식당이나 접객업소에서 팁을 받는 경우 종업원들은 모두 모여서 직원들끼리 골고루 팀을 배분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인력관리에 있어 베트남인 특성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현지화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는 사회주의 영향이 근로자들의 의식, 노동관습이나 노동문화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평등의식으로 인간관계는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수평적이며, 주어진 것이나 지시된 일 외에 자신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미흡한 편이다.

개별적 평가에 기초한 월급 차이 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이므로 자본주의식 개별적 성과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일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 전용 식당 또는 간부 식당을 따로 두지 말고 근로자들과 같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등 격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식사의 질 문제로 노사 간 분쟁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인 관리자들이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문제의 소지는 적어질 것이다.

베트남 근로자의 소속감, 애사심 등이 낮은 편이므로 한국인 관리자와의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또 정신 교육이나 한국파견 연수 등을 통해 애사심과 소속감을 고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젊고 능력 있는 관리자를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책임자는 능력 있는 현지인으로 임명하는 등 근로자들의 성취동기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베트남 식 노무관리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베트남은 프랑스의 영향과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때문에 규정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과 근거를 중시한다. 모든 업무나 지시가 규정화되고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되는 경우 베트남 관리자나 근로자도 이를 잘 준수한다.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자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지시 불이행 등 근로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문서로 남기며 동시에 본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다.

#### 베트남의 국민적 특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

베트남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전쟁과 항전의 역사이다. 지난 1,000년 간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외세의 침략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베트남인들의 저항정신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베트남인은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강

하다. 또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체면과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외국인이 베트남 근로자를 때리면 그들은 이를 자기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한다. 다른 동료 앞에서 꾸중을 듣는 것 또한 대단한 모욕으로 느끼며 반발하거나 보복하기도 한다.

근로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절대 금물이다. 화난 얼굴로 어깨나 머리를 터치하거나 머리를 향해 손을 드는 것도 폭력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06년 한국투자기업에서 관리자의 작업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낮잠을 자고 있어, 관리자가 근로자를 발로 툭툭 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에는 구타, 병원 입원 등으로 과장되어 곤욕을 지른 경우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면 감정을 자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과 맞물려 가장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는 베트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기 전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에도 웃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한국인 관리자들은 이를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흥분해서 큰 문제로 비화되는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의사소통상 문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유능한 현지인 중간관리자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특히 징계, 해고 등 꺾고려운 사안을 처리할 때 유능한 현지인 관리자가 있으면 융통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인 관리자와 현지인 현장근로자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직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내 의사소통 원활화

베트남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개인적인 불만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오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근로자들의 선동에 의해 개인적 불만이 집단적 노사분규로 비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자주 대화를 갖는 분위기가 중요하므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게시판을 통해 회사의 주요 정책이나 방침, 그리고 노사합의 결과 등 주요사항을 즉시 전파하고, 게시판을 사내의 공식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근로자와 한국 관리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을 구축해 노조와 협조관계를 만들고, 근로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전달받아 해소함으로써 개인의 문제가 집단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한 한국 기업은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장을 근로자들의 선망을 얻은 인사로 선정하고 조합장으로 하여금 카운슬링 전용 핸드폰을 소지하도록 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즉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도록 함으

로써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의 입지를 살리는 한편, 회사의 정보전달도 원활하게 유지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언어문제이다. 베트남어는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 언어이며, 영어는 한국인 관리자와 베트남 근로자 모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애로를 많이 겪는다. 베트남어가 가능한 한국인 관리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현지 근로자의 고충과 개인적 불만을 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방침이나 기업경영 방식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 위기 대응체제 확보

다양한 예방책을 통해 파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러 이유로 파업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평소에 근로자들의 불만,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조, 직반장 등 공식 라인과는 별도로 비공식 여론 수렴망을 가동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은 아직까지 법령이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현지의 관례와 유관기관 실무자의 견해 등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노동국이나公安(경찰), 지역노동연맹, 당위원장, 세무서장 등의 영향력이 크므로 평상시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법 적용이나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이들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각종 행사 때 주변의 유력 인사(특히 전직 성·시장, 공산당 서기 등 원로 인사의 지지 확보가 중요)를 초대해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벌여야 한다.

법령을 근간으로 하되 현실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단 파업이 발생하면 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노동 손실 등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대화에 임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 노무소송 사례

### 노무소송 사례

베트남 근로자 A는 한국계 회사에 통역으로 채용되어 회사와 1년 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도중 “회사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및 관련 근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사용자인 회사가 약 10개월 간 3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자신에게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이에 대해 회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지정된 양식에 초과근무 시간을 작성하여 등록하게 되어있는데 A는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A가 근로시간 이후에 회사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업무를 하였는지 개인적인 일을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론했다. 또 회사는 “A는 근로시간 이후 회사에 남아 있으면서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하거나 초과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린 적이 없고, 매월 계약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월급을 받으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의한 적이 없다”면서 A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 비록 A가 회사와 계약된 근로시간 이후에 회사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 회사는 A에게 정해진 근로시간 내의 업무에 대해서는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 이 월급에 대하여 A가 회사에게 한 번도 이의를 한 적이 없었던 점과 △ 초과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초과근로 등록 장부에 초과근로 내역을 등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A는 한 번도 초과근로를 등록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했다. 그 결과 법원은 “A가 회사에서 정해진 근로시간까지 근무하고 그에 따른 월급을 받기로 했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A가 법률과 회사의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회사는 A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sup>2</sup>

초과근로가 허용되는 조건은 노동법 제106조 및 107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 제97조에 초과근로수당 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초과근로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제70조) 및 근로계약서(제3조, 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작성하도록

1) 이 소송 사례는 2007년에 발생했지만 2012년 개정된 노동법을 따라도 이 사안에 적용되는 초과근로와 관련된 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그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2) 이외 회사의 일반적인 해고통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도 이 소송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고 통보와 관련된 법률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어 현 사점에서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초과근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은 생략하였다.

되어 있다. 따라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를 지시하는 방법 및 초과근로를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자세하게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소송 사례에서도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방법에 대해 회사 내부에 명확한 규정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러한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 노동법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기본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8시간 주 48시간</li> </ul>
	초과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 주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12시간, 1개월 40시간, 1년 200시간 초과 불가</li> <li>▪ 3교대제(2교대제불가)</li> <li>▪ 초과근로임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 : 150% 이상</li> <li>- 주휴일 : 200% 이상</li> <li>- 국경일 또는 유급휴가일 : 300%(휴일임금100%+추가 200%)</li> </ul> </li> <li>▪ 야간근로 시 : 통상임금의 30% 이상 수당 지급 + 통상 주간근로 지급 임금의 20% 추가지급                              예) 야간초과근로 수당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 야간초과근로 200%</li> <li>- 주휴일 야간초과근로 270%</li> <li>- 공휴일, 명절, 유급휴가일 야간초과근로 390%</li> </ul> </li> </ul>
휴식 및 휴가	휴식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30분 유급휴식</li> <li>▪ 야간작업 근로자는 45분 휴식</li> <li>▪ 야간교대근무의 경우 근무시작 전 12 시간의 휴식시간 보장</li> <li>▪ 생리 기간 중인 여성근로자는 매일 30분 휴식시간 추가 부여</li> <li>▪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는 1일 60분 휴식시간 부여</li> </ul>
	휴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 최소 1일 휴일</li> <li>▪ 교대근무자 월평균 총 4회 휴일 보장</li> <li>▪ 국경일 및 경조사</li> <li>▪ 연차휴가(근로의 성격에 따라 12, 14, 16일 부여 + 5년 근속 시 1일씩 추가)</li> <li>▪ 12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근로 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 부여(미사용 시 퇴직 또는 실직하는 경우에만 현금 지급)</li> <li>▪ 남편 출산휴가(5~14영업일)</li> </ul>

구분	내용
휴식 및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7개월이상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 여성에 야간근로, 초과근로, 원격지 출장근무제한</li> <li>▪ 임신, 출산휴가,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 시 징계조치 부과 제한</li> <li>▪ 출산 전후 6개월 휴가</li> <li>▪ 동시에 두 명 이상 출산할 경우: 자녀 1인당 1개월씩 가산</li> <li>▪ 임신한 근로자가 담당 의료 기관으로부터 근로 계속 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휴직 가능</li> </ul>
노동계약	근로계약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습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 기한에 정함이 없는 계약. (기한에 정함이 있는 계약 2번 체결 시 자동 기한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li> </ul>
	근로계약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비전임 근로자 대표조직(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중 계약 기간 만료는 제외)</li> <li>② 근로계약에서 정한 직무의 완료</li> <li>③ 양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동의</li> <li>④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선고유예나 석방될 수 없는 경우, 사형 선고를 받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상 직무 이행이 금지된 경우</li> <li>⑤ 근로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li> <li>⑥ 외국인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당국의 결정에 따라 추방</li> <li>⑦ 자연인인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이 해당 사용자의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사망 선고를 한 경우; 법인인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및 당국이 사용자의 법정대표자가 부재중임을 통지한 경우</li> <li>⑧ 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li> <li>⑨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li> <li>⑩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li> <li>⑪ 사용자가 구조 또는 기술의 변화, 경제적 사유, 합병, 분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li> <li>⑫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가 만료된 경우</li> <li>⑬ 근로자가 수습기간 내에 그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수습합의를 취소한 경우</li> </ul>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보험 가입으로 대체(실업보험료 납부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 불필요)</li> </ul>

## □ 세무관리

### 법인세 개괄

#### 1) 세율

법인세는 국세이며, 법인세율은 20%이다. 일부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각 사업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32%부터 50%까지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광물자원(은, 금, 보석 등)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 위치에 따라 40%에서 50%까지의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2) 신고 및 납부

일반적인 표준 과세연도는 역년(1~12월)이며, 만약 회사가 역년과 다른 과세연도(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분기별 법인세 중간예납을 요하고 있으며, 다만, 중간예납시 별도의 중간 예납 신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는 추정에 따라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분기별 중간예납을 납부하면 된다. 분기별 중간예납이 최종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액의 75%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중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분기분 지급기한으로부터 계산하여 지연지급이자 (현재 연간 약 11%)가 부과되게 된다. 즉, 이에 따라 3분기까지 법인세 예납액이 연말 최종신고액의 75% 까지 납부가 필요 하다.

법인세 확정 신고는 연간으로 수행되며, 연간 법인세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월의 말일까지 신고/제출되어야 하며, 잔여 법인세 부채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되어야 한다.

타 지방성에 종속적인 회계 단위(지점 등)를 가진 납세의무자는 지점을 합산하여 하나의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회사들은 종속적인 제조설비들이 위치하는 지역들의 지방세 무서들에 법인세를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의 총 지출액에서 각 제조설비로 인해 발생한 지출 비중을 기초로 법인세를 분할 납부한다.

####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과세표준 = 총 익금(국내, 해외 원천 불문) - 손금인정되는 비용 + 기타 소득

납세의무자는 연간 법인세 신고시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소명하는 조정사항들을 포함하여 세무조정 신고서식을 작성한다.

#### 4) 손금산입 요건

-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 중,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
  - 적격증빙을 보유한 보유하고 있는 비용(즉, 세금 계산서)
  - 관련 거래내역 증빙, 비용금액이 2천만 VND 이상인 거래시 은행 계좌이체증명서 요구
- 이에 따라, 증빙 관리와 함께, 회사 영업과의 관련성 여부가 중요하다.

#### 5) 손금불산입항목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비용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 비용중 손금산입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된다.

- 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개별노동계약서, 단체노사협약서, 혹은 사규에 기술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직원급여
- 월 평균 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복리후생비 (직원의 가족에게 지급된 복리후생비 포함). 의무적이지 않은 의료 및 기타 보장성 보험도 복리후생비로 간주
- 종업원을 위한 자발적인 (법률에 정한 의무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한) 연금기금에 대한 납입금으로 종업원당 월간 3백만 VND를 초과하는 금액
- 적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적립된 R&D 관련 총당금
- 퇴직급여총당금 및 노동법상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급여
- 해외기업의 본사에 의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배부된 간접비용 중 법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 법정 자본금의 미납입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 베트남중앙은행 고시이자율의 1.5 배를 초과하는 비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 EBITDA의 30%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비용
-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손, 제품보증비용, 건설공사 총당금으로써 법규정을 위배하여 적립한 경우

- 외화표시부채에서 기인하지 않은 외화환산손실
- 교육, 의료보건, 자연재해, 빈민자선사업용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부금
- 행정벌과금, 과태료, 지연납부이자
- 특성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서비스비

보험사, 증권사, 또는 복권 사업자 등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 6) 이월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가 존재하며, 최장 5개년 동안 이월 공제 가능하며, 결손금의 소급공제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연결납세의무나 동일 기업그룹사 내 손실의 공제혜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 7) 이익배당금의 송금

외국 투자자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또는 베트남 내 투자의 종료 시점에 이익잉여금을 모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피투자회사가 이월결손금 상태인 경우 이익배당은 불가하다. 외국 투자자 또는 피투자회사는 이익배당금의 송금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까지 세무 당국에 송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 8) 세제혜택

베트남은 광범위한 법인세 투자 혜택(세제감면)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제혜택은 법으로 정하여진 투자장려분야, 투자장려지역 및 투자규모를 만족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세율 혜택과 감면 혜택이 중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특혜 세율 확인 후 이에 대한 감면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특혜세율은 10%와 17%의 두가지 세율이 2016년도 1월부터 존재하며, 특혜세율 관련 매출액 발생시점부터 각각 15년과 10년간 적용가능하며 일정한 조건충족시 연장 가능하다. 특혜세율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표준 법인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특정한 경우 프로젝트 기간 전체에 걸쳐 15%의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의 사회적 사업 업종(예컨대, 교육사업, 의료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10%의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조세 면제와 감면에 해당하는 조건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제혜택 대상 활동으로부터 최초로 과세소득 (기타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일정 기간동안 법인세 납부가 면제되고, 해당기간 경과 후에는 적용 세율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면제/감면 혜택을 누리는 사업자가 세제혜택 대상 활동에서 최초 수익(매출)이 창출된 이후 3년 이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익년도인 4번째 연도부터는 강제적으로 조세면제/감면이 개시된다.

최초 투자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하여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 확장 프로젝트(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과거에 별도의 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못한 확장 프로젝트 포함)로 규정하고, 2015년부터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사업 확장 프로젝트는 특정 자산인수나 기업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된 프로젝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래는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요 법인세 혜택 분야

- 산업재를 제조하는 제조업 기업의 신규 투자 또는 확장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면 법인세 세제혜택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High Tech 인센티브: 제품이 하이테크 법률상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첨단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제품에 해당)
  - Supportive Industry 인센티브: 제품이 의류, 섬유, 신발, 전자부품, 자동차 조립 및 기계 등의 분야이면서 베트남 내에서 생산된 적이 없는 경우 (생산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EU 및 그와 동급의 국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투자가 장려되는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지구 및 첨단기술지구, 특정 산업단지 및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세제혜택
- 대규모 제조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의 제조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프로젝트는 제외)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세제혜택의 적용 가능
  - 총투자자본이 6조 VND 이상이며, 설립허가 이후 3년 내에 자본금이 완납된 프로젝트로서 영업 개시 후 4년 차까지 최소 연 매출액 10조 VND 달성, 또는 늦어도 영업 개시 후 4년 차까지 최소 고용인원 3,000명 달성하는 경우
  - 총투자자본이 12조 VND 이상이며, 설립허가 이후 5년 내에 자본금이 완납된 프로젝트로서 관련 법률들에 따라 장려기술로 등록된 기술을 이용한 경우
- 베트남 정부에 의하여 투자가 장려되는 분야에는 교육, 건강보건, 스포츠/문화, 첨단기술, 환경 보호, 과학적 연구 및 기술개발, 기반시설 개발, 농수산물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재생에너지가 포함됨.

추가적으로, 제조, 건설 및 운송사업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다수의 여성직원을 채용하거나 소수민족을 채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 적용가능. 2018년 1월 1일부터는 낮은 법인세율을 포함한 특정의 세제혜택들이 중소기업(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충족 필요)에 부여됨.

투자 권장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은 혜택이 주어지는 해당 사업 영역 밖의 기타 소득(other income)에는 그 적용이 배제됨. (단, 폐기/처분과 같이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허용)

- 참고로 주로 한국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내역은 아래와 같다.

면제/감면	세부내역	세율
4년 법인세 면제, 9년 50% 감면	경제 특구, 하이테크 파크 공단, 특별 낙후 지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 과학연구, 기술개발 관련, 고도기술 적용관련 등 하이테크법에 해당하는 하이테크 기업 등 요건을 만족하는 투자기업, 보조산업 투자기업 관련 투자건 등(섬유 및 봉제, 가죽제품, 신발, IT, 자동차 부품 등으로 미생산되는 산업소재의 생산 또는 기생산되는 제품이었지만 EU또는 동등한 품질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소재의 생산 관련)	15년 10%, 이후 정상세율(20%)
2년 법인세 면제, 4년 50% 감면	특정지역을 제외한 일반 법인세율 적용 지역 공단 입주 기업	정상세율(20%)

### 이전가격 세제

베트남의 이전가격 세제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국거래 또한 적용대상이다. 구 규정(Circular 66/2010/TT-BTC)을 대체하는 Decree 20/2017/ND-CP (이하 "Decree 20")는 2017년 2월 24일에 제정되어 2017년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Decree 20은 큰 틀에서 이전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규정 대비 더욱 확대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BEPS Action Plan등에 제시된 새로운 개념과 원칙들을 다루고 있다.

다만, 베트남의 이전가격 법규는 OECD 규정을 준용하되, 더 강화된 방식과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서 실무상 이를 적용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규정상 회사가 적용한 이전가격 방식이 국가에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가격 관련 손익

의 하향조정(Downward adjustment)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2020년 6월, Decree 68/2020/ND-CP(“이하 Decree 68”)을 제정하여,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2020년 11월 Decree 132/2020/ND-CP(“이하 Decree 132”)를 제정하여,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활발하게 재, 개정되고 있는 분야가 이전가격 세제이며 과세당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정된 Decree 132에 따르면, 회사가 이전가격 보고 관련 법규준수사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 자체적인 자료를 통한 과세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1) 특수관계자 정의

특수관계자가 되기 위한 지분보유 기준은 25%이며, 과거에 존재하였던 매입/매출액 기준은 삭제된다.

#### 2) 이전가격 문서화 (TP Documentation; TPD)

이전가격 문서화의 형태가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며 이전가격 신고서(TP Declaration Form)와 이전가격 보고서로 이루어진다.

##### - 이전가격 신고서(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

이전가격 신고서는 연도별 특수관계자 간 거래내용 및 사용된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포함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상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확인 (또는 자발적인 조정 수행)을 요구하는데, 이들은 연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야 한다.

##### - 이전가격 보고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매년마다 베트남어로 작성된 이전가격 보고서(TP Documentation)을 작성/구비하여야 한다. Decree 132은 다국적 기업의 영업에 대한 과세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3단계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Master file, Local file,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이다. 이러한 이전가격 문서화는 법 해석상으로는 연간 법인세신고 제출시점 이전에 작성되어 있어서 애로가 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전가격 문서화 작성이 면제된다.

- 과세기간 중 매출액이 500억 VND 미만이면서 특수관계자 거래의 총 금액이 300억 VND 미만
- APA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 ; Advance Pricing Agreements) 협상이 타결되고 연간 APA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
- 매출이 2,000억 VND 미만이면서,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고, 업종에 따라 특정한 이익율(EBIT/매출) 조건을 달성하는 납세자 (유통업 5%, 제조업10%, 임가공업 15%)
- 베트남 내의 특수관계자 거래만 존재하며, 각각의 특수관계자의 법인세율이 동일한 경우

### 3) 정상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결정방법에는 OECD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교가능한 독립적가격방법(CUP), 원가가산 마진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가격방법(RP), 비교가능한 이익분할방식(PSM), 거래순이익율방식(CPM or TNMM)이 허용되고 있다.

### 4) 이전가격 상호합의 제도(APA)

납세자는 쌍방, 일방의 상호합의 제도 이전가격에 대한 상호합의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국세청 (GDT)은 여러 국가의 국세청과 협상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체결사례는 없다.

### 5) 총 이자비용에 대한 EBITDA 의 30% 한도 규정

이자비용 손금 불산입은 이전가격 법규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 이자비용의 손금 인정에 대하여 EBITDA의 30% 한도까지 손금산입가능하다(구 규정 20%). 한도가 초과되는 이자비용은 이월공제 가능하다. 이전가격 세제는 특수관계 기업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지만, EBITDA 기준 30%의 한도 규정은 특수관계자뿐 아니라 제 3자로부터의 차입금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 2.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FCT”)

### 1) 적용대상

외국인 계약자세 (이하 FCT)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VAT와 법인세의 조합 또는 외국의 개인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로 구성되며, 고정 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베트남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소재한 계약 주체(외국인 투자기업 포함)와의 계약 관계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을 발생시키는 해외의 법인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이자, 지적재산권 사용료, 각종 사용권 대가, 외국계약자에 지급하는 수수료, 국제리스계약, 보험/재보험의 대가, 항공 및 국제 운송서비스, 증권의 매매, 그리고 베트남 내에 공급된 재화 또는 베트남 내에서 유관 용역이 제공된 재화.
- 일부 유통계약의 경우 해외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의 재화의 유통과 서비스의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FCT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해외 업체가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유통,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가격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베트남 기업을 고용/위임하여 베트남에서 재화 유통 및 서비스 제공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FCT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순수한 재화의 공급은 FCT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즉, 국경을 통과한 이후 재화에 대한 책임, 관련 원가 및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베트남 내 유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또한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되었거나 소비된 용역, 베트남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수행된 용역(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행된 수리, 교육, 광고 및 홍보 등)의 경우도 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적으로, 본사로 지급되는 이익 배당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에 따른 송금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다.

## 2) FCT납부방식

외국인계약자는 FCT 납부방식으로 다음의 세가지 방법 - 공제법, 직접법, 혼합법 -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 방법 1 - 공제법 (Deduction Method)

공제법 적용시 외국인 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해야 하고, 베트남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매입부가세 공제 가능). 외국인 계약자들은 다음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
-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182일 초과 소요되는 경우
- 베트남 회계시스템(VAS)을 채택하고 준수하며, 납세자 등록절차가 완료되고 Tax Code 발급

베트남 발주처는 계약 체결 후 20영업일 이내에 외국인계약자가 공제법에 따라 FCT를 납부할 것임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내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공제법을 적용하여 FCT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외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공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약자는 공제법 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 - 방법 2 - 직접법 (Direct Method)

직접법(또는 원천징수법)을 채택한 외국인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수행하지 않는다. 대신, 부가세와 법인세는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되는데, 원천징수세액은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규정된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수행되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정세율이 규정된다. 베트남 발주처가 원천징수하는 외국인계약자에게 과세된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발주처의 매입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허용된다.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계약자가 직접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CT 신고 납부방식에 있어 별도의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 - 방법 3 - 혼합법 (Hybrid Method)

혼합법은 외국인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등록과 '공제법'에 따른 부가세 신고납부(즉,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를 허용한다. 그러나 법인세부분은 총 매출액에 '직접법' 하의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혼합법을 채택하기 위한 외국인 계약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
- 182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기초하여 베트남에서 영업을 수행
- 재무부(MoF)의 지침 및 회계규정에 부합하는 회계기록을 유지관리

### 3) 전자상거래 관련

2019년도 개정된 조세관리법에 따르면, 베트남 내국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를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은행과 관련 중개업자의 경우, 베트남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해외의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월별로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되며 국세청에서는 해당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계약자 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대금 송금기록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고를 요하고 있다.

### 4) 직접법 하 FCT 적용 세율

구분	부가가치세(1)	법인세
베트남 내 재화 공급 및 재화 공급시 유관서비스 제공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거래를 포함한 재화의 유통 또는 Incoterms에 따라 역외 판매자가 베트남내 재화와 관련한 위험을 부담하는 재화거래 포함)	면제 (2)	1%
용역(Service)	5%	5%
식당, 호텔 및 카지노 운영 용역	5%	10%
자재, 기계장치, 장비의 공급이 없는 건설/설치 용역	5%	2%
자재, 기계장치, 장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건설/설치 용역	3%	2%
운송	3% (3)	2%
이자	면제	5%
로열티	면제 (4)	10%
증권 매매	면제	0.1%
파생상품	면제	2%
기타 영업활동	2%	2%

- (1)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제공되는 재화 및/또는 용역의 공급은 표준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됨.  
특정한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5%의 부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2) 부가세 면세 재화이거나 수입시 수입부가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 없음.
- (3) 국제 운송의 경우 0%의 부가세율 적용 대상임.
- (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술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포함)의 이전은 부가세 면제 대상임. 기타 로열티는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3. 자본양도소득

베트남에 소재한 회사의 지분 양도시 발생한 이득은 대부분의 경우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본양도소득세(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로 불리나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다. 과세표준은 매각가액에서 취득가액(최초 매각의 경우엔 최초 법정자본금 출자액)과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매도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베트남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할 매각가액에서 자본양도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자도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지분이 매각되는 베트남 회사가 자본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본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관련 인허가 당국의 양도거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함. 만약 양도 거래에 있어 별도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양자가 지분 매각에 합의한 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납부가 수행되어야 한다.

지분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과세당국은 거래가격이 시장 가격(Market Price)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래 가격이 계약서상 특정되어있지 않은 경우 CAPT의 과세 기준이 되는 지분양도가격(Transfer price)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최근 들어 베트남 내 기업이 보유하는 지분의 양도분 아니라, 베트남 내 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모회사의 베트남 기업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법인에 의한 증권 양도의 경우 '매각가'의 0.1%의 인정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양도차익의 20%로 부과된다. 그러나, 매각자가 거주자인 베트남 내국법인일 경우 '매각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20% 법인세가 부과된다.

한-베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해당 매각 대상 법인이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면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공격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다.

매각 대상회사	매수자	양도소득세신고자		양도소득세율	
		Foreign seller	Local seller	Foreign seller	Local seller
유한회사	Foreign buyer	회사가 매도인을 대신하여 신고	매도인이 신고	-법인과 개인인 경우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양도차익의 20% 또는 매각가액의0.1%	-법인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
	Local buyer	매수인이 대신하여 신고			
주식회사	Foreign buyer	회사가 매도인을 대신하여 신고	매도인이 신고	-법인과 개인인 경우, 상장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양도차익의 20% 또는 매각가액의0.1%	-법인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 또는 매각가액의0.1%
	Local buyer	매수인이 대신하여 신고			

### □ ESG경영 활용방안

최근 국제적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 형성에 있어 재무적 가치(financial value) 못지 않게 비재무적 가치(non-financial)를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 중심으로 해당 가치가 확산되고 있으나, 고성장을 지속하며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에서도 최근 많은 현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총괄적으로 ESG 정책을 입안하기보다 신흥시장이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에 맞는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환경(E)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자연 및 환경보호, 사회(S) 분야에서는 사회적 책임경영, 인적자원관리, 보건 및 안전,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윤리 경영 및 반부패, 제도적 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가능개발 또는 지속가능경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중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먼저 ESG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가 최근 도입한 정책을 먼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로 나누어 개괄하고, 베트남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서는 베트남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ESG 경영 도입 사례도 살펴볼 것이다.

## 4. 베트남 정부의 ESG 관련 정책 개관

### 1) 환경(E) 분야

베트남의 개정 환경보호법(Law No.72/2020/QH14)이 2022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2014년 환경보호법과 대비하여 이번 개정 환경 보호법은 ▲환경 자원 보호에 대한 규정 구체화 ▲환경 보호 정책의 세부규정 구체화 및 관리 및 책임 주체 명시 ▲생산·제조 기업의 환경 보호 책임 확대 ▲사업규모와 환경 영향 등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EIA) 대상 사업 명확화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EIA) 대상사업 명확화 및 세부규정 마련(제4장)하며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 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 자원 등) 이용 정도, 개발 부지의 토지 및 수자원 영향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 목록을 세분화하였다.

아울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그룹Ⅲ·Ⅳ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EIA)의 의무에서 배제하여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완화하고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분류 그룹별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EIA) 주요 내용 |

관리도구	그룹 I (환경에 미치는 위험 높음)	그룹 II (환경에 미치는 위험 있음)	그룹 III (환경에 미치는 위험 경미)	그룹 IV (환경에 미치는 위험 없음)
예비환경영향평가: 공적투자(ODA) 및 PP(민관합작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그룹 I 으로 분류된 모든 프로젝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수행	그룹 I 로 분류된 모든 프로젝트	그룹 II 로 분류된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에 끼치는 민감 요인을 검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관리도구	그룹 I (환경에 미치는 위험 높음)	그룹 II (환경에 미치는 위험 있음)	그룹 III (환경에 미치는 위험 경미)	그룹 IV (환경에 미치는 위험 없음)
환경허가	폐수, 분진, 배기가스를 발생시키고 환경에 영향을 끼쳐 그룹 I~III으로 분류된 프로젝트. 배출하기 전 전처리가 필요한 유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프로젝트 (규정에 따라 ODA로 분류되는 프로젝트는 제외)			
환경등록	폐기물을 생성하지만 환경 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프로젝트. (a) 현장에서 처리 가능하거나 성·시별 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경우 (b) 관련 프로젝트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경우			

자료: Allen & Gledhill(2021)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보호 규정 구체화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의무도 확대(5장)하였는데, 경제구역·산업단지·생산기업 내에 ▲고형폐기물 처리 시스템 ▲빗물 처리 시스템 ▲폐수처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호 및 관리 인프라를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보고서에 따른 모니터링 규정을 명확히 하며(제50~52조),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위험물질) 책임 관리 의무도 부여했다(제53조).

이 밖에,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 확대(제54조~제55조)와 기후 변화 대응 방안과 탄소 절감 국가 로드맵(제7장)도 구체화하였다.



## 2) 사회(S) 분야

사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근로환경에 의해 근로자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제도를 정비중이다.

### |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 |

법률	내용
Law 84/2015/QH13	① 고용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 의무 ② 중장비 및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의무
Decree 88/2020/ND-CP	①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 ② 산재 후속조치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직업교육, 건강검진 등) ③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
Decree 44/2016/ND-CP & Decree 140/2018/ND-CP	① 근로환경에 대한 고용자의 안전교육 및 감독 의무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이 밖에도, 성평등·모성보호·사회적 취약층 채용 등에 대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 성별이 아닌 직급과 직무, 역할에 따른 임금지급체계 구축 ② 여성 채용비율을 향상시키며 여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및 복지체제 개선 ③ 직장 내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마련 등 육아관련 복지제도 활성화 장려 ④ 결혼과 출산 등을 앞둔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형성 ⑤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시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중이다.

### | 직장내 다양성 및 안전망 관련 법률 |

법률	내용
Law 45/2019/QH14	① 성별에 따른 임금차등지급에 대한 불가조항 ② 성평등을 실현하는 채용절차 마련,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등에 대한 근거조항 ③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대한 마련(장려) ④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Decree 145/2020/ND-CP (Article 83, Clause 2a)	① 여성채용비율이 높을 경우 고용주에 대한 법인세 혜택제공
Law 84/2015/QH13 (Article 21, Clause 1)	① 1년에 한번 근로자의 정기 건강검진 의무 ② 정기 건강검진과 산재에 따른 치료 등은 고용주에 귀속 의무
Decree 143 / 2018 / ND-CP	①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포함)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의무* * 2022년 1.1부터 시행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3) 지배구조(G) 분야

기업들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근로자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제표 공개를 통한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기업 경영활동에는 주주 및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 중이다. 아울러, 인사규정과 내부지침도 명확히 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	내용
Law 88/2015/QH13 (Article 7)	① 재무부 제공 기준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② 재무제표와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공시 의무* * 대상 한정 : 상장기업
Law 36/2018/QH14	① 인사규정 등 기업 내부지침의 명확화 의무
Law 59/2020/QH14	① 법인 설립 시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5.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 1)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21~2030과 ESG

베트남 정부는 법률적인 제도 정비뿐 아닌, 사회경제 개발전략과 계획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10년간 베트남의 발전전략으로 사용될 사회경제 개발전략(SEDS, 2021-2030)에도 주요 내용들이 담겨있다.

#### | SEDS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전략목표 |

분야	주요 전략 목표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 연평균 성장률 약 7%, 1인당 GDP는 약 7,500 USD</li> <li>- 가공 및 제조업 비중은 GDP의 약 30%, 디지털 경제는 GDP의 약 30%</li> <li>- 도시화율이 50% 이상</li> <li>- 총 사회적 투자 GDP의 33-35%, 공공 부채 GDP의 60% 이하</li> <li>- 성장에 대한 총요소 생산성(TFP) 기여도 50% 도달</li> <li>- 사회 노동 생산성의 연평균성장률 6.5% 이상</li> <li>-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감소 매년 1-1.5%</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개발 지수(HDI) 0.74 이상 유지</li> <li>- 평균 수명 75세, 건강 수명 최소 68세</li> <li>- 학위 및 자격증 소지 노동자 비율 35-40%</li> <li>- 전체 사회 노동에서 차지하는 농업 노동자의 비율 20% 미만으로 감소</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 피복률 42%</li> <li>- 폐수 처리 및 재사용률 70% 이상</li> <li>- 온실 가스 배출량 9% 감소</li> <li>- 생산 및 사업장의 100%가 환경 기준 충족</li> <li>- 해양 및 연안 보전 구역이 국가 해역의 자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3-5%</li> </ul>

자료원 :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21a)

특히, 환경을 경제,사회와 함께 발전 주요 분야로 설정함으로써, 환경보호,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 2) 기후변화 대응

베트남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은 상기 정책 외에, 2020년 7월에 발표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전략 2021~2030 및 2050 비전(1055/QĐ-TTg, 이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기후변화 충격 취약성 및 위험감소, 기후변화 대응 통합 촉진과 같은 공동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효율성 강화 등 3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며, 2021~2025년, 2026~2030년 및 2050년까지의 기간별 이행 전략도 마련하였다.

기간	이행 전략
2021~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변화 적응을 메커니즘 및 정책 완성에 집중</li> <li>- 정책과 전략 시스템에 기후 변화 통합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기술 조건 준비</li> <li>- 기후 변화 적응, 자연 재해 대응 능력 향상, 자연 재해 피해 완화, 기후-날씨의 비정상적 변화 감소를 위한 작업 구현 및 우선 순위 배정</li> </ul>
2026~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지역사회, 환경 분야의 기후변화 회복력 및 적응 준비 강화를 위한 국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역량을 위한 작업 및 솔루션 구현 활동 조정 및 통합</li> <li>- 인프라, 자연 생태계 적응력 및 생물다양성 지속 개선</li> <li>- 기후변화의 위험 감소와 사회-경제-환경 상호이익 행동 채택 촉진</li> <li>- 기후변화 대응 활동 영향 감시 및 평가, 영향 최소화 솔루션 식별, 사회-경제 개발 기회 창출</li> </ul>
2050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2030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개선, 식량-에너지-수자원 안보, 양성평등, 사회 보장, 지역사회 건강, 천연자원 보호,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측면에서 지속가능 국가발전을 위한 인간, 인프라, 자연 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 지속</li> <li>-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기회 획득을 위한 전 사회-경제 활동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li> <li>-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기후 시스템 보호 관련 국제사회 기여</li> </ul>

자료원 :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20d)



### 3) 신재생에너지 개발확대와 탄소배출 감축

또한, 국가에너지발전전략으로서 2020년 정치국 결의 55호(55/2020/NQ-TW)를 발표하고 재생가능 및 지속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목표도 세웠다.

결의 55호는 국가에너지 안전 보장, 고품질 및 저렴한 에너지 공급, 환경 보호, 아세안 역내의 인프라 개선, 에너지원의 효과적 개발, 투명성 확보한 경쟁시장 구축등을 강조하며,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원의 다양화, 국가의 공업화와 근대화에 대응한 전력사업 발전 강화, 에너지 인프라 개선 고도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1차 에너지 총공급량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30년까지는 약 15~20%까지, 2045년까지는 약 25~3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최종에너지 총공급량에서 지속가능 에너지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각각 7%와 14%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5%, 2045년까지는 20% 감축할 계획이다.



## 6. 베트남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현황 및 사례

### 1) 환경(E) 분야 주요 사례

#### 가. TH Tre Milk: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5개 핵심 가치 사업 추진

기업명	TH True Milk	주력사업	유제품 제조업
ESG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농, 하이테크팜의 선진 기업일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자연이 주는 원료를 즐기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환경 보호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음.</li> </ul>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 True Milk,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천연자원환경정책연구소(SPONRE)와 공동으로 베트남 환경사업(VB4E)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아이디어 뱅크 구축, 정책 옹호 지원, 역량 구축의 세 가지 주요 활동에 중점을 두는 VB4E Alliance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li> </ul> </li> <li>친환경 제품 생산 및 소비자 재활용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5월 부터 전국 TH True Milk 매장은 비닐봉지 사용을 중지, 친환경 생분해소재 쇼핑백 사용</li> <li>- 고객이 유기농 우유나 탐키드 우유상자를 매장으로 반환하면 예코백 증정</li> </ul> </li> <li>현대식 축산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에안성에 위치한 TH True Milk의 폐기물 처리장은 베트남에서 가장 현대적인 축산 폐기물 처리 시스템 중 하나</li> <li>-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따라 개발된 전기 생성용 바이오가스 수집 및 비료 생산 사업으로 오염원을 해결하고 온실효과 유발 탄소 감소, 농가 근로자 및 지역민 건강 보호에 기여</li> </ul> </li> <li>TH True Milk 생산 농가 및 TH True Milk 공장 태양광 패널 시스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 그룹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2019~2030년 경제·효율 에너지 활용에 관한 국가계획'에 대응해 농가 축사와 우유공장 옥상에 태양광 패널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중임.</li> </ul> </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호 프로젝트 및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 다양성 보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해양 및 연안 보존, 산림 경관 복원, 물과 습지 보존, 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연구지원 및 후원</li> </ul> </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 프로젝트 및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 다양성 보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해양 및 연안 보존, 산림 경관 복원, 물과 습지 보존, 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연구지원 및 후원</li> </ul> </li> <li>○ 제품 포장재 100% 수거 및 재활용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내 8개 주요 다국적 기업과 손잡고 베트남 포장재활용기구(PRO Vietnam)를 설립하고 2030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포장의 100% 수거 및 재활용 목표 수립</li> <li>- Ingeo TM PLA, 밀짚으로 만든 용액, BioPBSTM 바이오 플라스틱, 카사바, 사탕수수 같은 식물 재료로 생산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포장재로 활용 중</li> </ul> </li> <li>○ 일일 축산 폐기물 처리 용량 1,500m³, 바이오 비료 생산량 15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처리 시스템 용량은 하루 1,500m³로서 바이오가스 수집 후 폐수와 혐기성 처리하는 공정을 도입한 후 기존 폐기방식 대비 COD 및 BOD함량이 95~99% 감소함.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일일 바이오 비료 생산량 약 150톤으로 투자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함.</li> </ul> </li> <li>○ 연간 태양전지판 이용 전기 생산량 약 384만 Kw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지붕 면적은 약 20,000m² 이며, 연간 약 384만 Kwh의 전기를 생산가능. 이는 약 1,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li> </ul> </li> </ul>
-------	--

#### 나. Hòa Phát: 생산 현장 열회수에너지 사용 및 산업 분진 감소 조치

기업명	Hòa Phát	주력사업	철강, 제철업
ESG 추진배경	○ 생산 현장에서 열회수 에너지 사용 및 산업 분진 감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 생산시 발생하는 열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강 생산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열을 회수하는 기술을 적용, 코킹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화학물을 제거하고 열에너지만 회수하여 발전기 구동</li> </ul> </li> <li>○ 산업 분진 처리 솔루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먼지 필터를 사용하여 매년 공장 내 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부서에서 다양한 조치를 적용함.</li> </ul> </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회수 전기 사용량 연간 약 7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열회수 생산 전력은 전체 전기 생산용량의 약 70% 해당하는 4억 7,800만 Kwh에 달함.</li> <li>- Dung Quat 경제구역 호아팟 철강 단지는 생산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발전용량이 하이저용 공장 대비 약 2.5% 높음. 2020년 한 해 16억 kwh의 전력을 사용했으나 이 중 12억 kwh(80%)가 열회수 에너지로 자체 생산된 전기임.</li> <li>- 2020년 한 해 호아팟 철강단지의 열회수 솔루션을 통해 절감된 비용은 약 1억 7,000만 달러에 달함.</li> </ul> </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회수 전기 사용량 연간 약 7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열회수 생산 전력은 전체 전기 생산용량의 약 70% 해당하는 4억 7,800만 Kwh에 달함.</li> <li>- Dung Quat 경제구역 호아팟 철강 단지는 생산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발전용량이 하이즈영 공장 대비 약 2.5% 높음. 2020년 한 해 16억 kwh의 전력을 사용했으나 이 중 12억 kwh(80%)가 열회수 에너지로 자체 생산된 전기임.</li> <li>- 2020년 한 해 호아팟 철강단지의 열회수 솔루션을 통해 절감된 비용은 약 1억 7,000만 달러에 달함.</li> </ul> </li> <li>○ 분진 처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기 사용 먼지 처리 필터, 천 먼지 필터, 습식 먼지 필터, 벽면 공기 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운동을 하는 등 공장 내외의 먼지 및 분진 처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용</li> <li>- 제철 및 제철공정에서 회수된 철분 함유 분진 및 압연 강철재는 다른 생산 단계에서 재사용되어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함.</li> </ul> </li> </ul>
-------	---

다. Nova Group: 친환경 건설작업 프로젝트

배경 및 사업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건설부는 2018년 시행규칙 02/2018/TT-BXD를 통해 건설 현장 내 환경보호 활동의 정의를 명기하고 건설업계의 환경보호 활동 보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규정함.</li> <li>○ 2020년 수도 하노이 건설국은 공문 4504/SXD-TTr에 따라 건설 작업 중 환경보호 위해 행위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예고한 바 있음.</li> <li>○ 이를 배경으로, 현지 유명 건설사 Nova Group은 건설작업 중 폐기물 및 오염물질 축소를 위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환경보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함. * 자료: 베트남 신문기자 중앙 연합, 시행규칙 Circular 02/2018/TT-BXD</li> </ul>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은행 산하 IFC의 녹색건축 인증 EDGE green building 도입 (건설 작업 중 소모되는 전력, 물 사용량, 건설 자재 20% 절감 목표)</li> <li>○ 학교 정수 공급 캠페인과 같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 프로젝트 기획</li> <li>○ 2021~2025년 럼동성 정부 협업, 해당 지역 내 식목 활동 및 숲 조성 프로그램 기획 * 자료: 현지 언론</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 자재 사용 효율성 증대 및 다양한 소재 활용으로, 2017년 대비 2019년 모래·벽돌·콘크리트·철강 사용량 90% 감소 효과</li> <li>○ 학교 정수 공급 캠페인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 프로젝트 기획으로, 4000억 동 (약 1745만 달러) 이상 기부 모금</li> <li>○ 학교, 지방 지역 다리, 보호소 등 건설 기부금 기부 * 자료: Nova Land의 2019년 사업 보고서</li> </ul>

## 라. Saigon co.opmart: 일회용 쓰레기 배출감축

<p>배경 및 사업과의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현지 19개 기업들의 연합체 PRO Vietnam과 MoU를 체결하고, 쓰레기 배출 절감 및 재활용 증진을 위한 목표를 함께 수립함.</li> <li>- 남부 최대 마트 사업자 Saigon co.opmart도 PRO Vietnam에 참여</li> <li>* 자료: 베트남 국영신문 Viet Nam News, 현지 언론 Vietnam Economic Times</li> </ul>
<p>추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단, 자연친화적인 상품 대체 등 유통 및 소비 과정에 걸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감소 위해 노력</li> <li>- 2019년 Saigon co.opmart는 현지 전역 600여개 지점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판매를 차근차근 감소해나갈 것이라 공표하고, 우선 호치민시 모든 지점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판매를 중단함.(베트남 최초)</li> <li>- 채소 포장에 비닐봉지 대신 바나나 잎과 재활용 종이백을 사용하고, 대기업(Nestle)과 연계해 우유팩 수집 캠페인을 시행함. 이로써 소비자들이 자연스레 환경보호 활동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li> <li>- 참고로, 동 기업은 2009년 '푸른 환경을 위한 캠페인(Vi môi trường xanh)'을 경영 전략의 일부로 채택함. 그 이래 2011년 현지 마트 유통 사업자 중 처음으로 생분해 비닐봉지를 제공하고 관계당국과 환경보호 캠페인(Green consumption month)을 기획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음.</li> <li>- Earth Hour, Earth Day, World Environment Day에 매년 소등</li> <li>* 자료: Saigon co.opmart 빨대, Green consumption month</li> </ul>
<p>주요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주도적 환경보호 활동에 기여, 타 기업들과 협업 네트워킹 활성화, 브랜드 이미지 개선</li> <li>- 2020년 Green consumption month에는 전월 대비 방문객이 30% 증가, 2019년 같은 캠페인 주최 달에 비교해 매출은 20% 증가</li> <li>* 자료: 현지 언론</li> </ul>

## 2) 사회(S) 분야 주요 사례

### 가. VP Bank: 여성 기업을가 운영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실시

기업명	VP Bank	주력사업	은행, 금융업
ESG 추진배경	○ 여성 기업을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 실시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중소기업 오너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부터 여성이 소유주로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시작</li> </ul> </li> <li>○ 여성 기업의 지속가능성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기업의 상당수가 행정 장벽으로 금융기관 대출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파악하고 기업의 신용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신용 평가 보고 틀을 설계 및 배포함</li> </ul> </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만 달러 규모의 '여성 주도 중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구제 사업'에 참여, 여성 기업을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li> </ul> </li> <li>○ 기업 건강 보고서 발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운영 중소기업 중 기업 신용 평가 보고서 발행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보고서 발간을 돕고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li> <li>- 기업 신용도의 6가지 요소 (비즈니스 모델, 영업 및 마케팅, 기업 운영, 재무관리, 리더십 역량, 인적자원관리)와 개선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 건전성에 대한 종합 보고서 발간 가능</li> </ul> </li> <li>○ 여성기업 코로나19 온라인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coding Happy Female Entrepreneurs'를 통하여 1만 4,779개의 신청 중소기업에게 지원 상담을 하고 1,300건 이상의 지원 사업을 성사</li> </ul> </li> </ul>		



## 나. PNJ Jewelry: 자폐아동 지원 프로그램

<p>배경 및 사업과의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폐아에 특정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 부재로, 사회 공헌을 위해 민간 기업이 자폐증 인지 및 인식 개선 활동 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편적인 예로, 자폐증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한 현지 정부의 공문서가 부재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지원 프로그램조차 모호했음.</li> <li>- 2018년 기준 베트남 내 자폐증 환자 약 20만 명</li> <li>* 자료: 현지 언론 Nhan Dan News</li> </ul> </li> </ul>
<p>추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남부 대표 보석 가공·판매 기업 PNJ는 현지 노동보훈사회부와 연계하여 2018~2022년 자폐증 인지도 개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지 자폐아 지원 활동을 시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NJ는 100억 동(약 43만 달러) 예산을 기여함.</li> <li>- 자폐증 환자 전문 돌봄 인력 100명 교육</li> <li>- 자폐아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폐증 이해 및 자폐아 보호 지식 교육 실시</li> <li>* 자료: PNJ 웹사이트</li> </ul> </li> </ul>
<p>주요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NJ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호치민시 여성기업연합과 함께 행사를 마련하고, 대중들의 자폐증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li> <li>○ 자폐아 운동회(2회 차)를 후원하여 현지 자폐증 어린이 활동 장려</li> <li>○ 베트남 국립병원 및 관계당국과 함께 자폐증 재활 지원 책자 공식 발간</li> <li>* 자료: 호치민시 여성기업연합(HAWEE), 베트남 국회의 온라인 정보 기록 웹페이지</li> </ul>



## 7.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현황 및 사례

### 1) 환경(E) 분야 주요 사례

#### 가. SK Innovation: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사례

기업명	SK Innovation	주력사업	정유·화학, 신소재, 배터리
ESG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략방향 : Green 포트폴리오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는 베트남 원유 생산광구 15-1에서 2003년부터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16-2 광구 탐사를 통하여 가장 유망한 지역을 선정, 2021년 내에 탐사 시추를 시행할 계획임.</li> <li>- SK는 베트남에 법인이 아닌 SK에너지 지사를 두고있으나 베트남 내의 다양한 환경 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음.</li> <li>- 또한 한국 협력사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시스템을 구축</li> </ul> </li> </ul>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빈 섬 탄소제로섬 프로젝트 투자 및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중앙정부, 광응아이성 지방정부, 두산중공업, 빈그룹, 인진그룹과 함께 안빈섬의 탄소 제로섬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개발 및 투자를 도움</li> <li>* ▲프로젝트 디자인, 리딩 및 사업투자 (SK 이노베이션) ▲파력발전기술(인진) ▲전기스쿠터무상공급(빈그룹) ▲육상 부지 확보·토목 및 그리드 연결 (광응아이성 지방정부) ▲파력발전 발전차액지원제(FIT)승인 (베트남 중앙정부) ▲해수담수화 설비 유지보수 관리(두산중공업)</li> <li>- 안빈 섬 환경 자원 보호 운동 추진</li> <li>- 안빈 성 인민위원회 및 NGO와 함께 페플라스틱 재활용 운동을 펼치고 베트남 내에 있는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페플라스틱 리사이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계획</li> </ul> </li> <li>○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및 국내 협력사의 동반 해외 진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내의 SK에너지 협력사 (Dung Quat Oil 정유공장을 소유한 BSR사)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로 한국의 협력사인 제이콘, 유백, 대창기계기술을 선정하고 국내 협력사의 해외 진출을 도움</li> </ul> </li> <li>○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내 사회적 기업인 'Manglub' 설립을 지원, 탄소 흡수하는 능력을 가진 맹그로브 나무를 2020년까지 베트남 전역 30ha 규모로 식재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는 중</li> </ul> </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빈 섬의 탄소제로섬 운동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력발전을 사용하여 안빈 섬에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li> <li>- 해수담수화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관리</li> <li>- 안빈섬 내 전기 스쿠터 보급</li> <li>- 고효율 LED 가로등, Solar Cooker 보급</li> </ul> </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 3개사의 전문기술자 베트남 파견 및 기술 수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에너지의 베트남 협력사인 BSR 유지보수 사업에 한국의 SK에너지 협력사인 제이콘, 유백, 대창기계기술 직원 300여명을 파견, 총 1,500달러 규모의 협력기업 기술 수출 달성</li> </ul> </li> <li>○ 2020년, 6년간 증가했던 온실가스 첫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 화학기업 최초 TCFD에 동참, 기후변화 관련 정보 투명 공개</li> <li>-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편입된 SK이노베이션은 당해 11만 4,423tCO<sub>2</sub> eq의 온실가스를 배출 ▲2013년 11만 3,851tCO<sub>2</sub> eq ▲2014년 14만 2,603tCO<sub>2</sub> eq ▲2015년 16만 9,228tCO<sub>2</sub> eq ▲2016년 16만 6,661tCO<sub>2</sub> eq ▲2017년 18만 6,008tCO<sub>2</sub> eq ▲2018년 26만 4,942tCO<sub>2</sub> eq로 계속해서 증가함(증가율 131.5%). 그러나 2019년은 19만 1,567tCO<sub>2</sub> eq를 배출하며 처음으로 전년 대비 27.7%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함.</li> </ul> </li> <li>○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도 맹그로브 나무 조림 프로젝트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말 기준 베트남 짜빈 성 30ha 규모 부지에 18만 3,000그루의 맹그로브 나무 조림, 2018년 수립 목표를 달성함. (총 34만 그루, 70ha 규모 맹그로브 숲 복원 성공)</li> </ul> </li> </ul>
----------	---

**나. Tetra Pak: 환경 친화적 포장재 사용 및 재활용 운동, 탄소 배출 감축운동을 통하여 2050년까지 자사 가치사슬 (Value Chain) 중립(Net-Zero) 목표**

기업명	Tetra Pak	주력사업	음료팩 제조
ESG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책임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식품업계 최초 과학기반 탄소 배출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에 가입, 적극적 탄소 배출 감축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BT(Science Based Targets):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UN글로벌컴팩트(UNGC), 세계자연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가 협력하여 탄소 배출 절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회</li> </ul> </li> </ul>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경제를 위한 저탄소 솔루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생산 지원, 소싱에서 생산, 제품 수명 종료에 이르는 가치 사슬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li> <li>- 2019년 7월, 일회용 음료팩 최초 종이발대 출시</li> </ul> </li> <li>○ 중립(net-Zero) 실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자사 온실가스 배출 기준 대비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 58%, 2050년까지 0% 목표 제시</li> <li>-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생산 현장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및 재생에너지 구입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li> </ul> </li> </ul>		

<p>추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사슬에 포함된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재활용 자재 사용 및 탄소 배출량 감축</li> <li>- 저탄소 순환 포장재 및 장비 개발 촉진 및 고객의 탄소 배출 감소 지원</li> <li>- 고객, 폐기물 관리업체, 재활용업체, 지방정부, 산업협회 및 장비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재활용 가치 사슬 개발</li> </ul> <p>○ 2022년까지 자사 무균 음료팩을 100% 재생가능 원료로 제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트라팩은 2022년까지 자사 무균 음료팩을 100% 재생가능한 원료로 만들고 재활용 및 재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li> </ul>
<p>주요 성과</p>	<p>○ 2010년 탄소감축 목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전 설정한 탄소 감축 목표를 통해 2020년까지 1,2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li> </ul> <p>○ 2019년 베트남 100대 지속가능기업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최초 LEED Gold V4 녹색 건축 인증 공장</li> <li>- 빈중 성 테트라팩 공장은 미국의 세계적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인 LEED의 Gold V4 인증을 받은 베트남 유일의 공장으로 전 생산공정에서 탄소 배출량 절감 시현</li> <li>* 연간 2,100만 리터 이상의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최신 환경 기준을 충족시킨 베트남 내의 첫 공장</li> <li>* Tetra Pak은 100%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된 상자로 제조</li> </ul>

#### 다. Heineken: 탄소배출 절감 및 친환경 양조시스템 구축

<p>배경 및 사업과의 연계</p>	<p>○ 하이네켄은 1991년부터 베트남 내 양조장을 운영 중임. 베트남에서 제조 시설을 수십 년 동안 운영한 외국계 기업으로서 환경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ESG 도입</p>
<p>추진 내용</p>	<p>○ 하이네켄 베트남은 자사가 수립한 RESOLVE 모델을 양조 작업에 도입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경제 발전 선순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generate: 6개 양조 공장 중 5곳에서 탄소 배출 없이 재생 가능한 열에너지 사용</li> <li>- Share: 현지 정부기관 및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자사의 환경보호·경제 순환 관련 경험 공유, 또한 모든 직원들에게 Green Office program을 통해 자원 소비 절감 방법 교육,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장려 등 기업 측면에서 환경 보호 활동 지원</li> <li>- Optimize: 유통 트럭 사이즈 및 차량 품질 기준 개선해 CO2 배출량 2,000톤 절감 효과</li> <li>- Loop: 병-상자 양방향 교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재활용률 99% 달성</li> <li>- Virtualize: 경영 단계에 디지털 전환 착수</li> <li>- Exchange: 전기절약 환풍기, LED, 플루오르화탄소 프리 기능을 탑재한 자연친화적 냉장 시설 전환</li> <li>* 자료: 하이네켄 베트남, 현지 언론 Vietnam Investment Review</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재 재활용 및 탄소 배출량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iger의 경우, 판매점을 통해 병뚜껑 수거 프로젝트를 도입함. 수거한 병뚜껑은 교각 자재로 활용하도록 저온살균 후 사회 반납</li> <li>- 중간 운송 중 CO<sub>2</sub> 배출량 2,000톤 절감 효과</li> <li>- 2017년 기준, 99% 투입 자재가 재활용품이며 나머지 1%는 중간 소실 또는 폐기 처분</li> <li>-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발표한 2020년 현지 최고 지속가능한 2대 기업 (제조 분야) 중 하나로 선정</li> </ul> </li> </ul> <p>* 자료: 베트남 상공회의소 - 지속가능개발사업위원회(VBSCD)</p>
-------	---

## 2) 사회(S) 분야 주요 사례

### 가. Unilever Vietnam: 성평등 인재 경영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기업명	Unilever Vietnam	주력사업	일용소비재 제조업
ESG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적) 여성직원을 포용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성 평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구현</li> <li>○ (외부적) 베트남의 저소득층 여성 및 가구 지원 사업 추진</li> </ul>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 및 가정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간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 및 위생 교육 추진</li> </ul> </li> <li>○ 여성직원 포용 업무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평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여성을 의사 결정권자로 승진 시키고 더 많은 여성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장려</li> <li>- 업무 유연성 강화, 육아 휴직 강화</li> </ul> </li> <li>○ 여성 사업 프로그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여성 및 가족이 3,500억 동으로 소자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금융 프로그램 운영</li> <li>- 2025년까지 500만 명의 여성이 소자본 여성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것이 목표</li> </ul> </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lever 베트남 여성 직원 비율 세계 평균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베트남 유니레버, 여성 직원 및 관리자 비율 53% (세계평균 48%)</li> <li>- 여성 직원 직업 훈련 및 개발 로드맵을 구축, 여성을 관리자 직책에 적극 지명하며 승진 장벽을 낮춤. 기존 자사 출산 휴가 기간 대비 출산 휴가 기간 연장</li> </ul> </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레버 베트남 2020년 엄마를 위한 최고 기업 상위 10위 기업, 아버를 위한 최고 기업 동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여성 직원 모두 유급 육아휴가 및 출산 휴가 지원</li> <li>- 출산 직원에게 아동을 위한 분유 및 출산·수유모를 위한 영양분유 지원</li> <li>- 보육비 및 보조 보육 옵션 제공</li> <li>- 육아에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유연제 도입 외 저소득층 여성 및 가정 대상 지원</li> <li>- 2007년부터 2020년까지 2,400억 동(1,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베트남 63개 성·시 저소득층 여성에게 지원</li> </ul> </li> <li>○ UN Women 포용기업 상 수상 및 WEP(Women Empowerment Principles) Leadership Commitment 상 수상(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Women과 WEP로부터 성별 포용 문화와 개인 및 기업의 양성 평등 가치 창출에 대한 노력에 대해 리더십상 수상</li> </ul> </li> </ul>
-------	--

나. Samsung: 베트남 학교 도서관 신축·보수, 청년 대상 공유스페이스 건설 프로젝트 (Smart Library 2011년 시작, S.HUB 2015년 시작)

배경 및 사업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학교 도서관 노후화 및 현지 정부의 도서관 시설 개선 의지 확인으로, 현지 교육 환경 지원 필요성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대 초반 현지 교육양성부 결정문에 따라, 학교 도서관들이 특정 기준(예: TV와 같은 전자기기 구비 등)에 부합하도록 품질 제고 프로그램 시행</li> <li>- 2013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0.8권(교과서 제외)</li> <li>* 자료: Academy of Finance Vietnam</li> </ul> </li> </ul>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 베트남 법인은 현지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부터 Smart Library 2세대 모델인 S.HUB을 도입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위한 현대적 시설의 공유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확장</li> <li>- 현재는 Smart Library 사업 범위와 의미를 확대해 청년들을 위한 공공 도서관 및 공유 스페이스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Smart Library에서 시작한 사회적 책임을 계속</li> <li>* 자료: Samsung Newsroom, 현지 언론 Hanoi Times</li> </ul> </li> </ul>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교육 시설 현대화에 공헌하고, 정부와 더불어 이러닝 환경 개발에 동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50개 학교 도서관 공사를 지원하고 새 책 20만 권, 컴퓨터와 TV 등 전자기기 300대 지원</li> <li>- 2015년 이후 S.HUB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정부기관 및 국립 도서관과 연계한 지엽적 사업(이러닝)을 개척함.</li> <li>* 자료: 호치민시 공공 도서관 웹사이트</li> </ul> </li> </ul>

#### 다. Nestle: 베트남 커피 농업 환경 개선 및 산업 농가와 동반성장

<p>배경 및 사업과의 연계</p>	<p>○ 동 기업은 베트남 농촌의 고질적인 가뭄 문제와 이로 인한 커피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프로젝트 Nescafe Plan을 추진 * 자료: Nestle</p>
<p>추진 내용</p>	<p>○ 현지 농가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토양 수분량 확인 방법 교육 및 현지 커피 농가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중서부 커피 농가들은 대부분 소작(평균 2~3야드)이므로, 현지 사정에 맞춘 저비용의 현실적인 가뭄 대책을 고안함. 플라스틱 물병을 활용해 토양 건조 정도를 확인하고, 낭비 없이 적기에만 관개 농수를 쓸 수 있도록 교육</li> <li>- 베트남 내 약 2만 명에 이르는 현지 커피 농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NGO 단체를 통해 농업 교육 지원</li> </ul> <p>* 자료: Nestle</p>
<p>주요 성과</p>	<p>○ Nestle는 이에 더 나아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관계당국들과 연계한 PPP 프로그램으로 현지 커피 농부 수입을 30% 제고하고 수자원 절약 효과 40% 기여</p> <p>○ 2019~2020년 Vietnam National Gold Quality Award 수상에 기여</p> <p>* 자료: VBSCD</p>



## 8. 베트남의 ESG 특징과 평가

앞서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베트남은 전반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장에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베트남의 장기 및 중기 개발전략인 SEDS와 SEDP는 과거보다 질적 성장을 더욱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특히 풍력)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베트남의 ESG는 개도국이자 신흥시장임을 감안하더라도 환경(E)과 사회(S)보다는 지배구조(G)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며,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이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한 기간이 길지 않다는 특성이 그 배경 가운데 하나이다.

Moody's가 2021년 1월, 전세계 144국을 대상으로 ESG 신용영향점수(Credit Impact Scores)를 도출한 결과, 베트남은 4등급(CIS-4, 부정적)을 받았으며 환경과 사회는 다소부정적,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그린 경제(Green economy)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은 최대 수혜국가 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에, 현지의 법과 제도 또한 상황에 맞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 IV. 부록

### (유관기관 컨택포인트)

1. 현지 진출 우리나라 주요기관(하노이)
2. 베트남 주요 투자정부기관
3. 한국계 법무법인

## 1. 현지 진출 우리나라 주요기관(하노이)

###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 전화 : +84-24-3771-0404(비자, 여권), +84-24-3831-5111(정무, 경제)
- 팩스 : +84-24-3831-6834(비자, 여권), +84-24-3831-5117(정무, 경제)
- 이메일 : embkrvn@mofa.go.kr(비자, 여권), korembviet@mofa.go.kr(정무, 경제)

### ▶ KOTRA 동남아대양주 지역본부 / 하노이 무역관

- 주소 : 20 Floor, Office Block of th Charmvit Tower, Grand Plaza,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 전화 : +84-24-3946-0511
- 팩스 : +84-24-3946-0519
- 이메일 : kotrahanoikbc@gmail.com

### ▶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노이 수출인큐베이터

- 주소 : 17 Floor, Office Block of the Charmvit Tower, Grand Plaza,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 전화 : +84-24-3555-1856
- 팩스 : +84-24-3555-1856
- 이메일 : only405@kosmes.or.kr

### ▶ 주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

- 주소 : 13F, Chamvit Tower 117 Tran Duy Hung DTR. Hanoi
- 전화 : +84-24-3555-3341
- 팩스 : +84-24-3555-3342
- 이메일 : info3@korchamvietnam.com



### ▶ 하노이 한인회

- 주소 : Room1906, 19F,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Cau giay Dist, Hanoi, Vietnam
- 전화 : +84-24-3555-3015~6
- 이메일 : hanoilang2021@gmail.com

### ▶ 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주소 : 17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 전화 : +84-24-3232-3586

### ▶ 한국수출입은행 하노이사무소

- 주소 : 8th Floor,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r., Ba Dinh Dist., Hanoi, Vietnam
- 전화 : +84-24-3771-7010
- 이메일 : dykim@koreaexim.go.kr

## 1.1. 현지 진출 우리나라 주요기관(다낭)

### ▶ 주 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 주소 : Tang 3-4, Lo A1-2 Chuong Duong, P.Khue My, Q.Ngu Hanh Son, T.P Da Nang, Vietnam
- 전화 : +84-23-6356-6100~4(근무시간내), +84-93-112-0404(긴급연락)
- 팩스 : +84-23-6356-6105
- 이메일 : danang@mofa.go.kr

### ▶ KOTRA 다낭 무역관

- 주소 : 4F, Bach Dang Complex, 50 Bach Dang St., Hai Chau Dist., Da Nang, Vietnam
- 전화 : +84-236-377-9700
- 팩스 : +84-236-377-9701
- 이메일 : danang@kotra.or.kr

## 1.2. 현지 진출 우리나라 주요기관(호치민)

###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 주소 : 107 Nguyen Du, Dist 1, HCMC
- 전화 : +84-28-3822-5757
- 팩스 : +84-28-3829-7577(운영지원), +84-28-3829-1207(여권, 영사확인)
- 이메일 : hcm02@mofa.go.kr(일반), hcm03@mofa.go.kr(비자)

### ▶ KOTRA 호치민 무역관

- 주소 : 708B, 7th Floor, Diamond Plaza, 34 Le Duan, District 1, HCMC, Vietnam
- 전화 : +84-28-3822-3944/3950
- 팩스 : +84-28-3822-3941
- 이메일 : kotrasgn@hanmail.net

### ▶ 중소기업진흥공단 호치민 수출인큐베이터

- 주소 : R.709, Fl.7, Diamond Plaza, 34 Le Duan Ave, District1, HCMC, Vietnam
- 전화 : +84-28-3823-0901
- 팩스 : +84-28-3823-0902
- 이메일 : ggundeul@kosmes.or.kr

### ▶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 주소 : 3rd, Floor, 47 Nguyen Cu Trinh, District 1, HCMC, Vietnam
- 전화 : +84-28-3837-9154
- 이메일 : kocham@kocham.kr

### ▶ 호치민 한인회

- 주소 : 47 Nguyen Cu Trinh st, District. 1, HCMC
- 전화 : +84-28-3920-1610~1
- 이메일 : hochiminh@korean.net

▶ 베트남리스금융회사 호치민(한국수출입은행)

- 주소 : 9th Floor, Diamond Plaza, No. 34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전화 : +84-28-3825-7000
- 이메일 : info@keximvlc.com.vn



## 2. 베트남 주요 투자정부기관

### ▶ 기획투자부

- 주소 : No. 6B, Hoang Dieu, Ba Dinh, Hanoi
- 전화 : +84-24-3845-5298
- 팩스 : +84-24-3823-4453
- 이메일 : banbientap@mpi.gov.vn

### ▶ 산업무역부

- 주소 : 54 Hai Ba Trung, Hoan Kiem, Ha Noi
- 전화 : +84-24-2220-2108
- 팩스 : +84-24-2220-2525
- 이메일 : bbt@moit.gov.vn

### ▶ 베트남 무역진흥공사(VIETRADE)

- 주소 : 20 Ly Thuong Kiet, Ha Noi
- 전화 : +84-24-3934-7628
- 팩스 : +84-24-3934-8142
- 이메일 : vietrade@vietrade.gov.vn

### ▶ 하노이 무역투자관광진흥센터(HPA)

- 주소 : 10 Trinh Hoai Duc, Cat Linh, Dong Da, Hanoi
- 전화 : +84-24-3775-7979
- 이메일 : hpa@hanoi.gov.vn

### ▶ 다낭 투자진흥지원센터(IPA DANANG)

- 주소 : 18th Floor, Danang Administration Center, 24 Tran Phu St., Danang
- 전화 : +84-23-6388-6243
- 팩스 : +84-23-6381-0056
- 이메일 : ipa@danang.gov.vn

### ▶ 호치민시 무역투자진흥센터(ITPC)

- 주소 : 10 Trinh Hoai Duc, Cat Linh, Dong Da, Hanoi
- 전화 : +84-28-3823-6738
- 팩스 : +84-28-3824-2391
- 이메일 : itpc@itpc.gov.vn

### ▶ 베트남 남부 투자진흥센터(IPCS)

- 주소 : No.289, Dien Bien Phu Street, Ward Vo Thi Sau, District 3, HCMC, Vietnam
- 전화 : +84-83-930-6671
- 팩스 : +84-83-930-5413



### 3. 한국계 법무법인

#### ▶ 법무법인 아세안

- 주소 : (하노이) Suite 905A, 9F,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Suite 707, 7F, Saigon Paragon Building, 3 Nguyen Luong Bang, D.7, HCMC, Vietnam
- 전화 : +84-24-3201-6900(하노이), +84-28-3622-1600(호치민)
- 이메일 : info@alfcounsel.com
- 홈페이지 : <http://www.alfcounsel.com/>
- 담당자 : 최지웅 변호사

#### ▶ 법무법인 지평

- 주소 : (하노이) Suite 3505, 35F,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lot E6, Cau Giay New Urban Area, Me Tri Ward, Nam Tu Liem Dist., Hanoi, Vietnam  
(호치민)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 Chi Minh City, Vietnam
- 전화 : +84-24-6266-1901(하노이), +84-28-3910-7510(호치민)
- 이메일 : hanoi@jipyong.com(하노이), hcmc@jipyong.com(호치민)
- 홈페이지 : <http://www.jipyong.com/>
- 담당자 : 유동호 변호사

#### ▶ 법무법인 JP

- 주소 : (하노이) 1105 Room, 11 Floor, East Tower,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Unit 4, 7th Floor,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 전화 : +84-4-3724-5201~2(하노이), +84-8-3910-0619(호치민)
- 이메일 : bhsjun@jplawvn.com
- 홈페이지 : <http://www.jplaws.com/>
- 담당자 : 전현우 변호사

### ▶ 법무법인 율촌

- 주소 : (하노이) 1105 Room, 11 Floor, East Tower,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Unit 03, 4th Floor, MPLaza Saigon,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 전화 : +84-24-3837-8200(하노이), +84-28-3911-0225(호치민)
- 이메일 : hbyl@yulchon.com(하노이), hcmc@yulchon.com(호치민)
- 홈페이지 : <https://www.yulchon.com/>
- 담당자 : 이홍배 변호사, 강수구 변호사

### ▶ 법무법인 로고스

- 주소 : (하노이) Suite 2403,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ham Hung Street,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Unit 2002B,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Dist.3, Ho Chi Minh, Vietnam
- 전화 : +84-24-3771-0334(하노이), +84-28-3822-7161(호치민)
- 이메일 : kskim@lawlogos.com(하노이), cyk@lawlogos.com(호치민)
- 홈페이지 : <http://www.lawlogos.com/>
- 담당자 : 김경섭 변호사, 김찬영 변호사

### ▶ 법무법인 태평양

- 주소 : (하노이) West Tower 2601,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Unit 3, 37F,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전화 : +84-24-3232-1233(하노이), +84-28-38-212-427(호치민)
- 이메일 : vietnam@bkl.co.kr
- 홈페이지 : <https://www.bkl.co.kr/>
- 담당자 : 배용근 변호사

### ▶ 법무법인 세종

- 주소 : (하노이) Unit O1913 & 1914-1, 19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E6 Zone, Cau Giay urban area, Me Tri Ward,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9F, Diamond Plaza, 34 Le Duan Boulev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전화 : +84-28-3827-4214(하노이), +84-28-3827-4114(호치민)
- 이메일 : ysupark@shinkim.com(하노이), ymgil@shinkim.com(호치민)
- 홈페이지 : <https://www.shinkim.com/>
- 담당자 : 길영민 변호사

### ▶ 법무법인 광장

- 주소 : (하노이) Unit 1006, West Tower,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Unit 102, mPlaza Saigon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전화 : +84-24-3226-2801/2(하노이), +84-28-3827-3886(호치민)
- 이메일 : mail-vn@leeko.com
- 홈페이지 : <https://www.leeko.com/>
- 담당자 : 한윤준 변호사

### ▶ 법무법인 버리

- 주소 : (하노이) 8F, Hoang Ngoc tower, Lot C2C, Dich Vong Hau, Cau Giay, Ha Noi  
(호치민) Floor 3, 63D Vo Van Tan, Ward 6, District 3, HCMC
- 전화 : +84-24-3216-1403(하노이), +84-28-3930-0703(호치민)
- 이메일 : verylaw@theverylaw.com
- 홈페이지 : <http://www.theverylaw.com/>
- 담당자 : 김경민 변호사

### 3.1 한국계 회계법인

#### ▶ 서우 회계법인

- 주소 : (하노이) 10F, Charmvit Tower, 117 Tran Duy Dung, Trung Hoa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호치민) 3F, CJ Building, 2Bis-4-6 Le Thanh Ton, Ben Nghe, District 1, HCMC
- 전화 : +84-98-548-7377(하노이), +84-90-247-7335(호치민)
- 이메일 : csrgs@seouvietnam.com(하노이), kimhj@seouvietnam.com(호치민)
- 홈페이지 : <https://seouvietnam.com/>
- 담당자 : 조성룡 회계사, 김형준 회계사

#### ▶ 이정 회계법인

- 주소 : (하노이) Room 3502 - 3504, 35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Me Tri Commune, Tu Liem Dist., Hanoi  
(호치민) Room 602, 6th Floor,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Dist. 3, HCMC, Vietnam
- 전화 : +84-24-3556-0470(하노이), +84-28-3824-4770(호치민)
- 이메일 : swjcpa77@gmail.com(하노이), jskim@e-jung.co.kr(호치민)
- 홈페이지 : <http://e-jung.com.vn/>
- 담당자 : 임병관 회계사, 김종신 회계사

#### ▶ 삼일 회계법인(PWC)

- 주소 : (하노이) 16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Lot E6, Cau Giay Urban Area, Me Tri Commune,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29 Le Duan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전화 : +84-24-3946-2246(하노이), +84-28-3823-0796(호치민)
- 이메일 : shim.jinbo@pwc.com(하노이), son.hanhee@pwc.com(호치민)
- 홈페이지 : <https://www.pwc.com/vn/en>
- 담당자 : 심진보 회계사, 손한희 회계사

### ▶ S&S 회계법인

- 주소 : (하노이) 7th Floor, Vinaconex 9 Building, Pham Hung St., Me Tri Ward,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8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전화 : +84-24-6251-2201(하노이), +84-28-3910-4996(호치민)
- 이메일 : SAMUEL230@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s://ssaudit.com/>
- 담당자 : 이삼한 회계사

### ▶ KNL 회계법인

- 주소 : (하노이) 8F, Hoang Ngoc tower, Lot C2C, Dich Vong Hau, Cau Giay, Ha Noi (호치민) Floor 3, 63D Vo Van Tan, Ward 6, District 3, HCMC
- 전화 : +84-96-425-1918
- 이메일 : verylaw@theverylaw.com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cristall>
- 담당자 : 이수정 대표

### ▶ 임마누엘 회계법인

- 주소 : (하노이) VP304 - VP308 Bonanza, 23 Pho Duy Tân, Dich Vong Hau, District Cau Giay, Hanoi
- 전화 : +84-24-7300-1977
- 이메일 : info@imma.vn
- 홈페이지 : <http://imma.vn/>
- 담당자 : 장찬수 대표

### ▶ DKF 회계법인

- 주소 : (하노이) Level 22, Hapulico Office Building, 1 Nguyen Huy Tuong, Thanh Xuan Dist, Hanoi (호치민) No. 45 Bach Dang, Tan Binh District, HCMC
- 전화 : +84-24-3559-2222(하노이), +84-28-3547-1242(호치민)
- 이메일 : hn@dfkvietnam.com(하노이), hcmc@dfkvietnam.com(호치민)
- 홈페이지 : <https://dfkvietnam.com/>
- 담당자 : 정운서 대표

## 3.2. 외국계 법무/회계법인

### ▶ KPMG

- 주소 : (하노이) 46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72 Building, Plot E6, Pham Hung Street, Cau Giay New Urban Area  
(호치민) 10th Floor, Sunwah Tower, No. 115, Nguyen Hue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 전화 : +84-24-3946-1600(하노이), +84-28-3821-9266(호치민)
- 홈페이지 : <https://home.kpmg/>
- 담당자 : 이준석 회계사

### ▶ PWC

- 주소 : (하노이) 16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Lot E6, Cau Giay Urban Area, Me Tri Commune, Nam Tu Liem District  
(호치민) 29 Le Duan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전화 : +84-24-3946-2246(하노이), +84-28-3823-0796(호치민)
- 홈페이지 : <https://www.pwc.com/vn/en>

### ▶ EY

- 주소 : (하노이) CornerStone Building, 8th Floor, 16 Phan Chu Trinh, Hoan Kiem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Bitexco Financial Tower, 28th Floor 2 Hai Trieu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 전화 : +84-4-3831-5100(하노이), +84-8-3824-5252(호치민)
- 홈페이지 : [https://www.ey.com/vi\\_vn](https://www.ey.com/vi_vn)
- 담당자 : Tran Dinh Cuong

### ▶ Baker Mckenzie

- 주소 : (하노이) Unit 1001, 10th floor, Indochina Plaza Hanoi, 241 Xuan Thuy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12th Floor, Saigon Tower, 29 Le Duan Blvd, District 1, HCMC Vietnam
- 전화 : +84-24-3825-1428(하노이), +84-28-3829-5585(호치민)
- 홈페이지 : <https://www.bakermckenzie.com/en>
- 담당자 : Minh Tri Quach

### ▶ Deloitte

- 주소 : (하노이) 15th Floor, Vinaconex Tower, No.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호치민)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 전화 : +84-24-71050-000(하노이), +84-28-7101-4555(호치민)
- 홈페이지 : <https://www2.deloitte.com/vn/en.html>
- 담당자 : 김선준 회계사





KOTRA자료 22-024

##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 (2021년 개정판)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2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226-3 (95320)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SBN 979-11-402-0226-3 (95320)

Vietnam